대구 오페라 스위첸 입주자모집공고

■ **신종 코로나바이러스(코로나19) 감염증 확산 방지를 위한 사이버 모델하우스 운영 안내**

- **대구 오페라 스위첸은** 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확산 방지를 위하여 견본주택 관람을 사이버 모델하우스(http://opera.switzen.com.)로 대체하여 운영할 예정입니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코로나19) 감염 확장 및 정부정책에 따라 당첨자의 견본주택 관람, 당첨자 자격확인서류 제출 및 공급계약 체결 등의 일정 및 방법이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 시 대구 오페라 스위첸 홈페이지에 별도 안내 예정입니다.

1. 견본주택 운영관련 안내

- 특별공급 신청의 경우 인터넷 청약신청이 원칙이오나, 고령자, 장애인 등 정보취약계층에 한하여 인터넷 청약이 불가한 경우에만 특별공급 청약신청을 해당 신청일 견본주택에서 접수가 가능합니다. (10:00~14:00, 은행창구접수 불가)
- 당첨자(예비입주자 포함)서류 심사 및 공급계약체결시 아래의 「계약체결 절차 및 유의사항」에 따라 견본주택 방문접수 및 방문계약 체결을 계획 중이나,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코로나19)감염 확산 및 정부정책에 따라 일정 및 방법이 변경 될 수 있으며, 변경 시 대구 오페라 스위첸 홈페이지(http://opera.switzen.com)에 별도 안내 예정입니다.

2. 견본주택 방문 시 아래사항을 준수하지 않을 경우 입장이 제한됩니다.

- 견본주택 관람은 당첨자 외 동반자 1인까지만 가능합니다.(미성년자 동반불가)
- 견본주택 입장 전 마스크 착용을 하지 않을 경우
- 견본주택 입장 시 열화상카메라 및 비접촉체온계를 통한 체온이 37.3도가 넘을 경우
- 손소독제, 비접촉체온계 등 예방절차에 불응할 경우

■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 확산 및 정부정책에 따라 당첨자의 견본주택 관람, 당첨자 자격확인서류 제출 및 공급계약 체결일정이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될 경우 추후 별도안내할 예정입니다.

■ 본 아파트는 사이버 모델하우스 운영으로 인한 입주자모집공고와 관련하여 보다 자세한 안내가 이루어 질 수 있도록 상담전화(☎ 1833-2544)를 실시 할 예정이오나, 간혹 폭주하는 전화상담 신청으로 인해 다소 대기시간이 길어질 수 있음을 양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전화상담 시 신청자 개인의 다양하고 복잡한 상황에 대하여 정확하지 않은 정보 전달로 인해 청약관련 사항에 대한 착오 안내가 이루어 질 수 있습니다. 이점 유의하시기 바라며, 청약과 관련된 전화상담은 청약신청 시 참고자료로만 활용해 주시기 바라며, 청약신청 시 입주자모집공고를 통해 청약자격 등을 숙지하시어 관련 서류 등을 확인하신 후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 본 아파트 입주자모집공고의 내용을 숙지한 후 청약 및 계약에 응하시기 바라며, 미숙지로 인한 착오행위 등에 대하여는 청약자 본인에게 책임이 있으니 이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본 입주자 모집공고의 내용을 숙지한 후 청약 및 계약에 응하시기 바라며, 미숙지로 인한 착오 행위 등에 대하여는 청약자 및 계약자 본인에게 책임이 있으니 이점 유의 바랍니다.

■ **2020.04.17.** 개정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이 적용되오니 아래의 사항을 참조하시어 청약에 착오 없으시기 바랍니다.

■ 본 아파트의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은 **2020.07.31**입니다. (청약자격조건의 기간, 나이, 지역우선 등의 청약자격조건 판단 기준일임)

■ 해당 주택건설지역(**대구광역시-수성구 제외**)은 「주택법」 **제63조 및 제63조의2에 의한 비투기과열지구 및 비청약과열지역**으로서, 본 아파트는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에 따라 1주택 이상 소유하신 분도 청약 1순위 자격이 부여됩니다.

■ 본 아파트는 수도권 외 비투기과열지구 및 비청약과열지역의 민간택지에서 공급하는 분양가상한제 미적용 민영주택으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4조에 따른 **재당첨 제한을 적용받지 않고 기존 주택당첨여부와 관계없이 본 아파트 청약이 가능**합니다. (단, 본 제도는 당첨된 청약통장의 재사용을 허용하는 제도가 아니며, 당첨된 청약통장은 계약 여부와 관계없이 재사용이 불가합니다)

■ 본 아파트의 당첨자로 선정 시 당첨자 및 세대에 속한 자는 당첨일로부터 향후 5년간 투기과열지구 및 청약과열지역에서 공급하는 주택의 1순위 청약 접수가 제한되오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본 아파트는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2020.07.31)** 현재 대구광역시에 거주하거나 경상북도에 거주(주민등록표등본 기준)하는 **만 19세 이상인 자 또는 세대주인 미성년자(자녀양육, 형제자매부양)**[국내에서 거주하는 재외동포(재외국민, 외국국적 동포) 및 외국인 포함]의 경우 청약이 가능합니다. 다만 청약신청자 중 같은 순위 내에 경쟁이 있을 경우**「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4조 5항 및 「대구광역시 고시」 제2017-164호에 의거하여, 대구광역시 6개월 이상 계속하여 거주(2020.01.31.이전)부터 계속 거주)한 신청자가 우선합니다.**

- 본 아파트는 입주자모집공고일**(2020.07.31)**현재 대구광역시에 6개월 이상 계속하여 거주(외국에 거주한 기간 제외)한 성년자에게 우선 공급하나, 국내에 거주하지 않고 해외에 장기간 체류하고 있는 상태에서 해당지역으로 청약신청 시 부적격 당첨자로 처리될 수 있으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해외 거주에 대한 유권 해석 변경 [관련문서 : 국토교통부 공고 제2019-1011호(적용시점 : 19.07.25일 이후 청약 신청분부터 적용)

· 해외거주 인정기준

① 출국 후 계속하여 90일을 초과하여, 거주한 경우(제도악용을 막기 위해 입국 후 7일 동일국가 재출국시 계속 해외 거주로 봄) ②연간 183일 초과하여 국외에 거주한 경우

☞ 해당기간(①,②)동안 국내 거주로 불인정되어 해당 주택 건설지역 우선공급 대상자로 청약불가

☞ 단순 3개월 미만의 단기여행, 출장, 파견 등은 국내거주로 간주되어 해당 주택건설지역 우선공급 대상자로 청약가능

· 적용례

① 모집공고일 현재 해당지역에 거주하고 있으나 계속하여 90일 이상 해외에 체류한 경력이 있는 자 ☞ 해당지역 우선 공급 대상자로 불인정, 기타지역 거주자로는 청약가능

② 모집공고일 현재 해외에 있는 대상자로 계속하여 90일을 초과하지 않는 경우 ☞ 해당지역 우선 공급 대상자로 청약가능

③ 모집공고일 현재 해외에 있는 대상자로 계속하여 90일을 초과한 경우 ☞ 해당지역 우선공급 대상자로 불인정, 기타지역 거주자로도 불가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23조 제7호에 의해 제4조 5항에 따라 우선 공급받으려는 경우에는 「출입국관리법」제88조의 출입국 사실증명원을 사업주체로 제출하여야 함.

■ **2018.12.11. 개정된「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조 제2호의3, 제2조의4에 의거 '세대' 및 '무주택세대구성원'의 정의가 변경되었습니다.**

- **"세대"란, 다음 각 목의 사람(이하 "세대원")으로 구성된 집단** (주택공급신청자가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등재되어 있지 않은 경우는 제외)

가. **주택공급신청자**

나. **주택공급신청자의 배우자**

다. 주택공급신청자의 **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존속 포함)** : 주택공급신청자 또는 주택공급신청자의 배우자와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함께 등재되어야 함. (예) 부.모, 장인.장모, 시부.시모, 조부.조모, 외조부.외조모 등

라. 주택공급신청자의 **직계비속(직계비속의 배우자 포함)** : 주택공급신청자 또는 주택공급신청자의 배우자와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함께 등재되어야 함. (예) 아들.딸, 사위.며느리, 손자.손녀, 외손자.외손녀 등

마. 주택공급신청자의 **배우자의 직계비속(직계비속의 배우자 포함)** : 주택공급신청자의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함께 등재되어야 함. (예) 전혼자녀 등

- **"무주택세대구성원"이란, 세대원 전원이 주택을 소유하고 있지 않은 세대의 구성원**

■ **2018.12.11. 개정된「주택공급에 관한 규칙」별표1 제1호 나목에 의거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직계존속과 그 배우자는 가점제 항목의 부양가족으로 보지 않습니다.**
부양가족 판단 시 직계비속은 미혼자녀와 부모가 모두 사망한 미혼의 손자녀인 경우에 한정하여 인정됩니다.

■ **2018.12.11. 개정된「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2조 제7호의2, 제23조 제4항, 제53조에 의거 분양권 및 입주권(이하 "분양권등")을 소유한 경우 주택 소유로 간주하오니, 주택소유 여부 판정 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기타 주택소유 여부 판정기준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53조 참조)**

※ 주택 소유로 보는 분양권등의 범위(국토교통부령 부칙 제3조 제565호, 2018.12.11. 시행)

- **분양권등 신규 계약자**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개정시행일(2018.12.11.) 이후 '입주자모집공고, 관리처분계획(정비사업) 또는 사업계획(지역주택조합)' 승인을 신청한 주택의 분양권등부터 적용하며, '공급계약 체결일' 기준 주택 소유로 봄. (*미분양 주택을 최초로 공급받은 경우는 제외되나, 해당 분양권등을 매수한 경우 주택소유로 봄)
- **분양권등 매수자**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개정시행일(2018.12.11.) 이후 매수 신고한 분양권등부터 적용하며, '매매대금 완납일'(실거래 신고서상) 기준 주택 소유로 봄.

■ **2018.12.11. 개정된「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2조 제7호의3에 의거 "소형.저가주택등"은 분양권등을 포함하며, 공급계약서의 공급가격(선택품목 제외)을 기준으로 가격을 판단합니다.**

※ "소형.저가주택등"이란, 전용면적 60제곱미터 이하로서 주택가격이 8천만원(수도권은 1억3천만원) 이하인 주택 또는 분양권등(주택가격은「주택공급에 관한 규칙」별표1 제1호 가목2의 기준에 따름)

■ 2009.04.01.「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일부 개정으로 인해 주택형 표기방식은 기존(전용면적 + 주거공용면적)에서 주거전용면적만 표기하도록 변경되었으니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 본 아파트는 건전한 주택청약 문화정착을 위한 정부의 방침에 따라 인터넷 청약을 원칙으로 하고 있으므로 청약 이전에 청약통장 가입은행 및 취급은행을 방문하여 인터넷뱅킹 가입 및 공인인증서를 신청접수일 이전에 미리 발급받으시기 바랍니다.

※ **한국감정원**에서 운영하는 **청약홈(www.applyhome.co.kr)에서 청약신청자의 편의를 위하여 인터넷 청약서비스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인터넷 청약 절차에 대한 보다 자세한 사항은 **청약홈(www.applyhome.co.kr)에서 운영하는 "청약가상체험"을 활용하시기 바람]**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50조 제1항에 따라 **특별공급 및 일반공급 입주자 선정 및 동·호수 배정은 한국감정원에서 실시합니다.**

■ 10년 이상 장기복무 중인 군인의 청약자격이 개정되었으니 청약 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10년 이상 장기복무 중인 무주택군인 → 10년 이상 장기복무 중인 군인(유주택자도 청약 가능)
- 입주자저축 1년 이상 가입자 → 본 주택의 해당순위(특별공급 및 일반공급 1순위, 2순위) 입주자저축 요건을 충족 시 청약 가능

■ 10년 이상 장기복무 중인 군인은 해당 주택건설지역에 거주하지 아니하여도 해당 주택건설지역에 거주하는 것으로 봅니다.
다만, 수도권에서 건설되는 주택을 공급받으려는 경우에는 해당 주택건설지역이 아닌 수도권 거주자로 봅니다.
또한, 수도권외 지역에서 공급하는 주택 중 전입제한일이 적용된 경우 기타지역 거주자의 자격으로 청약됩니다. (2018.1.2. 모집공고 승인분부터 적용)

■ 고령자, 장애인, 다자녀가구(단, 미성년자녀 3명 이상)의 최하층 우선 배정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51조 규정에 의거 제1호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만65세 이상인 자 또는 그 세대에 속한 자, 제2호「장애인복지법」제32조에 따라 장애인등록증이 발급된 자 또는 그 세대에 속한 자, 제3호 미성년자 3명 이상의 자녀를 둔 자 또는 세대에 속한 자가 있는 경우에는 주택공급신청(특별 및 일반공급) 시 최하층의 주택 배정을 희망한 당첨자에 대해서 해당 층을 우선 배정하오니 청약 시 선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하층이라 함은 1층을 말하며 1층이 없는 경우 최저층을 말하며, 해당 주택의 분양가격이 바로 위층 주택의 분양가격보다 높은 경우는 제외한다) 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는 자와 제3호에 해당하는 자 사이에 경쟁이 있으면, 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는 자에게 우선 배정합니다. 단, 신청자가 많은 경우 다른 층을 배정받을 수 있고, 적은 경우에는 미신청자(최하층 우선 배정 신청 비대상자 포함)에게도 최하층이 배정될 수 있습니다.

■ **2018.12.11. 개정된「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41조 제1항 제1호 다목에 의거 신혼부부 특별공급 신청 시 신혼부부는 혼인신고일부터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까지 계속하여 무주택자이어야 합니다.**
단,「주택공급에 관한 규칙」개정시행일(2018.12.11.) 전 기존주택을 처분하여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무주택기간이 2년을 경과한 경우 2순위 자격이 부여됩니다. (부칙 제5조 신혼부부 특별공급 특례)

■ **신청접수는 당첨자발표일이 동일한 주택 전체에 대하여 1인 1건만 신청 가능하며, 1인 2건 이상 청약 신청할 경우에는 모두를 무효 처리합니다.**
단, 본인이 동일주택에 특별공급과 일반공급 중복신청이 가능하나 특별공급 당첨자로 선정될 경우 일반공급 당첨자선정에서 제외됩니다. (본인이 동일주택에 특별공급 중복청약 시에는 모두 무효처리)

■ **특별공급은 무주택세대구성원에게 1세대 1주택(공급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1세대 1명을 말함) 기준으로 공급하므로 세대 내 2명 이상이 각각 신청하여 1명이라도 선정이 되면, 당첨자는 부적격당첨자로 처리되고, 예비입주자는 입주자로 선정될 기회를 제공받을 수 없으니 유의하여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 **2018.05.04. 개정된「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에 의거 특별공급 신청 방법이 '견본주택 방문 신청'에서 '청약홈(www.applyhome.co.kr) 인터넷 청약 신청'으로 변경되었습니다. 해당 신청일에 인터넷 청약접수를 원칙으로 하며, 정보취약계층(고령자 및 장애인 등) 등에 한하여 인터넷 청약이 불가한 경우에만 사업주체 견본주택에서 접수가 가능합니다.**

■ **청약 신청한 주택의 신청취소는 당일 청약신청 마감 이전까지 가능하며, 청약접수 종료 이후에는 어떠한 경우라도 신청 취소 및 변경이 불가하오니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2018.05.04. 개정된「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25조의 제7항에 의거 특별공급 대상 주택의 입주자를 선정하고 남은 주택의 입주자는 다른 공급유형의 특별공급 신청자 중 입주자로 선정되지 않은 자를 대상으로 추첨의 방법으로 선정하며, 입주자를 선정하고 남은 주택은 일반공급으로 전환하여 공급합니다.

■ 2018.05.04. 개정된「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26조의2에 의거 특별공급 예비입주자를 선정하도록 신설되었으며, 특별공급 접수종류 구분 없이 주택형별 경쟁이 있는 경우 추첨의 방법으로 예비입주자를 선정합니다.

■ 2017.09.20. 개정된「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28조에 제6항 제2호에 의거 본 주택에 가점제로 당첨되신 분은 당첨일로부터 2년간 가점제 당첨제한자로 관리되오니, 향후 당첨자 본인 및 세대원이 가점제가 적용되는 민영주택에 청약하는 경우 가점제 제한사항 적용 여부를 확인하신 후 청약하시기 바랍니다.

※ 가점제 제한사항 : 가점제 당첨자 및 그 세대원은 2년간 가점제에 의한 재당첨 제한 (당첨자발표일이 2018.05.08. 이후인 민영주택의 가점제로 당첨된 경우부터 적용)

■ 본 아파트에 1순위 청약 시 모집공고일 현재 과거 2년 이내 가점제로 당첨된 자의 세대에 속한 자는 추첨제로 청약 접수하여야 합니다. 또한, 가점제 제한 청약자가 가점제로 청약하여 당첨된 경우 부적격 처리되오니 청약 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과거 2년 이내 가점제 적용 : 당첨자발표일이 2018.05.08 이후인 민영주택의 가점제로 당첨된 경우부터 적용

■ 본 아파트는 분양가상한제 미적용 민영주택으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8조 규정에 의거 1순위 청약 접수 시 전용면적** 85㎡이하로 "무주택기간, 부양가족수, 입주자 저축 가입기간"을 점수로 계산하여 당첨자를 선정하는『청약가점제』 및 추첨의 방법으로 당첨자를 선정하는 『추첨제』가 적용됩니다.(**전용면적** 85㎡이하 주택의 경우 일반공급 세대수의 **40%**를 가점제로, 나머지 **60%**를 추첨제로 입주자를 선정합니다.

■ 2순위 접수방법이 청약신청금 납부에서 청약통장 사용으로 변경되었으니, 2순위로 청약하고자 하시는 분은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지역별 예치금액과 상관없이 주택청약종합저축(청약예·부금 포함)에 가입되어 있어야 합니다.

■ **2018.12.11. 개정된「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28조 제8항에 의거 투기과열지구, 청약과열지역, 수도권 및 광역시는 추첨의 방법으로 입주자를 선정하는 주택수보다 추첨 대상자가 많은 경우, 다음 순서에 따라 입주자를 선정합니다.**

1. 추첨의 방법으로 공급되는 주택수의 75% : 무주택세대구성원
2. 나머지 25%의 주택(무주택세대구성원에게 공급하고 남은 주택 포함) : 무주택세대구성원과 1주택을 소유한 세대에 속한 자(기존 소유주택 처분조건을 승낙한 자로 한정)
3. 제1호 및 제2호에 따라 공급한 후 남은 주택이 있는 경우 : 1순위에 해당하는 자 중 입주자로 선정되지 않은 자에게 공급

※ 1주택(분양권등 제외)을 소유한 세대에 속한 자가 우선 공급받으려는 경우, ① 공급받은 주택의 입주 이전에 기존주택의 소유권 처분조건을 승낙하여야 하며, ② 입주예정일 이전에 기존주택의 소유권 처분계약에 관하여 신고하거나 검인을 받아야 하고, ③ 입주가능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기존주택의 소유권 처분을 완료하여야 합니다.

- ②에 따라 신고하거나 검인받지 않은 경우 입주할 수 없으며, ③에 따라 처분을 완료하지 않은 경우 공급계약이 해지될 수 있습니다.

■ 선정된 예비입주자 현황은 최초 공급계약 체결일부터 60일까지(예비입주자가 소진될 경우에는 그 때까지로 함) 당사의 인터넷 홈페이지(http://opera.switzen.com)에 공개되며, 공개기간이 경과한 다음 날에 예비입주자의 지위는 소멸되며, 예비입주자의 지위가 소멸된 때 예비입주자와 관련한 개인정보는 파기처리 하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2020.02.28. 시행한 국토교통부주택기금과 –1590(청약과열지역 등 예비입주자 선정비율 확대 요청)호에 따라 2020.03.16. 이후 청약과열지역/수도권(인천,경기)/지방광역시(부산, 대구, 대전, 광주, 울산)에서 입주자모집공고하는 주택은 300%의 예비입주자를 선정합니다. (투기과열지구내 공급 주택은 500% 적용)

■ **2019.12.6. 개정된「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26조에 의거 일반공급 예비입주자 선정방식이 변경되어 예비입주자 선정 총수에 미달 되어도 가점이 높은 순으로 예비순번을 부여합니다.**

• 일반공급 예비입주자 선정 시 주택형별로 공급세대수의 300%를 아래와 같이 선정합니다.

- 1순위 : 공급세대수의 300%까지 지역우선공급을 적용(대규모택지개발지구인 경우 지역구분 없음)하여 가점이 높은 자를 앞 순번으로 선정
 * 가점제가 적용되지 않는 주택인 경우 추첨의 방법으로 예비입주자를 선정
- 2순위 : 1순위에서 미달된 예비공급 세대수만큼 지역우선공급을 적용(대규모택지개발지구인 경우 지역 구분 없음)하여 추첨으로 선정

■ 특별공급 및 일반공급 입주자로 선정된 자 중 당첨이 취소되거나 공급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한 자 또는 공급계약을 해약한 자가 있으면 소명기간이 지난 후 특별공급 및 일반공급 예비입주자에게 순번에 따라 공급하되, 최초로 예비입주자를 입주자로 선정하는 경우 특별공급 및 일반공급의 당첨취소 또는 미계약 물량과 해당 주택의 동·호수를 공개한 후 동·호수를 배정하는 추첨의 참가 의사를 표시한 특별공급 예비입주자에 대하여는 특별공급 물량을, 일반공급 예비입주자에 대하여는 일반공급 물량을 추첨의 방법으로 동·호수를 배정하여 공급하고, 특별공급 물량 중 특별공급 예비입주자에게 공급하고 남은 주택은 일반공급 예비입주자에게 공급합니다.

■ **2018.05.04. 개정된「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26조의 제6항에 의거 예비입주자로 선정된 자가 다른 주택의 공급을 신청하여 입주자로 선정된 경우 예비입주자로서 주택을 공급받을 수 없으며, 동·호수 배정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다만, 예비입주자의 동·호수배정일(당첨일)이 입주자 선정일보다 빠른 경우 예비입주자 계약체결은 가능하며 입주자선정내역은 무효처리 됩니다.**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9조 제2항에 따라 **주택의 공급계약은 입주자 및 예비입주자 선정사실 공고일부터 11일이 경과한 후 3일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해당기간 동안에 체결합니다.**

■ 2018.12.11. 개정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4조 제5항 및 제23조 제2항 제7호에 따라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또는 과거** 국내 인정되는 체류자가 아닌 해외거주자로 인정되는 체류자인 경우 해당 주택건설지역 신청(대구광역시 6개월 이상 계속 거주한 자[**2020.01.31.** 이전부터 계속 거주])이 불가하며, 기타지역 신청(대구광역시 6개월 미만 및 경상북도 지역)이 가능합니다.

■ **전매 제한기간 등**

- 본 아파트는「주택법」 제57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분양가상한제 미적용주택으로「주택법」 제64조 제1항 및「주택법 시행령」 제73조 제1항 규정에 의거 **본 주택의 입주자로 선정된 날부터 6개월 동안 전매가 금지**됩니다.
- 전매금지 및 재당첨제한, 가점제 당첨 제한 및 1순위 자격 제한 등의 사항은 청약 시점의 관계법규의 적용을 받으며, 향후 관계법규 개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 **투기적발자 처벌** (「주택법」 제65조 및 제101조)

- 분양과 관련하여 주택 청약통장 및 주택 분양권을 불법 거래하다가 적발된 자는「주택법」 등 관계법령에 따라 주택공급계약이 취소될 수 있으며, 형사 고발되어 3년 이하의 징역에 처하거나 3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 불법거래를 알선 또는 중개한 부동산업자에 대해서도「공인중개사법」에 따라 자격정지, 등록취소 등의 처벌을 받게 됩니다.

■ **부동산거래의 신고**

- 본 아파트에 대한 공급계약을 체결한 계약자(외국인 포함)는「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3조에 따라 공급계약 체결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소재지 주무관청에 부동산거래의 신고를 사업주체와 공동으로 하여야 합니다. 따라서 부동산거래의 신고에 따른 필요한 서류는 사업주체에 제공하여야 하며, 신고를 거부하거나 서류 미제출로 인하여 발생하는 과태료 부과 등 모든 책임은 계약자에게 있으니 양지하시기 바랍니다.

■ **유의사항 및 제한사항 등 본인의 자격 사항에 대해 청약자 본인이 직접 확인 후 청약하시어 부적격당첨으로 인한 불이익을 당하는 일이 없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2018.12.11. 개정된「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8조 제3항에 의거 부적격으로 당첨이 취소된 자는 당첨일부터 '수도권 및 투기·청약과열지역 1년, 수도권외 6개월, 위축지역 3개월'(공급신청하려는 지역 기준) 동안 다른 분양주택(분양전환 공공임대주택 포함)의 입주자로 선정될 수 없습니다.

■ 청약 및 계약 등 주요일정 안내

※ 2020.03.02. 개정된「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1조 제2항에 의거 입주자모집공고는 최초 청약 신청접수일 10일 전에 해야 합니다. 다만, 시장·군수·구청장은 제35조 및 제36조에 따른 특별공급의 경우로서 공급물량이 적거나 청약 관심도가 낮다고 판단되는 등의 경우에는 5일 전으로 단축할 수 있습니다.

※ 한국감정원이 주택청약업무수행기관으로서 역할을 수행함에 따라 종전에 국민은행 청약통장 가입자도 청약홈을 통해 접수하게 되었습니다.

구분	입주자모집공고	특별공급	일반공급		당첨자 (동·호 발표)	계약
		기관추천, 다자녀 가구, 신혼부부, 노부모부양	1순위	2순위		
일정	2020년 07월 31일(금)	2020년 08월 18일(화)	2020년 08월 19일(수)	2020년 08월 20일(목)	2020년 08월 28일(금)	2020년 09월 08일(화) ~ 2020년 09월 14일(월)
방법 (일시)	-	인터넷 청약 (08:00 ~ 17:30)	인터넷 청약 (08:00 ~ 17:30)	인터넷 청약 (08:00 ~ 17:30)	개별조회 (www.applyhome.co.kr 로그인 후 조회 가능)	당사 견본주택 방문 (10:00 ~ 17:00)
장소	■ 분양홈페이지 (http://opera.swizen.com)	▪ 사업주체 견본주택 ▪ 한국감정원 청약Home – PC : www.applyhome.co.kr – 스마트폰앱(청약홈) * 청약통장 가입은행 구분 없음	■ 한국감정원 홈페이지 - PC : www.applyhome.co.kr - 스마트폰앱(청약홈)		■ 한국감정원(특별공급 및 일반공급) - PC : www.applyhome.co.kr - 스마트폰앱(청약홈)	■ 당사 견본주택 방문하여 계약체결 (대구광역시 동구 신천동 385-1번지)

※ 고령자, 장애인 등 인터넷 청약이 불가한 경우에 한해 특별공급은 견본주택 방문접수(10:00~14:00, 은행창구접수 불가), 일반공급은 청약통장 가입은행 본·지점(09:00~16:00)에서 청약 가능함.

※ 청약 신청한 주택의 신청취소는 신청 당일 청약신청 마감 이전까지 가능하며, 청약 접수 종료 이후에는 어떠한 경우라도 신청 취소 및 변경이 불가하오니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스마트폰앱 : 구글 플레이스토어에서 "청약홈" 검색(애플앱스토어 어플은 향후 이용가능)

- 스마트폰앱을 이용하여 청약할 경우에는 청약일 상당 기간 전에 앱을 설치하고 청약 시 사용할 공인인증서를 해당앱으로 미리 저장하시기 바랍니다. 청약 당일 공인인증서 설치 문제로 청약이 곤란할 경우에는 PC를 이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당 아파트의 도면 및 마감재 목록표 등은 견본주택에 비치되어 있으니, 계약 전 방문하시어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공고문은 작성 당시 법령 및 정책 등의 규정에 의거하여 작성하였으며, 이후 정책변경 및 법 개정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며. 그로 인하여 사업주체에 이의제기를 할 수 없습니다.

■ 2020.04.17. 개정된 내용 관련 자세한 사항은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을 참조하시기 바라며, 이 공고문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은 「주택법」,「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등 관계법령을 우선합니다.

I. 공급내역 및 공급금액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20조의 규정에 의거 대구광역시 북구청 건축주택과-36146호(2020.07.30)로 입주자모집공고 승인**

■ **공급위치** : **대구광역시 북구 고성동1가 55-2번지 일원**

■ **공급규모 및 내역** : 아파트 지하 2층, 지상 49층, 6개동 **총 854세대 및 부대복리시설**

[특별공급 361세대(일반기관추천특별공급 83세대, 다자녀가구특별공급 83세대, 신혼부부특별공급 171세대, 노부모부양특별공급 24세대) 포함]

■ **내진설계에 관한 사항 : 건축물의 구조기준 등에 관한 규칙에 의해 내진설계가 되어 있으며, 동 기준에 의한 내진 능력은 수정 메르칼리 진도 등급 Ⅶ-0.224g**

■ **입주예정일 : 2024년 04월 예정 (정확한 입주일자는 추후 통보함)**

■ **공급대상**

(단위 : ㎡, 세대)

구분	공동주택 주택관리번호 및 아파트코드	모델	주택형 (주거전용 면적)	약식 표기	세대별 계약면적					세대별 대지지분	총공급 세대수	특별공급					일반공급	저층 우선배정 세대수	입주 예정 시기
					세대별 공급면적			기타공용면적 (지하주차장등)	합계			기관추천	다자녀가구	신혼부부	노부모 부양	계			
					주거전용	주거공용	소계												
민영 주택	2020000929	01	84.9227A	84A	84.9227	32.6482	117.5709	56.2653	173.8362	17.4504	497	49	49	99	14	211	286	11	2024년 04월 (예정)
		02	84.9704B	84B	84.9704	36.2674	121.2378	56.2969	177.5346	17.4602	273	27	27	55	8	117	156	6	
		03	84.9580C	84C	84.9580	33.6764	118.6344	56.2887	174.9231	17.4576	67	6	6	14	2	28	39	2	
		04	84.9830D	84D	84.9830	32.8277	117.8107	56.3052	174.1160	17.4628	17	1	1	3	0	5	12	-	
	합계										854	83	83	171	24	361	493	19	

■ 공급금액 및 납부일정

(단위 : 원)

주택형 (㎡)	공급 세대수	층구분	해당 세대수	공급금액			계약금(10%)		중도금(60%)						잔금30%
				대지비	건축비	계	1차 (계약시 납입)	2차 계약후 30일이내	1회(10%)	2회(10%)	3회(10%)	4회(10%)	5회(10%)	6회(10%)	
									2021.04.15	2021.10.15	2022.04.15	2023.03.15	2023.07.15	2023.11.15	입주지정기간
84A	497	4F	9	176,324,000	342,276,000	518,600,000	10,000,000	41,860,000	51,860,000	51,860,000	51,860,000	51,860,000	51,860,000	51,860,000	155,580,000
		5F	11	180,064,000	349,536,000	529,600,000	10,000,000	42,960,000	52,960,000	52,960,000	52,960,000	52,960,000	52,960,000	52,960,000	158,880,000
		6F	11	182,104,000	353,496,000	535,600,000	10,000,000	43,560,000	53,560,000	53,560,000	53,560,000	53,560,000	53,560,000	53,560,000	160,680,000
		7F	11	184,144,000	357,456,000	541,600,000	10,000,000	44,160,000	54,160,000	54,160,000	54,160,000	54,160,000	54,160,000	54,160,000	162,480,000
		8F	11	186,184,000	361,416,000	547,600,000	10,000,000	44,760,000	54,760,000	54,760,000	54,760,000	54,760,000	54,760,000	54,760,000	164,280,000
		9F	11	188,224,000	365,376,000	553,600,000	10,000,000	45,360,000	55,360,000	55,360,000	55,360,000	55,360,000	55,360,000	55,360,000	166,080,000
		10F	11	190,264,000	369,336,000	559,600,000	10,000,000	45,960,000	55,960,000	55,960,000	55,960,000	55,960,000	55,960,000	55,960,000	167,880,000
		11F-20F	110	192,304,000	373,296,000	565,600,000	10,000,000	46,560,000	56,560,000	56,560,000	56,560,000	56,560,000	56,560,000	56,560,000	169,680,000
		21F-30F	107	194,004,000	376,596,000	570,600,000	10,000,000	47,060,000	57,060,000	57,060,000	57,060,000	57,060,000	57,060,000	57,060,000	171,180,000
		31F-40F	110	196,044,000	380,556,000	576,600,000	10,000,000	47,660,000	57,660,000	57,660,000	57,660,000	57,660,000	57,660,000	57,660,000	172,980,000
		41F 이상	95	197,064,000	382,536,000	579,600,000	10,000,000	47,960,000	57,960,000	57,960,000	57,960,000	57,960,000	57,960,000	57,960,000	173,880,000
84B	273	4F	5	173,978,000	337,722,000	511,700,000	10,000,000	41,170,000	51,170,000	51,170,000	51,170,000	51,170,000	51,170,000	51,170,000	153,510,000
		5F	6	178,058,000	345,642,000	523,700,000	10,000,000	42,370,000	52,370,000	52,370,000	52,370,000	52,370,000	52,370,000	52,370,000	157,110,000
		6F	6	179,758,000	348,942,000	528,700,000	10,000,000	42,870,000	52,870,000	52,870,000	52,870,000	52,870,000	52,870,000	52,870,000	158,610,000
		7F	6	181,798,000	352,902,000	534,700,000	10,000,000	43,470,000	53,470,000	53,470,000	53,470,000	53,470,000	53,470,000	53,470,000	160,410,000
		8F	6	183,838,000	356,862,000	540,700,000	10,000,000	44,070,000	54,070,000	54,070,000	54,070,000	54,070,000	54,070,000	54,070,000	162,210,000
		9F	6	185,878,000	360,822,000	546,700,000	10,000,000	44,670,000	54,670,000	54,670,000	54,670,000	54,670,000	54,670,000	54,670,000	164,010,000
		10F	6	187,918,000	364,782,000	552,700,000	10,000,000	45,270,000	55,270,000	55,270,000	55,270,000	55,270,000	55,270,000	55,270,000	165,810,000
		11F-20F	60	189,958,000	368,742,000	558,700,000	10,000,000	45,870,000	55,870,000	55,870,000	55,870,000	55,870,000	55,870,000	55,870,000	167,610,000
		21F-30F	58	191,658,000	372,042,000	563,700,000	10,000,000	46,370,000	56,370,000	56,370,000	56,370,000	56,370,000	56,370,000	56,370,000	169,110,000
		31F-40F	60	193,698,000	376,002,000	569,700,000	10,000,000	46,970,000	56,970,000	56,970,000	56,970,000	56,970,000	56,970,000	56,970,000	170,910,000
		41F 이상	54	194,718,000	377,982,000	572,700,000	10,000,000	47,270,000	57,270,000	57,270,000	57,270,000	57,270,000	57,270,000	57,270,000	171,810,000
84C	67	5F	2	176,970,000	343,530,000	520,500,000	10,000,000	42,050,000	52,050,000	52,050,000	52,050,000	52,050,000	52,050,000	52,050,000	156,150,000
		6F	2	178,670,000	346,830,000	525,500,000	10,000,000	42,550,000	52,550,000	52,550,000	52,550,000	52,550,000	52,550,000	52,550,000	157,650,000
		7F	2	180,710,000	350,790,000	531,500,000	10,000,000	43,150,000	53,150,000	53,150,000	53,150,000	53,150,000	53,150,000	53,150,000	159,450,000
		8F	2	182,750,000	354,750,000	537,500,000	10,000,000	43,750,000	53,750,000	53,750,000	53,750,000	53,750,000	53,750,000	53,750,000	161,250,000
		9F	2	184,790,000	358,710,000	543,500,000	10,000,000	44,350,000	54,350,000	54,350,000	54,350,000	54,350,000	54,350,000	54,350,000	163,050,000
		10F	2	186,490,000	362,010,000	548,500,000	10,000,000	44,850,000	54,850,000	54,850,000	54,850,000	54,850,000	54,850,000	54,850,000	164,550,000
		11F-20F	20	188,530,000	365,970,000	554,500,000	10,000,000	45,450,000	55,450,000	55,450,000	55,450,000	55,450,000	55,450,000	55,450,000	166,350,000
		21F-30F	18	190,570,000	369,930,000	560,500,000	10,000,000	46,050,000	56,050,000	56,050,000	56,050,000	56,050,000	56,050,000	56,050,000	168,150,000
		31F-40F	10	192,610,000	373,890,000	566,500,000	10,000,000	46,650,000	56,650,000	56,650,000	56,650,000	56,650,000	56,650,000	56,650,000	169,950,000
		41F 이상	7	193,630,000	375,870,000	569,500,000	10,000,000	46,950,000	56,950,000	56,950,000	56,950,000	56,950,000	56,950,000	56,950,000	170,850,000
84D	17	31F-40F	10	196,384,000	381,216,000	577,600,000	10,000,000	47,760,000	57,760,000	57,760,000	57,760,000	57,760,000	57,760,000	57,760,000	173,280,000
		41F 이상	7	197,404,000	383,196,000	580,600,000	10,000,000	48,060,000	58,060,000	58,060,000	58,060,000	58,060,000	58,060,000	58,060,000	174,180,000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 60조에 의거 계약금, 중도금, 잔금으로 구분하였으며, 동 규정에 의거 중도금 납부 일자는 건축공정에 따라 변동될 수 있습니다.
※ 본 아파트는 분양가상한제 미적용 민영주택으로서 상기 공급금액은 분양가 자율화에 따라 공급총액 범위 내에서 주택형별, 층별 등으로 적의 조정하여 책정한 금액입니다. 전용면적 85㎡이하 주택은 부가가치세 적용대상이 아닙니다.
※ 분양금액의 항목별 고시내용은 사업에 실제 소요된 비용과 다를 수 있습니다.
※ 편집 및 인쇄 과정상 오류가 있을 수 있으니 자세한 내용은 반드시 견본주택 분양사무실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입주자모집공고상(청약시 주택형)	84.9227A	84.9704B	84.9580C	84.9830D
약식표기 주택형	84A	84B	84C	84D

※ 주택형의 구분은 공고상의 표기이며 견본주택 및 카탈로그, 홍보제작물은 약식으로 표현되었으니, 청약 및 계약 시 주택형에 대한 착오가 없도록 특히 유의하시기 바람.
※ 평형환산방법 : 공급면적(㎡) × 0.3025 또는 공급면적(㎡) ÷ 3.3058.
※ 면적합산 시 소수점 5자리 이하에 대해 반올림 값이 적용되어 합산 면적의 차이가 발생할 수 있음.
※ 상기 공급세대의 청약접수는 동별, 호별 구분 없이 주택형별, 청약 순위별로 접수를 받고 동·호수를 추첨하여 추첨결과에 따라 각 동·호수로 당첨자를 선정함.

■ 공통사항

- 본 아파트는 분양가상한제 미적용주택으로 상기 주택형별 공급금액은 사업주체가 조정하여 책정한 금액임.
- 분양가격의 항목별 공시내용은 사업에 실제 소요된 비용과 다를 수 있음.
- 상기 공급금액에는 각 주택형별 공히 소유권 이전등기비용, 취득세가 미포함된 금액임.
- 상기 공급금액에는 발코니 확장 설치비용은 별도 비용임.
- 상기 공급금액에는 추가선택품목 금액이 포함되지 아니한 금액이며, 추가선택품목은 계약자가 선택하여 계약하는 사항으로 별도의 계약을 통해 선택이 가능함. (단, 계약체결 일정은 추후별도 안내 예정임)
- 오피스텔, 근린생활시설(단지 내 상가)은 상기 공급대상 및 공급금액에 포함되어 있지 않음.
- 상기 세대별 계약면적에는 계단실, 세대벽체면적 등의 주거공용면적과 지하주차장, 관리/경비실, 주민공동시설, 기계/전기실 등 그 밖의 공용면적이 포함되어 있으며, 각 주택형별 지하주차장 및 지하피트에 대한 금액이 상기 공급금액에 포함되어 있음.
- 상기 세대별 대지지분은 주택형별 전용면적 비율을 기준으로 배분하였으며, 향후 대지지분은 법령에 따른 공부정리 절차, 실측정리 또는 소수점 이하 단수 정리에 따라 차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공급 금액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함)
- 전용면적은 안목치수를 기준으로 산정하며, 상기 세대별 계약면적은 소수점 이하 단수조정으로 등기면적이 상이할 수 있음. (단, 소수점 이하 면적변경에 대해서는 정산하지 않음)
- 층수는 건립 동별, 해당 주택형이 속한 라인의 최상층 층임. (필로티 있는 동은 해당하는 층, 호수를 적용하여 산정하였으며, 실제 층수에 해당하는 층, 호수를 고려하여 분양가를 산정)
- 중도금은 당해 주택의 건축공정이 전체 공사비 (부지매입비를 제외함)의 50% 이상이 투입된 때(다만 동별 건축공정이 30%이상 되어야 한다)를 기준으로 전후 각 2회 이상 분할하여 받으며, 상기 중도금 납부일자는 예정일자로, 감리자의 건축공정 확인에 따라 추후 변동될 수 있음.
- 잔금은 사용검사일을 기준으로 받되, 다만, 임시사용승인을 얻어 입주하는 경우에는 전체 입주금의 10%에 해당하는 금액을 제외한 잔금을 입주일에 납부하고, 전체 입주금의 10%에 해당하는 잔금은 사용검사일 이후에 납부하여야 함. (대지권에 대한 등기는 공부정리 절차 등의 이유로 실 입주일과는 관계없이 다소 지연될 수 있으며, 위 단서조항은 적용되지 아니함)
- 사업주체가 본 아파트 "대상사업"의 시행권 및 분양자로서의 권리는 주택도시보증공사가 지정하는 자에게 양도하는 경우, 수분양자는 주택도시보증공사로부터 시행권 인수사실을 통보 받은 경우에는 별도의 동의절차 없이도 시행자(분양자)변경을 승인한 것으로 함.
- 공급금액은 계약금, 중도금, 잔금의 순서로 납부하며 잔금은 실입주일(열쇠 불출일) 전에 완납하여야 함.
- 공급대금[계약금, 중도금, 잔금] 납부일이 토·일요일 또는 공휴일인 경우 익일 은행 영업일 기준으로 함. (연체료 납부시 토/일요일 또는 공휴일로 인해 납부가 지연되는 경우라도 납부지연에 따른 연체일수로 산정되므로 유의바랍니다.)
- 공급대금 납부일정은 사전에 계약자 본인이 숙지하고 청약 및 계약체결을 하여야 하며, 이로 인하여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
- 중도금 금융대출을 원하는 경우(계약금 완납 시 대출 실행 가능) 수분양자가 분양계약체결 후 지정된 대출 협약은행과 별도의 중도금대출 계약을 체결하여야 함. (세부적인 대출신청일정 등은 별도 안내 예정) 단, 대출 미신청자와 본인의 부적격 사유로 인하여 대출이 불가한 계약자는 상기 납부일정에 맞추어 본인이 직접 납부하여야 함. (미납 시 연체료가 가산됨)
- 사업주체의 부도,파산 등으로 보증사고가 발생할 경우 당사가 대납하던 중도금 대출이자는 계약자가 부담하여야 하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 중도금 대출에 필요한 보증수수료, 대출수수료, 인지대 등 제반 경비는 계약자가 부담해야 하며, 금융 신용불량 거래자 등 계약자 본인의 개인적인 사정에 의한 대출이 불가하거나 대출한도가 부족할 경우 계약자는 공급대금 납부조건에 따라 중도금(잔금)을 현금으로 직접 납부(이와 관련하여 별도로 통지하지 않으며, 미납 시 연체료가 가산됨)하여야 하며, 대출 불가 사유로 인한 계약 해지를 주장할 수 없음.
- 사업주체가 장래에 주택도시보증공사 또는 주택도시보증공사가 지정하는 자에게 주택건설 사업부지(지상 건축물을 포함한다)를 신탁하는 경우 입주예정자의 동의가 있는 것으로 간주함.
- 청약(특별공급, 일반공급) 및 분양계약 시 모든 제출서류는 원본 제출하여야 하며, 제출한 서류는 반납하지 않고 일정기간 보관 후 폐기함.
- 본 아파트는 정부가 출자한 주택도시보증공사에서 분양보증 받은 아파트이며, 분양계약자는 사업주체의 부도, 파산 등으로 보증사고가 발생할 경우 사업주체를 주택도시보증공사로 변경되는 것에 대해 동의함.
- 본 표시재산의 구조물 등 모든 사항은 설계도면 등을 통하여 반드시 확인 후 계약하여야 하며, 확인하지 못한 사항으로 인한 이의제기 및 그 밖의 인쇄물이나 구두약정의 내용은 인정하지 아니함.

• 분양 대금 중 선납한 금액 및 지정된 계약금 계좌 외에 타 계좌에 입금한 금액은 주택분양보증을 받을 수 없고, 별도의 이자나 할인은 발생하지 않습니다.

Ⅱ. 신청자격 및 당첨자 선정방법

▣ 특별공급 공통사항[기관추천(국가유공자·장애인·장기복무 군인 등) / 다자녀 / 신혼부부/ 노부모부양 특별공급]

• 특별공급은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55조에 따라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무주택세대구성원으로서 1회에 한하여 1세대 1주택의 기준(1세대 내 무주택 세대 구성원 중 1인만 청약 신청가능, 노부모부양 특별공급은 세대주 한정)으로 공급이 가능하고 당첨자로 선정된 경우에는 향후 특별공급에 신청할 수 없으며, 중복 신청할 경우 전부 무효 처리됩니다.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36조제1호 및 제8의2에 해당하는 경우는 특별공급 횟수 제한 제외)

•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2020.07.31)** 현재 무주택요건, 청약자격요건 및 해당 특별공급별 신청자격을 갖추어야 함

■ 특별공급 공통사항

구분	내용
1회 한정/ 자격요건/ 자격제한	• 특별공급 주택을 분양받고자 하는 자는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55조에 따라 한 차례에 한정하여 1세대 1주택의 기준으로 공급이 가능하고 당첨자로 선정된 경우에는 향후 특별공급에 신청할 수 없으며, 중복 신청할 경우 전부 무효 처리됨.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36조 제1호 및 제8의2에 해당하는 경우는 특별공급 횟수 제한 제외) •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무주택요건, 청약자격요건 및 해당 특별공급별 신청자격을 갖추어야 함.
무주택 요건	•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다음 특별공급 유형별 무주택세대구성원 또는 무주택세대주 요건을 갖추어야 함. ※ 1세대 내 무주택세대구성원(노부모부양 특별공급은 무주택세대주 한정) 중 1인만 신청 가능하며, 공급신청자와 동일한 세대의 구성원(부부 포함)이 각각 신청하여 중복 당첨 **(예비 포함)**될 경우에는 모두 부적격 당첨으로 당첨이 취소됨. **[계약체결 불가, 부적격당첨자로 관리되며 당첨일부터 수도권 및 투기·청약과열지역 1년, 수도권외 6개월, 위축지역 3개월 (공급신청하려는 지역 기준) 동안 다른 분양주택 (분양전환 공공임대주택을 포함)의 당첨 제한]** - 기관추천 / 다자녀가구 / 신혼부부 특별공급 : 무주택세대구성원 요건 - 노부모부양자 특별공급 : 무주택세대주 요건 ※ **무주택세대구성원이란?** 다음 각 목의 사람(세대원) 전원이 주택을 소유하고 있지 아니한 세대의 구성원(「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조 제2호의3 및 제4호) 가. 주택공급신청자 나. 주택공급신청자의 배우자 다. 주택공급신청자의 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존속 포함)이면서 주택공급신청자 또는 주택공급신청자의 배우자와 세대별 주민등록표상에 함께 등재되어 있는 사람 라. 주택공급신청자의 직계비속(직계비속의 배우자 포함)이면서 주택공급신청자 또는 주택공급신청자의 배우자와 세대별 주민등록표상에 함께 등재되어 있는 사람 마. 주택공급신청자의 배우자의 직계비속(직계비속의 배우자 포함)이면서 주택공급신청자와 세대별 주민등록표상에 함께 등재되어 있는 사람
청약자격 요건	•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다음 특별공급 유형별 신청자의 청약통장 자격요건을 갖추어야 함. - **기관추천 특별공급(국가유공자, 장애인은 제외) / 신혼부부 특별공급 / 다자녀가구 특별공급 신청자** ① 청약예금 : 해당 주택에 신청 가능한 청약예금에 가입하여 6개월이 경과하고, 청약예금 지역별, 면적별 예치금액 이상인 자 ② 청약부금 : 청약부금에 가입하여 6개월이 경과하고, 매월 약정납입일에 납부한 월납입인정금액이 85㎡이하 주택에 신청 가능한 청약예금 예치금액 이상인 자 ③ 주택청약종합저축 : 주택청약종합저축에 가입하여 6개월이 경과하고, 해당 주택에 신청 가능한 청약예금 지역별, 면적별 예치금액 이상인 자 - **노부모부양 특별공급 신청자** ① 청약예금 : 해당 주택에 신청 가능한 청약예금에 가입하여 6개월이 경과하고, 청약예금 지역별, 면적별 예치금액 이상인 1순위자 ② 청약부금 : 청약부금에 가입하여 6개월이 경과하고, 매월 약정납입일에 납부한 월납입인정금액이 85㎡이하 주택에 신청 가능한 청약예금 예치금액 이상인 1순위자 ③ 주택청약종합저축 : 주택청약종합저축에 가입하여 6개월이 경과하고, 해당 주택에 신청 가능한 청약예금 지역별, 면적별 예치금액 이상인 자 ※ 각 청약통장으로 신청 가능한 전용면적 이하에 해당되는 주택형에만 청약 가능함.

[청약예금의 예치금액]

구 분	특별시 및 부산광역시	그 밖의 광역시	특별시 및 광역시를 제외한 지역
전용면적 85㎡ 이하	300만원	250만원	200만원
전용면적 102㎡ 이하	600만원	400만원	300만원
전용면적 135㎡ 이하	1,000만원	700만원	400만원
모든면적	1,500만원	1,000만원	500만원

유의사항

- 2018.05.04. 개정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에 의거 특별공급 신청 방법이 '견본주택 방문 신청'에서 '청약Home(www.applyhome.co.kr) 인터넷 청약 신청' 으로 변경됨. 해당 신청일에 인터넷 청약접수를 원칙으로 하며, 노약자, 장애인 등 인터넷 청약이 불가한 경우에만 견본주택에서 접수가 가능함.
 ※ 노약자, 장애인 등 인터넷 청약이 불가한 경우에만 견본주택에서 접수가 가능하며 원활한 업무처리를 위하여 가급적 인터넷 신청을 권장함.
- 인터넷 청약(청약Home)의 경우 서류제출은 필요하지 않으며, 방문접수(견본주택) 시에는 공급별 구비서류를 지참하여야 함.
- 청약 시 신청자의 착오로 인한 잘못된 신청에 대해서는 수정 접수가 불가하며, 이에 대한 책임은 청약신청자에게 있으므로 유의하시기 바람.
- 신청접수는 당첨자발표일이 동일한 주택 전체에 대하여 1세대 1건만 신청 가능하며, 2건 이상 청약 신청하여 모두 당첨된 경우 당첨 모두를 무효 처리함.
- 같은 단지 내 1인 1건만 신청가능(1인 2건 이상 청약 시 모두 무효처리). 단, 사전 예약접수 후에도 특별공급 또는 일반공급 신청이 가능하나, 동일주택의 특별공급 또는 일반공급 당첨자 (추가입주자 및 부적격당첨자 포함)로 선정된 경우 사전 예약접수 입주자선정 시 추첨대상자 명단에서 제외
- 부적격 처리된 특별공급주택 및 미계약 또는 계약 해제 또는 해지된 특별공급 주택은 특별공급 예비당첨자에게 공급됨.
- 주택소유여부의 판단에 있어 당첨 검수일(계약체결 전 서류접수) 또는 계약체결 전 당시 제출한 무주택 증명서류로 우선 입주자 선정을 하고 국토교통부 전산검색 결과에 따른 세대구성원의 주택소유 여부에 따라 부적격 통보를 받을 수 있음. [노부모부양 특별공급 청약 시에는 만 60세 이상의 직계존속이 소유한 주택(분양권등 포함)을 무주택으로 인정하지 않음]
- 신혼부부 특별공급 신청 시 신혼부부는 혼인신고일부터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까지 계속하여 무주택자이어야 함. 단,「주택공급에 관한 규칙」개정시행일(2018.12.11.) 전 기존주택을 처분하여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무주택기간이 2년을 경과한 경우 2순위 자격이 부여됨. (부칙 제5조 신혼부부 특별공급 특례)
- 일반(기관추천), 다자녀, 노부모부양 특별공급 시 과거에 주택(분양권등 포함)을 소유하였더라도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무주택이면 신청이 가능함.
- 과거 특별공급에 당첨된 사실이 있는 자 및 그 세대에 속하는 자는 신청할 수 없음.
- 특별공급 대상자로서 동·호수를 배정받고 공급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한 경우 당첨자로 보며(1회 특별공급 간주), 해당 구비서류 미비 시 계약체결 후라도 계약이 해제될 수 있음.
- 특별공급 1세대 내 1인만 신청가능하며 중복 신청할 경우 전부 무효 처리됩니다.(부적격 당첨자로 처리)
- 특별공급간 중복 신청할 수 없으며 중복 청약시 모두 부적격 처리 됩니다. (부적격 당첨자로 처리)

※ 이 공고문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등 관계법령에 따릅니다.

■ 특별공급별 신청자격별·주택형별 공급세대수

(단위 : 세대)

구분			84A	84B	84C	84D	합계
일반(기관추천) 특별공급	국가 유공자 외		7	3	1	0	11
	장기복무 제대군인		3	2	1	0	6
	장애인(대구시)		10	7	1	1	19
	중소기업근로자		10	5	1	0	16
	10년이상복무군인		10	5	1	0	16
	북한이탈주민		9	5	1	0	15
	소계		**49**	**27**	**6**	**1**	**83**
다자녀가구 특별공급	-		**49**	**27**	**6**	**1**	**83**
신혼부부 특별공급	소득기준	우선공급(75%)	75	42	11	3	131
		일반공급(25%)	24	13	3	0	40
	소계		**99**	**55**	**14**	**3**	**171**

노부모부양 특별공급	-	14	8	2	0	24
합계		**211**	**117**	**28**	**5**	**361**

■ 기관추천 특별공급(「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36조 : 전용면적 85㎡이하 공급세대의 10%이내) : 83세대

- 대상자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36조에 해당하는 자로서 최초 모집공고일**(2020.07.31)**현재 무주택세대구성원으로서 특별공급 대상으로 해당 기관장의 추천을 받은 자로서 (단, 거주요건 등 우선순위 기준은 해당 기관장이 정하며, 과거 특별공급에 당첨된 사실이 있는 자는 제외함.), 해당 기관장이 정하는 우선순위 기준에 따라 공급합니다.

※ 청약자격요건 : 청약통장 가입 기간 6개월 경과(지역별/면적별 예치금액 이상) 단, 국가유공자, 국가보훈대상자, 장애인 제외

※ 추천기관

구분	관련법규	해당기관
국가유공자 등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36조 2호부터 6호까지의 국가유공자 또는 그 유족 등	대구지방보훈청 복지과
장애인	「장애인복지법」제32조에 따라 장애인등록증이 교부된 자	대구광역시청 장애인복지과
중소기업근로자	「중소기업인력 지원특별법」제3조에 따른 중소기업에 종사하는 근로자	대구·경북지방중소벤처기업청 성장지원과
10년 이상 장기복무 군인	「군인복지기본법」제10조 10년 이상 복무한 군인	국방부 국군복지단
북한이탈주민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제2조 북한이탈주민	하나원

• 당첨자 선정방법

- 기관추천 특별공급의 경우 자격요건을 갖춘 자는 먼저 해당기관에 신청하여야 함.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36조에 의거하여 관계기관의 장이 정하는 우선순위에 따라 공급함.
- 일반(기관추천) 특별공급 대상자는 해당기관에서 선정하여 사업주체에 통보한 자만 신청 가능하며, 해당기관에서 특별공급대상자로 선정되었다 하더라도 반드시 해당 신청일에 인터넷 신청방법으로 신청하여야 함. **[미신청 시 당첨자선정(동·호 배정)에서 제외되며, 계약 불가]**
- 일반(기관추천) 특별공급 예비대상자는 해당기관에서 선정하여 사업주체에 통보한 자만 신청 가능하며, 해당 기관에서 특별공급 예비대상자로 선정되었다 하더라도 반드시 해당 신청일에 인터넷 청약 신청의 방법으로 신청하여야 하며, 특별공급 입주자를 선정하고 남은 주택이 있는 경우 다른 특별공급 신청자 중 선정되지 않은 자를 포함하여 무작위 추첨으로 입주자 및 예비입주자를 선정하므로, 입주자 및 예비입주자로 선정되지 않을 수 있음.

※ 해당기관 추천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4조 5항에 의거 해당주택 건설지역(대구광역시 6개월 이상 거주자)에 거주하는 신청자를 우선순위로 추천합니다.

- 특별공급은 무주택세대구성원에게 1세대 1주택(공급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1세대 1명을 말함) 기준으로 공급하므로 세대 내 2명 이상이 각각 신청하여 1명이라도 선정이 되면, 당첨자는 부적격당첨자로 처리되고, 예비입주자는 입주자로 선정될 기회를 제공받을 수 없으니 유의하여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구분		84A	84B	84C	84D	합계
일반(기관추천) 특별공급	국가 유공자 외	7	3	1	0	11
	장기복무 제대구인	3	2	1	0	6
	장애인(대구시)	10	7	1	1	19
	중소기업근로자	10	5	1	0	16
	10년이상복무군인	10	5	1	0	16
	북한이탈주민	9	5	1	0	15
	소계	**49**	**27**	**6**	**1**	**83**

■ 다자녀 특별공급(「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40조 : 전체 공급세대수의 10%이내) : 83세대

• 신청자격

- 대상자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40조에 해당하는 자로서 **입주자모집공고일(2020.07.31) 현재 대구광역시에 거주하거나 경상북도 지역에 거주하는 만19세 미만의 직계 자녀 3명(태아 포함) 이상을 둔 현재 무주택 세대구성원**
- 입주자저축에 가입하여 청약통장 가입요건을 갖춘 자(청약통장 가입 기간 6개월 이상 경과, 지역별/면적별 예치금액 이상)
- 과거에 주택을 소유하였더라도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무주택세대구성원이면 신청 가능함.

- 입주자 모집공고일 현재 3명 이상의 자녀 모두 민법상 미성년자(만 19세 미만)이어야 함. 3명 이상의 자녀 중 전부 또는 일부가 주민등록표등본상 세대주와 다른 지역에 거주할 경우 가족관계증명서를 제출하여 미성년자임을 입증하여야 함.
- 자녀수에는 임신 중에 있는 태아, 입양자녀도 포함 됩니다.[임신의 경우 서류 제출 시 출산 관련 자료(출생증명서, 유산·낙태 관련 진단서, 임신 지속 시 임신진단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서류미제출, 허위임신, 불법낙태의 경우 당첨취소 및 부적격 처리됨]
- 태아나 입양한 자녀를 자녀수에 포함할 경우 출산 등과 관련한 자료를 제출하거나 입주 시까지 입양이 유지되어야 함.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40조 제3항)
- 분양권 전매 요청시 임신자격이 유지(또는 출산)되는지 확인하기 위하여 사업주체가 요구하는 입증서류를 제출하여야 하며, 임신자격이 유지(또는 출산)되고 있다고 사업주체가 판단하는 경우에만 분양권 전매 요청을 접수 합니다.
- 재혼으로 성이 다른 자녀를 부양하는 경우 가족관계증명서를 제출하여 자녀임을 입증해야 합니다.
- 기타 자세한 사항은 「다자녀 특별공급 운영지침」관련 법령에 의합니다.

구 분	84A	84B	84C	84D	합계
다자녀가구 특별공급	49	27	6	1	83

• **당첨자 선정 방법**

- 해당 주택건설지역(대구광역시 6개월 이상 거주) 거주자에게 우선 공급하며, 잔여 세대 발생 시 대구광역시 6개월 미만 거주자 및 경상북도 거주하는 신청자에게 공급하며, 경쟁이 있는 경우 '다자녀가구 특별공급 우선순위 배점표'에 의한 점수순에 따라 대상자를 선정함. 또한, 동일점수로 경쟁이 있을 경우 ①미성년 자녀수가 많은 자 ②자녀수가 같을 경우 공급 신청자의 연령(연월일 계산)이 많은 자 순으로 공급함.

• **다자녀가구 배점 기준표(신청시 배점표에 자필작성 및 점수기재)**

- 특별공급은 무주택세대구성원에게 1세대 1주택(공급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1세대 1명을 말함) 기준으로 공급하므로 세대 내 2명 이상이 각각 신청하여 1명이라도 선정이 되면, 당첨자는 부적격당첨자로 처리되고, 예비입주자는 입주자로 선정될 기회를 제공받을 수 없으니 유의하여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 특별공급별 신청자격 및 당첨자 선정기준

평점요소	총배점	배점기준		비고
		기준	점수	
계	100			
미성년 자녀수(1)	40	미성년 자녀 5명 이상	40	• 자녀(태아, 입양아, 전혼자녀 포함)는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만19세 미만의 미성년자인 경우만 포함
		미성년 자녀 4명	35	
		미성년 자녀 3명	30	
영유아 자녀수(2)	15	자녀 중 영유아 3명 이상	15	• 영유아(태아, 입양아, 전혼자녀 포함)는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만6세 미만의 자녀
		자녀 중 영유아 2명	10	
		자녀 중 영유아 1명	5	
세대구성(3)	5	3세대 이상	5	• 공급신청자와 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존속을 포함하며 무주택자로 한정)이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로부터 과거 3년 이상 계속하여 동일 주민등록표 등본에 등재
		한부모 가족	5	• 공급신청자가「한부모가족지원법 시행규칙」제3조에 따라 여성가족부 장관이 정하는 한부모 가족으로 5년이 경과된 자
무주택기간(4)	20	10년 이상	20	**• 배우자의 직계존속(공급신청자 또는 배우자와 동일 주민등록표등본에 등재된 경우에 한정)도 무주택자이어야 하며, 무주택기간은 공급신청자 및 배우자의 무주택기간을 산정** **• 청약자가 성년(만19세 이상, 미성년자가 혼인한 경우 성년으로 봄)이 되는 날부터 계속하여 무주택인 기간으로 산정하되 청약자 또는 배우자가 주택을 소유한 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그 주택을 처분한 후 무주택자가 된 날(2회 이상 주택을 소유한 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최근에 무주택자가 된 날을 말함)부터 무주택기간 산정**
		5년 이상 ~ 10년 미만	15	
		1년 이상 ~ 5년 미만	10	
해당 시·도 거주기간(5)	15	10년 이상	15	**공급신청자가 성년자(만19세 이상, 미성년자가 혼인한 경우 성년으로 봄)로서 해당 지역에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까지 계속하여 거주한 기간을 산정** * 시는 광역시·특별자치시 기준이고, 도는 도.특별자치도 기준이며, 수도권의 경우 서울.경기.인천지역 전체를 해당 시.도로 본다.
		5년 이상 ~ 10년 미만	10	
		1년 이상 ~ 5년 미만	5	
입주자저축가입기간(6)	5	10년 이상	5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공급신청자의 가입 기간을 기준으로 하며 입주자저축의 종류, 금액, 가입자명의 변경을 한 경우에도 최초 가입일 기준으로 산정

(1), (2) : 주민등록표등본이나 가족관계증명서로 확인(이혼·재혼의 경우 자녀가 동일한 주민등록표상에 등재된 경우(공급신청자와 동일한 세대별 주민등록표상에 등재되어 있지 아니한 공급신청자의 배우자와 동일한 세대를 이루고 있는 경우도 포함)에 한함)

(3) : 한부모 가족의 경우 한부모가족증명서로 확인 (3), (4) : 주택소유여부 판단 시「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53조를 적용

(4), (5) : 주민등록표등본이나 주민등록표초본으로 확인 (6) : 입주자저축 가입확인서로 확인

※ 동점자 처리 ① 미성년 자녀수가 많은 자 ② 자녀수가 같을 경우 공급신청자의 연령(연월일 계산)이 많은 자

※ 상기 기재사항이 사실과 다르거나 위 기재내용을 검색 또는 확인결과 평점요소 자격이 다르거나 무주택기간 상이 및 유주택자, 분양가 상한제 적용 주택에 당첨되어 재당첨 제한기간 내에 당첨 받는 등 부적격자로 판명될 경우에는 당첨취소 및 계약해제는 물론 관련법령에 따라 처벌될 수 있으므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주민등록초본상 말소사실이 있는 경우 해당 시·도 거주기간은 재등록일 이후부터 산정됩니다.

※ 기타 본 입주자모집공고 상에 표시되지 않는 내용에 대해서는 '다자녀가구 및 노부모부양 주택 특별공급 운용지침'[국토교통부 고시 제2018-269호(2018.5.8.)]에 따릅니다.

■ 신혼부부 특별공급(「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41조 : 전용면적 85㎡이하 공급세대수의20%이내) : 171세대

• 신청자격

- 대상자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41조에 해당하는 자로서 **입주자모집공고일(2020.07.31) 현재 대구광역시에 거주하거나 경상북도** 지역에 거주하고 **혼인기간이 7년 이내**(혼인신고일 기준, 재혼포함)의 **무주택세대구성원**(신혼부부는 혼인신고일부터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까지 계속 무주택자이어야 함*)으로서「신혼부부 주택 특별공급 운용지침」에서 정하는 **소득기준을 충족하는 자**

 * 단, 2018.12.11. 전 기존주택을 처분하여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무주택기간이 2년을 경과한 경우 2순위 청약 가능 (신혼부부 특별공급 특례)

- 입주자저축에 가입하여 청약통장 가입요건을 갖춘 자**(청약통장 가입 기간 6개월 이상 경과, 지역별/면적별 예치금액 이상)**
- 출산은 기본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및 주민등록표 등본으로 판단하며, 임신의 경우 임신진단서, 입양의 경우 입양관계증명서(양자 및 친양자의 경우 입양관계증명서 상 입양신고일이 적용됨) 등으로 확인
- 임신의 경우 계약서류 제출 시 출산 관련 자료(출생증명서, 유산·낙태 관련 진단서, 임신 지속 시 임신진단서)를 추가로 제출하여야 하며 서류 미제출, 허위 임신, 불법 낙태의 경우 당첨취소 및 부적격 처리되어 향후 신청이 제한됩니다. (출산 관련 자료는 공고일 현재 임신 사실 확인이 가능해야 함)
- **소득기준 : 해당 세대의 월평균 소득이(「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2조 4호 각 목에 해당하는 사람을 포함)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월평균소득(4명 이상 세대는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소득을 말한다) 기준의 120%이하인 자(배우자가 소득이 있는 경우 130% 이하)**

※ 임신부부 또는 입양부부가 신혼부부 특별공급의 입주자로 선정된 경우, 사업주체는 입주예정자에게 입주지정기간 개시일 전까지 출산 및 입양 관련 서류(출생증명서, 유산·낙태 관련 진단서 등) 제출을 요구하여 출산여부 및 입양상태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입양의 경우에는 입주예정자가 입주하기 전에 입주지정기간 개시일 이후 발급받은 가족관계증명서와 입양관계증명서를 통해 확인하고, 임신부부의 임신상태가 입주지정 개시일까지 지속되는 경우에는 입주예정자가 입주하기 전에 입주지정기간 개시일 이후 발급받은 임신진단서를 통해 이를 확인할 수 있으며 입주예정자가 관련 서류를 제출하지 않거나, 불법 낙태 또는 입주 전 파양한 사실이 판명되는 때에는 공급계약을 취소될 수 있습니다.

※ 자녀수 산정 시 재혼한 경우 이전 배우자와의 혼인관계에서 출산한 미성년인 자녀가 공급신청자와 동일한 세대를 이루고 있는 경우에는 포함(공급신청자의 직계비속인 미성년 자녀가 동일한 세대별 주민등록표상에 등재되어 있지 아니한 공급신청자의 배우자와 동일한 세대를 이루고 있는 경우도 포함)하여 산정합니다.

• **당첨자 선정 방법**

- 2018.05.04. 개정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에 의거 민영주택 신혼부부 특별공급 대상 세대수의 75%를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월평균 소득 기준의 100%이하인 자(배우자 소득이 있는 경우 120% 이하)에게 우선공급하며, 나머지 주택(우선공급에서 미분양 된 주택을 포함)은 소득기준을 완화하여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월평균 소득 기준의 120%이하인 자(배우자 소득이 있는 경우 130% 이하)까지 확대하여 일반공급(우선공급에서 입주자로 선정되지 아니한 자를 포함한다)합니다.
- 특별공급은 무주택세대구성원에게 1세대 1주택(공급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1세대 1명을 말함) 기준으로 공급하므로 세대 내 2명 이상이 각각 신청하여 1명이라도 선정이 되면, 당첨자는 부적격당첨자로 처리되고, 예비입주자는 입주자로 선정될 기회를 제공받을 수 없으니 유의하여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 **우선공급 또는 일반공급에서 경쟁이 있는 경우 당첨자 선정방법**

-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2020.07.31)** 현재를 기준으로 자녀유무에 따라 순위제를 규정하며, 제1순위에 우선공급 합니다.

① **제1순위 : 현재 혼인관계에 있는 배우자와의 혼인기간 중 자녀를 출산**(임신 중이거나 입양한 경우 포함)하여 **자녀가 있는 자**

※ 재혼일 경우에는 입주자 모집공고일 현재 혼인 관계에 있는 배우자와의 혼인 기간 내 임신 중이거나 출산(입양포함)한 자녀가 있는 경우에만 해당

② **제2순위 :** 1순위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자 **→ 무자녀 또는 2018.12.11. 전 기존주택을 처분하고 무주택기간이 2년을 경과**

• **같은 순위 내에서 경쟁이 있는 경우 당첨자 선정방법**

- 제1순위에서 경쟁이 있는 경우에는 다음의 순서대로 입주자를 선정함.

① 해당 주택건설지역(대구광역시 6개월 이상 거주) 거주자

② 미성년 자녀(태아를 포함한다) 수가 많은 자

* 재혼인 경우 이전 배우자와의 혼인관계에서 출산.입양한 미성년자녀(전혼자녀)를 포함하되, 그 자녀가 신청자 또는 세대 분리된 재혼배우자와 동일한 주민등록표등본상에 등재되어야 함.
* 재혼 배우자의 친자녀(전혼 배우자의 자녀)는 신청자와 동일한 주민등록표등본상에 등재된 경우만 해당

③ 미성년 자녀(태아를 포함한다) 수가 같은 경우에는 추첨으로 선정된 자

- 제2순위에서 경쟁이 있는 경우에는 다음의 순서대로 입주자를 선정합니다.

① 해당 주택건설지역(대구광역시 6개월 이상 거주) 거주자

② 미성년 자녀(태아를 포함한다) 수가 많은 자

* 재혼인 경우 이전 배우자와의 혼인관계에서 출산.입양한 미성년자녀(전혼자녀)를 포함하되, 그 자녀가 신청자 또는 세대 분리된 재혼배우자와 동일한 주민등록표등본상에 등재되어야 함.
* 재혼 배우자의 친자녀(전혼 배우자의 자녀)는 신청자와 동일한 주민등록표등본상에 등재된 경우만 해당

③ 미성년 자녀(태아를 포함한다) 수가 같은 경우에는 추첨으로 선정된 자

※ 임신부부 또는 입양부부가 신혼부부 특별공급 입주자로 선정된 경우, 사업주체는 입주예정자에게 입주지정기간 개시일 전까지 출산 및 입양 관련 서류(출생증명서, 유산·낙태·관련·진단서 등) 제출을 요구하여 출산여부 및 입양상태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입양의 경우에는 입주예정자가 입주하기 전에 입주지정기간 개시일 이후 발급받은 가족관계증명서와 입양관계증명서를 통해 확인하고, 임신부부의 임신상태가 입주지정 개시일까지 지속되는 경우에는 입주예정자가 입주하기 전에 입주지정기간 개시일 이후 발급받은 임신진단서를 통해 이를 확인할 수 있으며 입주예정자가 관련 서류를 제출하지 않거나, 불법 낙태 또는 입주 전 파양한 사실이 판명되는 때에는 공급계약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 **기타 유의사항**

- 입양의 경우 입주시까지 입양자격을 유지하여야 하며, 입양자격이 유지되는지 확인하기 위하여 사업주체가 요구하는 입증서류를 제출하여 입증이 되었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만 입주가 가능합니다.
- 입주 전 파양한 경우에는 당첨(공급계약) 취소 및 부적격 처리됩니다.[분양권 전매 요청 시 입양자격이 유지되고 있는지 확인하기 위하여 사업주체가 요구하는 입증서류를 제출하여야 하며, 입양자격이 유지되고 있다고 사업주체가 판단하는 경우에만 분양권 전매 요청을 접수함]
- 임신의 경우 서류 제출 시 출산관련자료 (출생증명서, 유산·낙태 관련 진단서, 임신 지속시 임신 진단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서류 미제출, 허위임신, 불법낙태의 경우 당첨취소 및 부적격 처리됩니다. [분양권전매 요청시 임신자격이 유지(또는 출산)되는지

확인하기 위하여 사업주체가 요구하는 입증서류를 제출하여야 하며, 임신자격이 유지(또는 출산)되고 있다고 사업주체가 판단하는 경우에만 분양권 전매 요청을 접수함]

- 출산 관련자료는 공고일 현재 임신사실 확인이 가능해야 합니다.
- 출산은 가족관계등록부 및 주민등록등본으로 판단하며, 양자 및 친자의 경우 입양신고일이 적용 됩니다.
- 가구당 월평균 소득은 연간소득을 근무월수로 나눈 금액으로 합니다.
- 군복무중이어서 건강(의료)보험증이 없는 경우, 재직증명서와 의료보험 자격득실 확인서를 징구하고 이 경우 군복무자(직업군인 제외)는 소득이 없는 것으로 간주하고 군복무자의 배우자 소득을 파악하여 월평균 소득을 산정합니다.
- 종교기관(교회, 사찰 등)이 신청인 앞으로 등록되어 있는 경우, 소득 신고의무 및 국민연금 가입의무가 없는 자로서 종교기관이 신청자 앞으로 등록되어 있는 경우는 대표자가 무보수임을 증명할 수 있는 정관 등을 첨부하여 소득증빙자료로 준용합니다.
- 유자녀 부부로 청약하려는 자가 입주자모집공고일 이전 출생하였으나 입주자모집공고일 이후 출생신고를 한 경우, 가족관계증명서를 확인하여 출생자녀가 부부사이의 자녀로 인정되는 경우 청약자격을 인정합니다.
-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공급신청자는 전년도 계속하여 직장에 근무, 공급신청자의 배우자는 금년도 근로자 및 자영업자가 아닌 경우, 우선공급 및 일반공급의 "배우자 소득이 있는 경우"에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 전년도 출산휴가 및 육아휴직인 경우, 전년도 정상적인 소득과 근무개월수 및 출산휴가 기간(고용보험가입이 되어 있으면 소득합산)합산하여 전년도 월평균 소득을 산정함.
- 자영업자이면서 근로자인 경우, 전년도 사업소득에 대한 월평균 소득과 근로소득에 대한 월평균소득을 각각 산정하여 합산하되 사업소득 손실로 되어 있으면 사업소득은 없는 것으로하여 근로소득만으로 월평균 소득을 산정합니다.
- 신청자 명의 사업자(법인)등록되어 있으면서 본인이 해당 사업장의 근로자인 경우, 소득금액증명서상의 사업소득이 법인인감이 날인된 소득증빙서류(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근로소득지급조서 등)로 근로소득을 확인한 후 두 소득금액을 합산하여 월평균 소득을 산정합니다.
- 직업이 프리랜서이고 소득이 불규칙한 경우, 종합소득세를 신고한 사람인 경우에는 소득금액증명으로 소득을 확인하고, 신고하지 않은 사람의 경우에는 계약서상의 계약금액으로 월평균 소득을 산정합니다.
- 근무월수는 근로자의 경우 재직증명서상의 근무월수를 기준으로 하고, 사업자의 경우 사업자등록증상의 기간을 기준으로 합니다.
- 기타 본 공고상에 표시되지 않은 내용에 대해서는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및 '신혼부부 주택 특별공급 운용지침'에 따릅니다.

공급유형		구분	2019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소득					
			3인 이하	4인	5인	6인	7인	8인
우선공급 (기준소득, 75%)	배우자 소득이 없는 경우	월평균 소득기준 100% 이하	5,554,983원	6,226,342원	6,938,354원	7,594,083원	8,249,812원	8,905,541원
	배우자 소득이 있는 경우	월평균 소득기준 120% 이하	6,665,980원	7,471,610원	8,326,025원	9,112,900원	9,899,774원	10,686,649원
일반공급 (상위소득, 25%)	배우자 소득이 없는 경우	월평균 소득기준 100%초과~120%이하	5,554,984원 ~ 6,665,980원	6,226,343원 ~ 7,471,610원	6,938,355원 ~ 8,326,025원	7,594,084원 ~ 9,112,900원	8,249,813원 ~ 9,899,774원	8,905,542원 ~ 10,686,649원
	배우자 소득이 있는 경우	월평균 소득기준 120%초과~130%이하	6,665,981원 ~ 7,221,478원	7,471,611원 ~ 8,094,245원	8,326,026원 ~ 9,019,860원	9,112,901원 ~ 9,872,308원	9,899,775원 ~ 10,724,756원	10,686,650원 ~ 11,577,203원

- 기준소득 : 배우자가 소득이 있는 경우, 부부 중 1인의 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100%를 초과하지 않아야 하며, 부부 중 1인 소득이 월평균 소득기준 100% 초과 시 일반공급 25%(상위소득)[부부 모두 소득이 있는 경우(월평균 소득기준 120%초과~130%이하)]을 선택하셔야 함.
- 상위소득 : 배우자가 소득이 있는 경우, 부부 중 1인의 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120%를 초과하지 않아야 함.

※ 9인 이상 가구 소득기준 → 8인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소득 + {1인당 평균소득(655,729) * (N-8)}　　※ N → 9인 이상 가구원수

※ 가구당 월평균 소득은 무주택세대구성원 중 세대주 및 성년인자(만19세 이상)의 합산 소득입니다. (단, 세대원의 실종 · 별거 등으로 소득파악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주민등록등본 말소를 확인하고 소득산정의 대상에서 제외함)

※ 월평균소득은 연간소득÷근무월수를 말하며, 연간소득은 근로자의 경우에는 비과세소득이 제외된 전년도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상의 총급여액(21번) 및 근로소득자용 소득금액증명상의 과세대상급여액을 기준으로 하고, 사업자인 경우에는 전년도 종합소득세 소득금액증명 원본상 과세대상급여액을 기준으로 하며, 근무월수는 근로자인 경우에는 재직증명서상의 근무월수를, 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상의 기간을 기준으로 합니다.

※ 가구원수는 무주택세대구성원 전원으로 산정. (단, 임신 중인 태아는 태아 수 만큼 가구원수로 인정)

구분			84A	84B	84C	84D	합계
신혼부부 특별공급	소득기준	우선공급(75%)	75	42	11	3	131
		일반공급(25%)	24	13	3	0	40
	합계		99	55	14	3	171

• **신혼부부 소득증빙서류**

해당자격		소득입증 제출서류	발급처
근 로 자	일반근로자	• 전년도 휴직 기간이 없는 경우 : ① 재직증명서 ② 전년도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또는 전년도 근로소득자용 소득금액증명서 • 전년도 휴직 기간이 있는 경우 : ① 재직증명서(휴직 기간을 명시하여 발급) ② 전년도 갑종근로소득에 대한 소득세원천징수증명서(매월 신고납부대상자확인으로 발급)	① 해당 직장 ② 세무서 / 해당 직장
	신규 취업자 / 금년도전직자	① 재직증명서 ② 금년도 월별 근로소득원천징수부 또는 갑종근로소득에 대한 소득세 원천징수증명서	①, ② 해당 직장
	전년도 전직자	① 재직증명서 ② 전년도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①, ② 해당 직장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이 발급되지 않는 자 (학원강사, 보육교사 등)	① 재직증명서 ② 총급여액 및 근무 기간이 기재된 근로계약서 또는 월별급여명세표(근로소득지급조서)	①, ② 해당 직장
자 영 업 자	일반과세자 / 간이과세자 면세사업자	① 전년도 종합소득세 신고자용 소득금액증명 ② 사업자등록증	① 세무서
	간이과세자중 소득세미신고자	① 간이과세자 사업자등록증명원	① 세무서
	신규사업자	① 국민연금보험료납입증명서 및 국민연금산정용가입내역확인서 또는 최근의 부가가치세 확정신고서(부본) ② 사업자등록증	① 국민연금관리공단 / 세무서
	법인사업자	① 전년도 종합소득세 신고자용 소득금액증명 ② 법인등기부등본 및 사업자등록증	① 세무서 ② 등기소
보험모집인, 방문판매원		① 전년도 사업소득원천징수영수증 또는 전년도 사업소득자용 소득금액증명 또는 당해 회사의 급여명세표 ② 위촉증명서 또는 재직증명서	①, ② 해당 직장 / 세무서
국민 기초생활 수급자		① 국민 기초생활 수급자 증명서	① 주민센터
비정규직 근로자 / 일용직근로자		① 계약기간 및 총급여액 명시된 근로계약서 또는 월별급여명세표 또는 근로소득지급조서 ※ 상기 서류가 없는 경우 국민연금보험료 납입증명서 및 연금산정용 가입내역확인서	① 해당 직장 ※ 국민연금관리공단
무 직 자		비사업자 확인각서 ※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근로자 및 자영업자가 아닌 자로서 전년도 또는 당해 연도에 소득(근로 또는 사업소득 등)이 있는 경우에는 전년도 1월 1일부터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까지의 총 소득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견본주택 비치

■ **노부모부양 특별공급(「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46조 : 전체 공급세대수의 3%이내) : 24세대**

• **신청자격**

- 대상자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46조에 해당하는 자로서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2020.07.31) 현재 대구광역시에 거주하거나 경상북도** 지역에 거주하면서 만65세 이상의 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존속 포함)을 3년 이상 계속하여 부양(같은 세대별 주민등록표상에 등재되어 있는 경우에 한정)하고 있는 무주택세대주(피부양자의 배우자도 무주택자이어야 하고 피부양자의 배우자가 주택을 소유하고 있었던 기간은 무주택기간에서 제외함)

※ 무주택기간은 청약신청자 및 그 배우자, 피부양자(노부모) 및 그 배우자를 기준으로 산정(「다자녀가구 및 노부모부양 주택 특별공급 운용지침」에 따라 피부양자 및 피부양자의 배우자가 주택을 소유하고 있었던 기간은 신청자의 무주택기간에서 제외)

※ 배우자 분리세대의 경우에는 주민등록이 분리된 배우자 및 배우자와 동일한 세대를 이루고 있는 세대원도 주택을 소유하지 아니하여야 함.
※ 만60세 이상의 직계존속(피부양자의 배우자 포함)이 주택을 소유한 경우 유주택자에 해당
※ 소형.저가주택을 소유한 경우 유주택자에 해당
※ 입주자저축에 가입하여 청약통장 가입요건을 갖춘 자**(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2020.07.31) 현재「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28조에 따른 청약 1순위 자격요건을 갖추어야 함)**

구 분	84A	84B	84C	84D	합계
노부모부양 특별공급	14	8	2	0	24

• **당첨자 선정방법**
- 동일 순위 내에 경쟁이 있을 경우 해당 주택건설지역(대구광역시 6개월 이상 거주) 거주가 우선함.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46조 제2항에 따라 경쟁이 있는 경우에는 가점제를 적용하되, 동점일 경우에는 추첨의 방법에 따름.
- 1순위에서 경쟁이 있는 경우 가점제 적용은 신청자 본인이 작성한 '청약가점 산정기준(「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별표1)'에 의거한 청약가점 점수를 우선순위로 당첨자를 선정함.
- 신청자 본인이 직접 작성한 청약가점의 점수가 본인의 기재 오류에 의한 잘못으로 판명될 경우, 당첨이 취소될 수 있으며, 그 책임은 전적으로 본인에게 있음.
- 특별공급은 무주택세대구성원에게 1세대 1주택(공급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1세대 1명을 말함) 기준으로 공급하므로 세대 내 2명 이상이 각각 신청하여 1명이라도 선정이 되면, 당첨자는 부적격당첨자로 처리되고, 예비입주자는 입주자로 선정될 기회를 제공받을 수 없으니 유의하여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 **특별공급 구비서류 (계약체결 전 제출)**

구분	서류유형		해당서류	발급기준	추가서류 제출대상 및 유의사항
	필수	추가(해당자)			
공통	O		특별공급신청서/확약서/무주택서약서		견본주택에 비치 **인터넷 청약(청약Home)에서 청약한 경우 특별공급신청서 생략 가능**
	O		인감증명서, 인감도장 또는 본인서명사실확인서	본인	용도: 주택공급신청용 ※본인서명사실확인서는 대리인 접수 및 계약 불가
	O		신분증	본인	주민등록증 또는 운전면허증, 여권 등
	O		주민등록(표)등본	본인	주민등록번호(세대원 포함), 주소변동사항 및 변동사유, 세대구성사유 및 일자, 세대주 및 세대주와의 관계 포함하여 발급요망
	O		주민등록(표)초본	본인	주민등록번호, 주소변동 사항(인정받고자 하는 기간 포함), 세대주 및 세대주와의 관계 포함하여 발급요망 본인이 인정받고자 하는 시,도 지역 거주기간 또는 세대주 기간이 주민등록등본만으로 입증이 안될 경우 제출
		O	주민등록(표)등본	배우자	주민등록상 배우자가 분리된 경우 제출 - (상기 등본 발급시 유의사항에 따라 발급 바람)
	O		가족관계증명서	본인	단독세대 및 배우자 분리세대의 경우 성명, 주민등록번호(세대원포함)를 표기하여 "상세"로 발급. - 배우자 및 자녀, 직계존속 등 공급신청자와의 관계
	O		청약통장 순위확인서	본인	청약통장 가입은행으로부터 순위내역 발급 또는 주택청약 서비스 **한국감정원 '청약Home'** 홈페이지에서 청약통장 순위확인서 발급 (국가유공자, 장애인, 철거민 제외) **- 한국감정원 '청약Home'에서 청약한 경우 생략**
	O		출입국 사실 증명서	본인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4조제5항에 따라 우선 공급받으려는 경우는 필수 * 현 거주지 및 거주기간 등 확인 - 발급기관 :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부터 과거 3년간(3개년도) 발급 요망(주민센터 또는 민원24 발급가능)
	O		출입국 사실 증명서	직계존속	* 피부양 직계존속을 부양가족으로 인정받고자 하는 경우 - 발급기간 :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부터 과거 3년간도 발급(주민센터 또는 민원24 발급 가능)
	O		출입국 사실 증명서	직계비속	* 피부양 직계비속을 부양가족으로 인정받고자 하는 경우 - 발급기간 :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부터 과거 3년간도 발급(주민센터 또는 민원24 발급 가능)
기관추천 특별공급	O		특별공급 대상 증명서류	본인	* 해당기관에서 선정하여 당사에 통보된 추천대상자에 한하여 기관추천(일반) 특별공급신청자격 인정 ※ 해당 추천 기관장이 발행한 추천서 또는 인증서, 추천명부로 접수

		O	군복무기간 (10년이상)이 명시된 복무확인서	본인	10년 이상 장기복무 군인 자격으로 신청한 경우
다자녀가구 특별공급	O		다자녀특별공급배점기준표	-	견본주택 비치
		O	주민등록(표)초본	피부양 직계존속	주민등록표상 공급 신청자와 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존속을 포함하여 무주택자로 한정)이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로부터 과거 3년 이상 계속하여 동일 주민등록표등본에 등재
		O	가족관계증명서	본인	자녀의 전부 또는 일부가 본인 주민등록표등본상에 등재되지 않은 경우
		O	주민등록(표)등본	자녀	
		O	가족관계증명서	자녀 배우자	이혼 및 재혼 가정의 자녀를 부양하는 경우(공급 신청자 및 배우자의 주민등록(표)등본상에 등재되지 않은 경우) 자녀로 인정 받고자 하는 배우자 전혼 자녀가 본인 주민등록표상에 관계가 확인되지 않은 경우 3세대이상 세대 구성시 배우자의 직계존속이 포함된 경우
		O	입양관계증명서 또는 친양자입양관계증명서	본인(또는 배우자)	입양인 경우
		O	기본증명서	자녀	출생관련 일자 확인 필요시
		O	임신증명 및 출산이행각서	본인(또는 배우자)	임신중인 경우, 입주자모집공고일 이후 의료법에 의한 의료기관에서 발급된 임신진단서, 출산이행각서는 견본주택 비치
		O	혼인관계증명서	본인	만19세 이전에 혼인하여 무주택기간과 해당 시·도 거주기간을 인정받고자 하는 경우. 본인 및 배우자의 성명, 주민등록번호 전부공개 "상세"로 발급
		O	혼인관계증명서	자녀	미성년 자녀가 만 18세로 미성년임을 증명하기 위한 경우
		O	한부모가족증명서	본인	여성가족부의 「한부모가족 지원법」에 따라 한부모가족으로 지정된 지 5년이 경과된 경우
노부모 부양 특별공급	O		청약 가점점수 산정기준표	본인	견본주택 비치
		O	주민등록(표)초본	피부양 직계존속	주민등록표상 세대주와 직계존속이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로부터 과거3년 이상 계속하여 동일한 주민등록등본에 등재여부가 확인되지 않는 경우 (3년 이상의 주소 변동사항을 포함하여 발급)
		O	주민등록(표)초본	피부양 직계비속	만 30세 이상 미혼의 직계비속을 부양가족으로 인정받고자 하는 경우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변동사항(인정 받고자 하는 기간 포함), 세대주 및 세대주와의 관계 포함하여 발급)
		O	가족관계증명서	피부양 직계존속	본인의 주민등록표상에 피부양 직계존속과의 관계가 확인되지 않는 경우, 피부양 직계존속이 배우자가 없거나 배우자와 세대 분리된 경우
				배우자	배우자의 피부양 직계존속으로 신청한 경우 또는 재혼가정의 자녀를 부양가족으로 신청한 경우 (공급신청자와 동일 주민등록표등본에 등재된 경우에 한함)
		O	혼인관계증명서	본인	만 30세 이전 혼인신고일로부터 무주택기간을 인정받고자 하는 경우
		O	혼인관계증명서	직계비속	만 18세 이상의 직계비속을 부양가족으로 인정받고자 하는 경우
신혼부부 특별공급	O		혼인관계증명서	본인	혼인신고일 확인
		O	가족관계증명서	배우자	본인의 주민등록표 상 등재된 재혼한 배우자의 자녀를 자녀로 인정받고자 하는 경우
		O	기본증명서	자녀	출생관련 일자 확인 필요시
		O	주민등록표등본	자녀	자녀의 전부 또는 일부가 본인 주민등록표등본상에 등재되지 않은 경우
		O	임신증명서류 또는 출산증명서	본인(또는 배우자)	임신의 경우 임신증명서류(임신진단서, 유산 낙태관련 진단서 등) 제출 (임신증명서류는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임신사실 확인이 가능해야 함.)
		O	입양관계증명서 또는 친양자입양관계증명서	본인(또는 배우자)	입양의 경우
		O	임신증명 및 출산이행 확인 각서	본인(또는 배우자)	임신중인 경우 (견본주택에 비치)
		O	비사업자 확인 각서	본인 및 해당자	견본주택에 비치

	O		소득증빙서류	본인 및 만19세 이상 세대원 전원	공고일 이후 발행분으로 세대주 및 만19세 이상 세대원전원의 소득입증서류 (단, 배우자 분리세대는 배우자 및 배우자와 동일한 세대를 구성한 세대원의 소득입증서류)
	O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본인 및 성년자인 무주택세대구성원 전원	공고일 이후 발행분으로 세대주 및 성년자인 세대원 전원이 표시되어야 하며, 표시되지 않은 세대원의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도 제출(발급처 : 국민건강보험공단)
	O		소득증빙 서류		공고일 이후 발행분으로 세대주 및 성년자인 세대원 전원의 소득입증서류(단, 배우자 분리세대는 배우자의 소득입증서류) →[소득증빙서류 참조]
제3자 대리인 신청시	O		위임장	청약자	청약자의 인감도장 날인, 견본주택 비치
	O		인감증명서	청약자	용도 : 주택공급신청 위임용, 단 외국인인 경우 본국 관공서의 증명(서명인증서)이나 이에 관한 공정증서
	O		인감도장	청약자	외국인이 인증된 서명으로 공급신청 위임시는 생략
	O		신분증	대리인	재외동포는 국내거소신고증, 외국인은 외국인등록증
	O		인장	대리인	

※ 상기 모든 증명서류(신청시 구비서류)는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2020.07.31)**이후 발행분에 한하며, 견본주택에서는 상기 구비사항이 완비된 경우에 한하여 접수합니다.

※ 주민등록표 등·초본 발급시 '세대주 성명 및 관계'를 생략하여 발급하고 있으니 세대주기간 산정, 배우자, 관계 확인 등이 필요한 반드시 '세대주 성명 및 관계에 대한 표기'를 요청하여 발급받으시기 바랍니다.

※ 주택공급 신청 시, 제출 서류 명확화(제23조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세대별 주민등록표, 가족관계증명서, 출입국사실증명원(일정기간 거주 증명)이 필요합니다.

▣ 일반공급

■ 일반공급 신청자격 및 유의사항

<table>
<tr><td>신청
자격요건</td><td colspan="5">•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2020.07.31) 현재 대구광역시에 거주하거나 경상북도 지역에 거주하는 만19세 이상인 자 중 입주자저축 순위별 자격요건을 갖춘 자[국내에 거주하고 있는 재외동포(재외국민, 외국국적 동포)및 외국인 포함]
•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2020.07.31) 현재 대구광역시 6개월 이상 거주하는 신청자에게 우선 공급하며, 잔여 세대 발생 시 대구광역시 6개월 미만 거주자 및 경상북도에 거주하는 신청자에게 공급함.</td></tr>
<tr><td rowspan="3">순위별
자격요건

(민영주택)</td><td>거주구분</td><td>순위</td><td>주택형</td><td>공급방법</td><td>신청자격</td></tr>
<tr><td rowspan="2">대구광역시
및
경상북도</td><td>1순위</td><td>85㎡이하</td><td>가점제 40%

추첨제 60%</td><td>•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입주자저축 요건이 아래의 1순위를 충족하는 자 (가점제 낙첨자는 추첨제 대상자로 자동 전환됨)
1) 청약예금에 가입하여 6개월이 경과되고 해당주택에 신청 가능한 예치금액에 상당하는 금액을 예치한 자
2) 청약부금에 가입하여 6개월이 경과되고 매월 약정납입일에 월 납입금을 납입하여 납입인정금액이 85㎡이하의 청약예금 예치금액 이상인 자
3) 청약저축에 가입하여 6개월이 경과된 자로 납입인정금액이 해당주택에 신청 가능한 청약예금 예치금액 이상인 자로서 최초 입주자모집공고 전일까지 해당 청약예금으로 전환한 자
4) 주택청약종합저축에 가입하여 6개월이 경과되고 납입금액이 해당주택에 신청 가능한 예치금액 이상인 자
※ 모집공고일 현재 과거 2년 이내 가점제로 당첨된 자의 세대에 속한 자는 추첨제로 청약 접수하여야 하며, 가점제 제한 청약자가 가점제로 청약하여 당첨된 경우 부적격 처리되오니 청약 시 유의하시기 바람.
※ 과거 2년 이내 가점제 당첨자 제한 : 당첨자발표일이 2018.05.08. 이후인 민영주택의 가점제로 당첨된 경우부터 적용</td></tr>
<tr><td>2순위</td><td colspan="2">추첨</td><td>• 상기 1순위에 해당 되지 아니한 최초입주자 모집공고일 현재 대구광역시, 경상북도에 거주하는 예치금액과 상관없이 주택청약종합저축(청약예·부금 포함)에 가입한 만19세 이상인 자</td></tr>
</table>

민영주택 청약 예치기준금액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10조 제1항 [별표2]

구 분	특별시 및 부산광역시	그 밖의 광역시	특별시 및 광역시를 제외한 지역
전용면적 85㎡ 이하	300만원	250만원	200만원
전용면적 102㎡ 이하	600만원	400만원	300만원
전용면적 135㎡ 이하	1,000만원	700만원	400만원
모든면적	1,500만원	1,000만원	500만원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에 따라 해당 구간의 예치금액을 충족하는 경우 해당 예치금액의 하위 면적 모두 청약 가능함.

청약신청 유의사항

공통	• 층별・동별・호별・향별 구분 없이 주택형별로 청약순위별로 접수하고, 선순위 청약접수 결과 일반공급 세대수를 초과하더라도 예비당첨자 선정비율(일반공급 세대수의 300%)에 미달할 경우 차순위 접수를 받을 수 있으므로 청약신청 전 청약경쟁률을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단, 2순위까지 청약접수 결과 신청자 수가 일반공급 세대수의 400%에 미달하는 경우 더이상 접수하지 않음)
1순위	• 1순위 청약자 전원은 가점제로 청약 접수하되, 과거 2년 이내 가점제로 당첨된 자의 세대에 속한 자는 추첨제로 접수하여야 하며, 가점제 낙첨자는 별도 신청 절차 없이 추첨제 대상자로 전환함. • 전용면적 85㎡이하 : 일반공급 대상 주택수의 40%를 가점제로 나머지 60%를 추첨제로 신청자에게 공급하며, 가점제 신청자 미달 시는 추첨제로 전환하여 공급함.
2순위	• 청약신청자 전원 추첨으로 청약접수 함.
추첨제	• 투기과열지구, 청약과열지역, 수도권 및 **광역시는 추첨의 방법으로 입주자를 선정하는 주택수보다 추첨 대상자가 많은 경우**, 다음 순서에 따라 입주자를 선정합니다. **① 추첨의 방법으로 공급되는 주택수의 75%** : 무주택세대구성원 **② 나머지 25%의 주택**(무주택세대구성원에게 공급하고 남은 주택 포함) : 무주택세대구성원과 1주택을 소유한 세대에 속한 자 (기존 소유주택 처분조건을 승낙한 자로 한정) ③ 제1호 및 제2호에 따라 공급한 후 남은 주택이 있는 경우 : 1순위에 해당하는 자 중 입주자로 선정되지 않은 자에게 공급 ※ 1주택(분양권등 제외)을 소유한 세대에 속한 자가 우선 공급받으려는 경우 **①공급받은 주택의 입주 이전에 기존주택의 소유권 처분 조건을 승낙**하여야 하며, **②입주예정일 이전에 기존주택의 소유권 처분계약에 관하여 신고하거나 검인**을 받아야 하고, **③입주가능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기존주택의 소유권 처분을 완료**하여야 합니다. **- ②에 따라 신고하거나 검인받지 않은 경우 입주할 수 없으며, ③에 따라 처분을 완료하지 않은 경우 공급계약이 해지될 수 있습니다.**

• 신청자격 및 요건 등의 기준은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이며, 면적은 '전용면적'을 기준으로 함.
• 청약신청 접수는 당첨자발표일이 동일한 주택 전체에 대하여 중복신청이 불가(1인 1건만 신청 가능)하며, 1인 2건 이상 신청 모두 무효처리 됨.
• 청약접수일자와 관계없이 당첨자발표일이 우선인 주택에 당첨이 되면 당첨자발표일이 늦은 주택의 당첨은 자동 취소됨. (각각 동일한 청약 관련 예금으로 당첨된 경우에 한함)
• 상기 주택에 신청하여 당첨된 청약통장은 계약체결 여부와 상관없이 재사용이 불가하며, 당첨자로 전산 관리되므로 향후 다른 주택청약 시 제한사항을 확인하시기 바람. [단, 부적격당첨자(주택소유, 부적격, 착오기재 등)는 당첨일부터 '수도권 및 투기·청약과열지역 1년, 수도권외 6개월, 위축지역 3개월'(공급 신청하려는 지역 기준) 동안 다른 분양주택(분양전환 공공임대주택 포함)의 입주자로 선정될 수 없음]
• 청약예금 가입한 후 예치금액이 작은 지역에서 큰 지역으로 주거를 이전한 분은 신청일 현재 변경된 주거지역에 해당하는 청약예금 예치금액으로 증액하여야 청약 가능함. (단, 차액을 감액하는 경우 또는 주거지 변경 없이 가입한 지역에서 거주하면서 청약 신청할 경우에는 지역간 예치금액 변경 없이 청약 가능함)
• 청약통장 관련 기준사항
 - 청약저축에서 청약예금으로 전환 기준 : 최초 입주자모집공고 전일까지 변경 시 청약 신청 가능함.
 - 해당지역 전입일 관련 기준 :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6개월 이전(2020.01.31.)** 해당지역(대구광역시)으로 전입 시 해당 거주지역으로 청약 신청 가능함.
 - 청약예금 지역간 예치금액 차액 충족 기준 : 청약 접수 당일까지 충족 시 청약 신청 가능함.
 - 청약통장 예치금 기준(주택청약종합저축) : 최초 입주자모집공고 당일까지 예치금 충족 시 청약 신청 가능함.
 - 청약예금의 신청 가능 주택 규모(전용면적 기준) 변경한 분 신청 요건 : 최초 입주자모집공고 전일까지 변경한 경우 신청 가능함. (단, 작은 주택 규모로 변경할 경우 해당 구간의 청약예치금액 충족 시 별도의 주택 규모 변경 절차 없이 하위 면적 모두 청약 가능함)
• 10년 이상 장기복무 중인 군인은 해당 주택건설지역에 거주하지 아니하여도 해당 주택건설지역에 거주하는 것으로 봄. 다만, 수도권에서 건설되는 주택을 공급받으려는 경우에는 해당 주택건설지역이 아닌 수도권 거주자로 봄. 또한, **수도권외 지역에서 공급하는 주택 중 전입제한일이 적용된 경우 기타지역 거주자의 자격으로 청약됨. (2018.1.2. 입주자모집공고 승인분부터 적용)**
• 청약신청 접수 시 유의사항
 1) 청약신청 시 신청자의 착오에 의하여 잘못된 신청에 대해서는 수정이 불가하며, 이에 대한 책임은 청약신청자에게 있음.
 2) 청약자가 인터넷 청약내용을 잘못 입력하여 당첨자로 결정될 경우에도 부적격 당첨자에 해당되므로 관련 증빙서류 등을 통해 청약내용을 정확하게 확인한 후에 입력하여야 함.
 3) 신청자의 착오로 인하여 잘못 접수된 청약신청분의 당첨으로 인한 취소 및 부적격 결과에 대해서는 사업주체는 책임지지 않으며, 당첨취소 세대는 예비당첨자에게 우선 공급함.

■ 청약 가점제 적용기준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별표1]의 1

구분	신청자격
① **무주택기간** **적용기준**	1)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세대원 모두 주택을 소유하지 않아야 한다**. 2) 소형·저가주택 등의 가격은 다음의 구분에 따라 산정한다. 다만, 2007년 9월 1일 전에 주택을 처분한 경우에는 2007년 9월 1일 전에 공시된 주택공시가격(「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 제16조 또는 제17조에 따라 공시된 가격을 말한다. 이하 이 별표에서 같다) 중 2007년 9월 1일에 가장 가까운 날에 공시된 주택공시가격에 따른다. 가) 입주자모집공고일 후에 주택을 처분하는 경우: 입주자모집공고일에 가장 가까운 날에 공시된 주택공시가격 나) 입주자모집공고일 이전에 주택이 처분된 경우: 처분일 이전에 공시된 주택공시가격 중 처분일에 가장 가까운 날에 공시된 주택공시가격 다) 분양권등의 경우: 공급계약서의 공급가격(선택품목에 대한 가격은 제외한다) 3) **무주택기간은 주택공급신청자와 그 배우자를 기준**으로 하고, **주택공급신청자의 연령이 30세가 되는 날부터 계속하여 무주택인 기간으로 하되, 30세가 되기 전에 혼인한 경우에는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혼인관계증명서에 혼인신고일로 등재된 날부터 무주택기간을 기산**한다. 이 경우 주택공급신청자 또는 배우자가 주택을 소유한 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그 주택을 처분한 후 무주택자가 된 날(2회 이상 주택을 소유한 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최근에 무주택자가 된 날을 말한다)부터 무주택기간을 산정한다.
② **부양가족의** **인정기준**	1) 부양가족은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주택공급신청자 또는 그 배우자와 같은 세대별 주민등록표등본에 등재**된 세대원으로 한다. 2) 주택공급신청자의 **직계존속**은 **주택공급신청자**가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세대주인 경우**로서 입주자모집공고일을 기준으로 **최근 3년 이상 계속**하여 **주택공급신청자 또는 그 배우자와** 같은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등재된 경우**에 부양가족으로 본다. 다만, 직계존속과 그 배우자 중 한 명이라도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에는 직계존속과 그 배우자 모두 부양가족으로 보지 않으며, 아래의 경우에 해당하는 직계존속도 부양가족으로 인정하지 않는다. - 외국인 직계존속 - 내국인 직계존속이라도 요양시설 및 해외에 체류 중(입주자모집공고일 기준 최근 3년 이내 계속하여 90일을 초과하여 해외에 체류한 경우)인 경우 ※ 2020.01.01. 개정·시행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별표1에 따라 부양가족을 산정 시에는 제53조제6호를 적용하지 않으므로 만60세 이상의 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존속을 포함)이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에는 부양가족으로 인정하지 않는다. 3) 주택공급신청자의 **30세 이상인 직계비속**은 입주자모집공고일을 기준으로 **최근 1년 이상 계속**하여 **주택공급신청자 또는 그 배우자**와 같은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등재된 경우**에 부양가족으로 본다. - 미혼자녀(부모가 모두 사망한 미혼의 손자녀 및 주택공급신청자와 같은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등재된 재혼배우자의 미혼자녀 포함)에 한함. 4) 결혼 후 이혼한 자녀는 "미혼인 자녀"로 보지 않으며, 아래의 경우처럼 해외 체류 중인 직계비속도 부양가족으로 인정하지 않는다. - (30세 미만) 입주자모집공고일 기준 현재 계속하여 90일을 초과하여 해외에 체류 중인 경우 - (30세 이상) 입주자모집공고일 기준 최근 1년 이내 계속하여 90일을 초과하여 해외에 체류한 경우
③ **입주자저축** **가입기간**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주택공급신청자의 입주자저축 가입기간을 기준**으로 하며, 입주자저축의 종류, 금액, 가입자 명의변경을 한 경우에도 최초 가입일을 기준으로 가입기간을 산정한다.
④ **주택소유여부 및 무주택기간 산정기준**	① 및 ②에 따라 주택소유 여부를 판정하거나 무주택기간을 산정하려는 경우에는 제23조제4항 및 제53조에 따른다. 다만, ②에 따라 부양가족 여부를 판단할 때에는 제53조제6호를 적용하지 않는다.

■ **청약 가점점수 산정기준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별표2] 2호 나목**

가점항목	가점상한	가점구분	점수	가점구분	점수	확인할 서류 등
① 무주택기간	32	만30세 미만 미혼자 또는 유주택자	0	8년 이상 ~ 9년 미만	18	■ 주민등록등본 (배우자 분리세대 시 배우자 주민등록표 등본, 가족관계 증명서 추가 제출) ■ 건물등기부등본, 건축물대장등본 등 ■ 가족관계증명서, 혼인관계증명서 ※ 만30세 이전에 결혼한 경우 혼인신고일 확인
		1년 미만	2	9년 이상 ~ 10년 미만	20	
		1년 이상 ~ 2년 미만	4	10년 이상 ~ 11년 미만	22	
		2년 이상 ~ 3년 미만	6	11년 이상 ~ 12년 미만	24	
		3년 이상 ~ 4년 미만	8	12년 이상 ~ 13년 미만	26	
		4년 이상 ~ 5년 미만	10	13년 이상 ~ 14년 미만	28	
		5년 이상 ~ 6년 미만	12	14년 이상 ~ 15년 미만	30	
		6년 이상 ~ 7년 미만	14	15년 이상	32	
		7년 이상 ~ 8년 미만	16			
② 부양가족수	35	0명	5	4명	25	■ 주민등록표 등·초본 ■ 가족관계증명서(청약자가 배우자 및 자녀와 주민등록상 분리시 부양 가족수 산정) ■ 만 18세 이상 성년자녀 부양가족인정 신청 시 추가확인서류
		1명	10	5명	30	

		2명	15	6명 이상	35	⑴ 만18세 이상 ~ 만30세 미만 : 자녀 혼인관계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⑵ 만30세 이상 : 자녀 혼인관계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초본 ■ 출입국사실증명원 **※ 청약신청자 본인은 부양가족수에서 제외**
		3명	20			
③ 입주자 저축 가입기간	**17**	6개월 미만	1	8년 이상 ~ 9년 미만	10	■ 청약통장(인터넷 청약 시에 자동 계산됨)
		6개월 이상 ~ 1년 미만	2	9년 이상 ~ 10년 미만	11	
		1년 이상 ~ 2년 미만	3	10년 이상 ~ 11년 미만	12	
		2년 이상 ~ 3년 미만	4	11년 이상 ~ 12년 미만	13	
		3년 이상 ~ 4년 미만	5	12년 이상 ~ 13년 미만	14	
		4년 이상 ~ 5년 미만	6	13년 이상 ~ 14년 미만	15	
		5년 이상 ~ 6년 미만	7	14년 이상 ~ 15년 미만	16	
		6년 이상 ~ 7년 미만	8	15년 이상	17	
		7년 이상 ~ 8년 미만	9			
총점	**84**					
※ 본인 청약가점 점수 = ①+②+③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28조 제6항에 따라 **입주자모집공고일(2020.07.31)** 현재 과거 2년 이내에 가점제를 적용받아 다른 주택의 당첨자가 된 자의 세대에 속한 자는 제1순위에서 가점제의 적용 대상자에서 제외되며, 추첨제의 적용 대상자에 포함된다.

※ 인감증명서의 용도란은 공란으로 발급하므로 용도를 직접 기재하여 제출하시기 바람.

※ 주민등록표등·초본 발급 시 반드시 "주민등록번호", "세대주 성명 및 관계", "주소변동이력 및 일자" 등이 표기되도록 요청하여 발급받으시기 바람.

※ **만 60세 이상 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존속 포함)의 소유주택은 신청자격 판단 시 무주택으로 인정**하며, 단, 주택을 소유한 **만60세 이상 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존속 포함)은 부양가족수에 제외**하여 산정 함.(주택을 소유한 직계존속과 그 배우자 모두 부양가족수 제외)

■ 주택소유 및 부적격자 당첨명단 관리 등 유의사항

구분	신청자격
주택소유여부 확인방법 및 판정기준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23조 제4항 및 제53조	**■ 검색대상 : 주택공급신청자와 그 세대원 전원** **■ 주택의 범위 : 건물등기사항 증명서, 건축물관리대장 등에 등재된 전국 소재 주택(공유지분으로 주택을 소유한 경우와 주택용도가 있는 복합건물도 주택으로 봄), 분양권 등** **■ 주택처분 기준일(제1호와 제2호의 일자가 상이할 경우에는 먼저 처리된 날을 기준으로 함)** 1. 건물 등기사항증명서 : 등기접수일 2. 건축물대장등본 : 처리일 2의2. 분양권등에 관한 계약서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제3조에 따라 신고된 공급계약체결일 2의3. 제2조 제4호 다목에 따른 분양권등의 매매계약서 가. 분양권등의 매매 후「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제3조에 따라 신고된 경우에는 신고서상 매매대금 완납일 나. 분양권등을 증여나 그 밖의 사유로 처분한 경우 사업주체와의 계약서상 명의변경일 3. 그밖에 주택소유 여부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시장 또는 군수 등 공공기관이 인정하는 날 **■ 다음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주택을 소유하지 않은 것으로 봄** 1. 상속으로 주택의 공유지분을 취득한 사실이 판명되어 사업주체로부터 제52조 제3항에 따라 부적격자로 통보받은 날부터 3개월 이내에 그 지분을 처분한 경우 2. 도시지역이 아닌 지역 또는 면의 행정구역(수도권은 제외한다)에 건축되어 있는 주택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택의 소유자가 해당 주택건설지역에 거주(상속으로 주택을 취득한 경우에는 피상속인이 거주한 것을 상속인이 거주한 것으로 본다)하다가 다른 주택건설지역으로 이주한 경우 가. 사용승인 후 20년 이상 경과된 단독주택 나. 전용면적85제곱미터 이하의 단독주택

	다. 소유자의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최초 등록기준지에 건축되어 있는 주택으로서 직계존속 또는 배우자로부터 상속 등에 의하여 이전받은 단독주택 3. 개인주택사업자가 분양을 목적으로 주택을 건설하여 이를 분양 완료하였거나 사업주체로부터 제52조 제3항에 따른 부적격자로 통보받은 날부터 3개월 이내에 이를 처분한 경우 4. 세무서에 사업자로 등록한 개인사업자가 그 소속 근로자의 숙소로 사용하기 위하여 법 제5조 제3항에 따라 주택을 건설하여 소유하고 있거나 사업주체가 정부 시책의 일환으로 근로자에게 공급할 목적으로 사업계획 승인을 받아 건설한 주택을 공급받아 소유하고 있는 경우 5. 전용면적20제곱미터 이하의 주택 또는 분양권등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 다만, 2호 또는 2세대 이상의 주택 또는 분양권등을 소유하고 있는 사람은 제외한다. 6. 만 60세 이상의 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존속을 포함한다)이 주택 또는 분양권등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단, 노부모부양자 특별공급 신청자 제외) - 가점제의 부양가족 인정 여부 판단 시 직계존속과 그 배우자 중 한 명이라도 주택 또는 분양권등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에는 직계존속과 그 배우자 모두 부양가족에서 제외함. 7. 건물등기부 또는 건축물대장등의 공부상 주택으로 등재되어 있으나 주택이 낡아 사람이 살지 아니하는 폐가이거나 주택이 멸실되었거나 주택이 아닌 다른 용도로 사용되고 있는 경우로서 사업주체로부터 제52조 제3항에 따른 부적격자로 통보받은 날부터 3개월 이내에 이를 멸실시키거나 실제 사용하고 있는 용도로 공부를 정리한 경우 8. 무허가건물[종전의 「건축법」(법률 제7696호 건축법 일부개정법률로 개정되기 전의 것을 말한다) 제8조 및 제9조에 따라 건축허가 또는 건축 신고 없이 건축한 건물을 말한다]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 이 경우 소유자는 해당 건물이 건축 당시의 법령에 따른 적법한 건물임을 증명하여야 한다. 9. 소형·저가주택등을 1호 또는 1세대만을 소유한 세대에 속한 사람으로서 제28조에 따라 주택의 공급을 신청하는 경우 10. 주택공급에관한규칙 제27조 제5항 및 제28조 제10항 제1호에 따라 입주자를 선정하고 남은 주택을 선착순의 방법으로 공급받아 분양권등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해당 분양권등을 매수한 사람은 제외한다)
소형・저가주택 1호를 보유한 경우의 특례	■ **"소형·저가주택등"이란 전용면적 60㎡ 이하로서, 주택가격이 8천만원 (수도권은 1억3천만원) 이하인 주택 또는 분양권등을 1주택(소형・저가주택)」소유**에 대해 다음 요건을 충족하는 분은 민영주택에 **일반공급을 청약하는 경우에 한해 소형・저가주택 보유기간을 무주택기간으로 인정됨** ① 현재 소형・저가주택 소유자 : 입주자모집공고일 기준으로 "소형・저가주택" 1호 또는 1세대만을 보유한 경우 특례에 해당됨. ② 현재 무주택자 : 종전에 소형・저가주택을 처분한 후 계속 무주택자로 있는 경우 ※ 해당 소형・저가주택의 보유기간도 무주택으로 간주함 ■ **"소형·저가주택등"의 가격은 다음의 구분에 따라 산정**한다. 다만, 2007년 9월 1일 전에 주택을 처분한 경우에는 2007년 9월 1일 전에 공시된 주택공시가격(「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 제16조 또는 제17조에 따라 공시된 가격을 말한다. 이하 이 별표에서 같다) 중 2007년 9월 1일에 가장 가까운 날에 공시된 주택공시가격에 따른다. 가) 입주자모집공고일 후에 주택을 처분하는 경우: 입주자모집공고일에 가장 가까운 날에 공시된 주택공시가격 나) 입주자모집공고일 이전에 주택이 처분된 경우: 처분일 이전에 공시된 주택공시가격 중 처분일에 가장 가까운 날에 공시된 주택공시가격 다) 분양권등의 경우 : 공급계약서의 공급가격(선택품목에 대한 가격은 제외한다)
부적격 당첨자에 대한 명단관리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8조	1. 사업주체는 주택공급에관한규칙 제52조 제3항 및 제57조 제8항에 따른 부적격 당첨자가 소명기간에 해당 공급자격 또는 선정순위가 정당함을 소명하지 못하고 제4항에도 해당하지 못하여 당첨이 취소되는 경우에는 7일 이내에 그 명단을 전산관리 지정기관에 통보함하여야 함. 2. 전산관리지정기관은 제1항에 따라 통보받은 자의 명단을 당첨자 명단에서 삭제하는 등 전산관리하고, 제57조 제7항에 따라 사업주체에게 전산검색 결과를 통보할 때 제3항에 해당하는지를 표시하여 통보하여야 함. 3. 제1항에 따라 **당첨이 취소된 자는 당첨일부터 각 호에 따른 기간 동안 다른 분양주택(일정기간이 지난 후 분양전환 되는 임대주택을 포함한다)의 입주자로 선정될 수 없음.** ① 수도권 : 1년 **② 수도권 외의 지역 : 6개월(다만, 투기과열지구 및 청약과열지역은 1년으로 한다)** ③ 제1호 및 제2호의 지역 중 위축지역 3개월 4. 사업주체는 부적격 당첨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당첨자로 본다. 다만, 제57조 제7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함. ① 같은 순위(제27조 및 제28조에 따른 순위를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에서 경쟁이 없는 경우에는 해당 순위의 자격을 갖춘 자 ② 같은 순위에서 경쟁이 있는 경우에는 사업주체가 제52조 제3항에 따른 소명기간에 재산정한 가점제 점수(가점제를 적용하여 공급하는 경우로 한정한다) 또는 공급 순차별 자격(순차별로 공급하는 경우로 한정한다)이 해당 순위의 당첨자로 선정되기 위한 가점제 점수 또는 자격 이상에 해당하는 자

Ⅲ. 신청일정 및 장소, 구비서류

■ 신청 일정 및 장소

구분	신청대상자	신청일자	신청방법	신청장소
특별공급	일반(기관추천) / 다자녀 가구/ 신혼부부 / 노부모부양	2020년 08월 18일(화) (청약Home 인터넷 : 08:00~17:30) (견본주택 : 10:00~14:00)	• 인터넷 청약 (PC 또는 스마트폰)	• 한국감정원 청약홈 홈페이지(www.applyhome.co.kr) • 견본주택(대구 동구 신천동 385-1번지)
일반공급	1순위	2020년 08월 19일(수) 08:00~17:30	• 인터넷 청약 (PC 또는 스마트폰)	• 한국감정원 청약홈 홈페이지(www.applyhome.co.kr) - PC : www.applyhome.co.kr - 스마트폰앱(청약홈)
	2순위	2020년 08월 20일(목) 08:00~17:30		

※ 스마트폰앱 : 구글 플레이스토어에서 "청약홈" 검색

- 스마트폰앱을 이용하여 청약할 경우에는 청약일 상당 기간 전에 앱을 설치하고 청약 시 사용할 공인인증서를 해당앱으로 미리 저장하시기 바랍니다. 청약 당일 공인인증서 설치 문제로 청약이 곤란할 경우에는 PC를 이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2018.05.04. 개정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에 의거 **특별공급 신청 방법**이 '견본주택 방문 신청'에서 **'인터넷(청약홈 ww.applyhome.co.kr) 청약신청'으로 변경**되었으며, 특별공급의 경우 인터넷 청약이 원칙이며 정보취약계층(고령자, 장애인 등) 등에 한하여 견본주택 방문접수(은행창구 접수 불가) 허용됨. (방문 접수시간 : 10:00~14:00)

※ 특별공급 견본주택 방문 접수 시 '특별공급 구비서류'를 모두 완비한 경우에 한하여 접수함.

※ 일반공급의 경우 인터넷 청약이 원칙이나 정보취약계층(고령자, 장애인 등) 등에 한하여 청약통장 가입은행 본·지점에서 청약이 가능 (창구 접수시간 : 09:00~16:00)

※ 청약 신청한 주택의 신청취소는 신청 당일 청약신청 마감 이전까지 가능하며, 청약 접수 종료 이후에는 어떠한 경우라도 신청 취소 및 변경이 불가하오니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특별공급 및 일반공급 청약 시 가점항목 등 청약자격을 확인(검증)하지 않고 신청자 기재사항만으로 청약신청을 받으며 당첨자에 한하여 주민등록표(초)등본, 가족관계증명서 등 관련 서류를 **당첨자 서류제출기간 동안 제출받아 주택공급 신청내용과 청약자격을 대조한 후 청약신청 내용과 청약자격이 일치할 경우에 계약체결이 가능**하므로 청약신청 시 유의하시기 바람.

■ 인터넷 청약서비스 이용방법 및 절차안내(해당순위 청약신청일 08:00~17:30)

- 한국감정원에서 운영하는 청약홈(www.applyhome.co.kr)에서 청약신청자의 편의를 위하여 인터넷 청약서비스를 시행하고 있음.
- 최초 입주자모집공고 현재 해당 청약순위가 발생하신 분은 청약통장 가입은행을 방문하여 인터넷뱅킹 가입 및 공인인증서를 청약신청일 이전에 미리 발급받아야 함.

한국감정원(全 은행 청약자 : 국민은행 포함) - 특별공급 및 일반공급
[PC 청약 시] 청약Home 홈페이지(www.applyhome.co.kr)접속 ⇒ 공인인증서를 통한 로그인 ⇒ 「APT청약신청」⇒「청약신청」⇒ 청약자격 등 입력 ⇒ 청약 완료 **[스마트폰 청약시]** 스마트폰앱(구글플레이스토어, 애플앱스토어에서 "청약홈" 검색) 접속 ⇒ 공인인증서를 통한 로그인 ⇒「청약신청」⇒「APT청약신청」⇒ 청약자격 등 입력 ⇒ 청약 완료
인터넷 청약 절차에 대한 보다 자세한 사항은 '청약Home' 홈페이지(www.applyhome.co.kr)에서 운영하는 "청약가상체험"을 활용하시기 바람 **[주택청약업무가 금융결제원으로부터 한국감정원으로 이관 되면서, 아래와 같은 서비스가 추가로 제공됩니다.]** **① [행정정보 자동조회] 특별공급 및 일반공급 1순위 청약신청 시, 신청 과정에서 청약자가 원할 경우 주민등록표등·초본, 혼인관계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를 해당기관으로부터 열람하여 그 정보를 즉시 보여줌으로써, 청약에 필요한 여러 가지 자격을 판단할 수 있도록 지원합니다. (선택사항이며, 청약신청 당일 지자체 통신망 연결이 원활하지 않을 경우 서비스 제공되지 않을 수 있음)** ・「청약신청」⇒「APT청약신청」⇒「Step2. 주택형선택 및 행정정보 자동조회」⇒ 「서비스 이용 동의 시」. 단, 미동의 시 기존과 동일한 절차대로 신청자가 직접 해당 자격을 판단하여 입력 가능 **② [모집공고단지 청약연습] 공고일 다음날부터 일반공급 청약신청 전날까지 세대원을 등록하고, 해당 세대원(성년자에 한함)의 개인정보 동의가 완료되면, 실제 청약하고자 하는 모집공고에 대한 신청자 및 세대원의 청약자격(주택소유 및 각종 청약제한사실)을 미리 알아볼 수 있어, 부적격자 발생을 최소화하도록 지원합니다.** ・「모집공고단지 청약연습」⇒「세대구성원 등록/조회」⇒「세대구성원 동의」⇒「모집공고단지 청약연습 신청」. 단, 세대구성원 등록 생략 시 신청자 본인에 대해서만 청약자격 검증

※ **상기 접수시간(17:30)은 청약접수 완료 기준으로 청약 신청 진행 중이라도 접수 완료하지 않고 17:30이 경과하면 청약신청이 되지 않을 수 있으므로 유의하시기 바람**.

※ 청약 신청 시 해당 은행에서는 청약자격에 대한 확인(검증)없이 청약신청자가 기재한 사항만으로 청약접수를 받으며, 청약자가 인터넷 청약내용을 잘못 입력하여 당첨자로 결정될 경우에도 부적격 당첨자에 해당되므로 관련 증빙서류 등을 통해 청약내용을 정확하게 확인한 후에 입력하여야 함.

■ **고령자, 장애인 등 은행창구 청약** [일반공급은 인터넷 청약 신청이 원칙이며 정보취약계층(고령자 및 장애인 등) 등을 제외하고는 은행창구에서의 청약접수는 불가함]

구 분	구비사항	
일반 공급	**본인 신청 시**	• 주택공급신청서(청약통장 가입은행 비치) • 주택청약종합저축(청약예·부금 포함) 통장 • 예금인장 또는 본인 서명 • 신분증 (주민등록증 또는 운전면허증, 여권) • 주민등록표등본 1통
	제3자 대리신청 시 추가사항 (배우자 포함)	• **본인 이외에는 모두 대리 신청자(직계존·비속 포함)로 간주**하며 상기 구비사항 외에 다음의 서류를 추가로 구비하여야 함. - 청약자의 인감증명서 1통(용도 : 주택공급신청 위임용) 단, 재외동포 또는 외국인의 경우 본국 관공서의 증명(서명인증서)이나 이에 관한 공정증서 - 청약자의 인감도장(재외동포 또는 외국인이 인증된 서명으로 공급신청 위임 시는 제출 생략) - 청약자의 인감도장이 날인된 위임장 1통(신청 접수장소 비치) - 대리 신청자의 주민등록증(재외동포는 국내거소신고증, 외국인은 외국인 등록증) ※ 청약자 본인의 주민등록증 제출 생략 가능

※ 상기 제증명 서류는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또는 청약자격 전산등록 기준 입주자모집공고일 이후 발행분에 한하며, 상기 구비사항이 완비되었을 경우에 한하여 접수함. (단, 변경이 있을 경우 변경서류 제출)

※ 주민등록표 등·초본 발급 시 "세대주 성명 및 관계"를 생략하여 발급하고 있으니 세대주 기산일 산정 등이 필요한 경우 반드시 "세대주 성명 및 관계"에 대한 표기를 요청하여 발급받으시기 바람.

※ 청약 시 신청자의 착오로 인한 잘못된 신청에 대해서는 수정이 불가하며 이에 대한 책임은 청약신청자에게 있음.

※ 주택공급 신청서의 단말기 「(전산)인지란」의 인지된 내용과 주택공급신청내용을 확인하여 주시고, 동 내용이 상이한 경우에는 당일 내로 공급신청서를 접수한 영업점에 정정 신청을 해야 함.

※ 본인 및 배우자가 인장 날인 없이 신청인[서명]으로 주택공급신청서를 작성한 경우는 신청자 성명을 인지할 수 있어야 하며, 주택공급신청서의 [서명]은 접수받은 직원 입회하에 신청인이 직접 기재해야 함.

IV. 당첨자 선정 및 발표

■ **일정 및 계약장소**

구 분	신청대상자	당첨자 및 동·호수 / 예비입주자 및 예비순번 발표	계약체결
특별공급	일반(기관추천), 신혼부부, 다자녀가구, 노부모부양	• **일시 :** 2020년 08월 28일(금) • 확인방법 - 한국감정원 청약Home(www.applyhome.co.kr) 또는 스마트폰앱에서 개별조회 • 공인인증서 로그인 후 조회 가능	• 일시 : 2020년 09월 08일(화) ~ 2020년 09월 14일(월) (10:00~17:00) • 장소 : 견본주택(대구 동구 신천동 385-1번지)
일반공급	1순위		
	2순위		

※ 당첨자 명단은 청약Home 홈페이지(www.applyhome.co.kr)에서 본인이 직접 확인하셔야 하며 당첨자 및 동·호수 확인 시에는 공인인증서 로그인 후 조회 가능함을 알려드리오니 착오 없으시기 바람. 다만, 고령자 및 장애인 등 정보취약계층으로서 인터넷 청약이 불가하여 견본주택(특별공급) 또는 은행창구(일반공급) 등에 방문하여 청약 신청한 경우에 한하여 정보입력(주택명, 주택형, 성명, 생년월일 입력) 조회가 가능하나 정보 오입력 등의 경우 부정확한 내역이 조회될 수 있으므로 공인인증서를 발급받으신 분은 반드시 공인인증서로 로그인하여 정확한 당첨내역을 확인하시기 바람.

* 인터넷 청약신청 건에 대해서는 '정보입력'에 의한 당첨내역 조회가 불가(당첨여부에 관계없이 '당첨내역이 없음'으로 표기됨)하오니 반드시 공인인증서로 로그인하시어 당첨내역을 확인하시기 바람.

※ 당첨자 및 동·호수, 예비입주자 및 예비순번 발표 시 개별서면 통지는 하지 않음. (전화문의는 착오 가능성 때문에 응답하지 않으니 이점 양지하시기 바람)

※ 당첨자의 계약기간은 주택소유실태 및 과거 당첨사실유무 전산검색 소요기간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당첨자에 대한 주택소유실태 전산검색결과 공급자격 또는 선정순위 등 적격자(정당 당첨자)에 한하여 계약을 체결하고 부적격자는 부적격자가 아님

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하여 적격자로 재확인 후 계약을 체결함.

(부적격자는 사업주체로부터 부적격자가 아님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토록 통보받은 날부터 정당한 사유 없이 일정기간 내에 증명서류를 제출하지 않을 경우 당첨된 주택은 예비입주자에게 공급 함.)
※ 계약체결 이후라도 전산검색결과 부적격자로 판명되어 부적격자가 아님을 증명하지 못하면 계약은 취소 됨.
※ 당첨자 계약기간 내에 계약금 전부 또는 일부 금액을 납부하더라도 정당당첨자 계약기간 내 계약 미체결 시에는 계약을 포기한 것으로 간주 함.
※ 예비입주자 중에서 최초 동·호수 배정추첨에 참가하여 당첨된 자는 공급계약 체결여부와 관계없이 당첨자로 관리 됨.(청약통장 재사용 불가 및 재당첨 제한 등이 적용 됨.)
※ 당첨자 명단은 상기 장소에서 본인이 직접 확인하여야 하며 개별서면 통지는 하지 않음. (전화문의는 착오 가능성 때문에 응답하지 않으니 이점 양지하시기 바람)
※ 계약체결일정 및 당첨자 서류 확인 일정은 사전 예약제로 진행 할 예정이며, 각 일정은 변경될 수 있습니다. 인터넷 홈페이지 및 당첨자들에게 별도 안내할 예정입니다.

■ 입주자 선정방법 및 동·호수 결정

특별공급 입주자 및 예비입주자 선정	• 한국감정원 컴퓨터 입주자 선정 프로그램에 의해 다자녀가구 특별공급, 신혼부부특별공급, 노부모부양특별공급, 기관추천특별공급 당첨자 선정방법에 따라 입주자를 선정하며, 동·호수 추첨은 일반공급 당첨자와 함께 무작위로 동·호수를 결정함. • 특별공급 대상 주택의 입주자를 선정하고 남은 주택의 입주자는 다른 공급유형의 특별공급 신청자 중 입주자로 선정되지 않은 자를 대상으로 추첨의 방법으로 선정하며, 입주자를 선정하고 남은 주택은 일반공급으로 전환하여 공급함. • 특별공급 입주자 선정 시 특별공급 접수종류 구분 없이 주택형별 경쟁이 있는 경우 추첨의 방법으로 주택형별 공급세대의 **300%**까지 추첨으로 예비입주자를 선정함. (주택형별 전체 신청자수가 특별공급 세대수의 **400%**에 미달하는 경우 낙첨자 모두를 추첨의 방법으로 예비입주자로 선정) • 특별공급 신청자가 없거나, 예비입주자 물량에 미달된 경우, 일반공급으로 전환하여 입주자를 모집함.
일반공급 입주자 및 예비입주자 선정	• 한국감정원 컴퓨터 입주자 선정 프로그램에 의해 각 순위별로 청약통장 가입은행 구분 없이 1순위는 전용면적대별 가점제 및 추첨제 적용비율에 따라 입주자를 선정하고, 2순위는 추첨제로 입주자를 선정하며, **동·호수 추첨은 특별공급 당첨자와 함께 무작위로 동·호수를 결정함.** • 전용면적대별 가점제 및 추첨제 적용비율은 다음과 같으며, 85㎡이하 1순위 청약자는 해당 순위에서 가점제(가점점수가 높은 순)로 입주자를 선정하고, 가점제 낙첨자에 한해 별도의 신청 절차 없이 해당 거주지역 추첨제 대상으로 전환하여 입주자를 재선정함. - **전용면적 85㎡ 이하 : 일반공급 세대수의 40%를 가점제로, 나머지 60%는 경쟁이 있을 경우 추첨제 우선공급* 적용** * (투기과열지구, 청약과열지역, 수도권, 광역시) 민영주택 추첨제 공급 시 무주택자 우선공급 : 추첨의 방법으로 입주자를 선정하는 주택수보다 추첨 대상자가 많은 경우, 다음 순서에 따라 입주자를 선정 1. 추첨의 방법으로 공급되는 주택수의 75% : 무주택세대구성원 2. 나머지 25%의 주택(무주택세대구성원에게 공급하고 남은 주택 포함) : 무주택세대구성원과 1주택을 소유한 세대에 속한 자(기존 소유주택 처분조건을 승낙한 자로 한정) 3. 제1호 및 제2호에 따라 공급한 후 남은 주택 : 1순위에 해당하는 자 중 입주자로 선정되지 않은 자 • 동일순위 신청자(가점제 및 추첨제 대상 모두 포함) 중 경쟁이 있을 경우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대구광역시 6개월 이상 거주신청자가 대구광역시 6개월 미만, 경상북도** 거주신청자 보다 우선함. • 입주자 선정 시 선순위 신청자(가점제 및 추첨제 대상 모두 포함)가 일반공급 세대수의 **400%**를 초과할 경우 차순위 접수분은 입주자 및 예비 입주자 선정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음. • 2019.12.06. 개정된「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26조에 의거 일반공급 예비입주자는 청약신청자가 예비입주자 선정 총수에 미달되어도 가점이 높은 순으로 예비순번을 부여합니다. • **예비입주자 선정 시 주택형별로 일반공급 세대수의 300%를 아래와 같이 선정함.** **- 1순위 : 일반공급 세대수의 300%까지 지역우선공급을 적용(대규모택지개발지구인 경우 지역구분 없음)하여 가점이 높은 자를 앞 순번으로 선정** *** 가점제가 적용되지 않는 주택인 경우 추첨의 방법으로 예비입주자를 선정** **- 2순위 : 1순위에서 미달된 예비공급세대수 만큼 지역우선공급을 적용(대규모택지개발지구인 경우 지역구분 없음)하여 추첨으로 선정** • 미계약 또는 계약 해제 발생 시 예비당첨자 순번에 따라 입주자를 선정하되 최초로 예비입주자를 입주자로 선정하는 경우에는 당첨취소 또는 미계약 물량과 해당 주택의 동·호수를 공개한 후 동·호수를 배정하는 추첨에 참가의사를 표시한 예비입주자에 대하여 추첨의 방법으로 동·호수를 배정함. (동·호수를 최초로 배정받은 예비입주자는 계약 여부와 상관없이 당첨자로 관리되며 예비당첨자 명단 및 순번은 당첨자 명단 발표 시 함께 발표됨)
공통 유의사항	• **2018.05.04. 개정된「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19조, 제50조에 따라 특별공급도 인터넷청약(청약Home)을 원칙으로 하며, 정보취약계층(고령자 및 장애인 등) 등 인터넷 청약이 불가한 경우에는 방문접수(견본주택) 가능** • **인터넷 청약(청약Home)의 경우 서류를 제출하지 않고 당첨자 공급계약 체결 전 사업주체로 제출하시기 바라며, 방문접수(견본주택) 시에는 공급별 구비서류를 지참하여야 함.** • **특별공급 방문접수는 견본주택에서만 가능하며 은행창구에서는 접수 불가함.** • **투기과열지구 및 청약과열지역에서 공급되는 경우 특별공급 당첨자의 세대원이 일반공급에 신청하여 당첨될 경우, 개정된「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54조, 제58조에 따라 특별공급 당첨은 인정되나, 일반공급으로 당첨된 주택은 당첨이 취소(재당첨제한 적용)되고 부적격 당첨자로 처리되어 당첨일부터 '수도권 및 투기·청약과열지역 1년, 수도권외 6개월, 위축지역 3개월'(공급신청하려는 지역 기준) 동안 다른 분양주택(분양전환공공임대주택 포함)의 입주자로 선정될 수 없으므로 유의하시기 바람.** • **일반(기관추천) 특별공급 예비대상자는 해당기관에서 선정하여 사업주체에 통보한 자만 신청가능하며, 해당 기관에서 특별공급 예비대상자로 선정되었다 하더라도 반드시 해당 신청일에 인터넷 청약 신청의 방법으로 신청하여야 하며, 특별공급 입주자를 선정하고 남은 주택이 있는 경우 다른 특별공급 신청자 중 선정되지 않은 자를 포함하여 무작위 추첨으로 입주자 및 예비입주자를 선정하므로, 입주자 및 예비입주자로 선정되지 않을 수 있음.** • **특별공급 신청자가 일반공급에도 중복 청약이 가능하나 특별공급에 당첨된 경우 일반청약은 무효로 처리(특별공급에 예비로 당첨된 경우에도 일반공급 예비 선정에서 제외)하고, 특별공급 신청자가 타 유형의 특별공급에 중복청약 시 둘 다 무효처리 됨.** • 같은 단지 내 1인 1건만 신청가능(1인 2건 이상 청약 시 모두 무효처리). 단, 사전 예약접수 후에도 특별공급 또는 일반공급 신청이 가능하나, 동일주택의 특별공급 또는 일반공급 당첨자 (추가입주자 및 부적격당첨자 포함)로 선정된 경우 사전 예약접수 입주자선정 시 추첨대상자 명단에서 제외 • **일반공급의 당첨자로 선정되신 분이 이전기관종사자 등 특별공급(규칙 제47조) 예비입주자로 중복하여 선정된 경우 특별공급 예비입주자의 입주자 선정기회는 제공하지 않음.**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7조 제8항에 따라 부적격 당첨자에게 통보 후, 7일 기간 이내 소명자료를 제출하지 않을 경우 입주자 선정 대상에서 제외되며 부적격 판정된 자에 대해(제26조제5항) 분양 주택의 임의 계약 체결이 불가하오니 유의하시기 바람.(국토교통부령 제490호, '18.2.9시행)** • 특별공급 청약 시 신청자의 착오로 인한 잘못된 신청에 대해서는 수정 접수가 불가하며, 이에 대한 책임은 청약신청자에게 있으므로 유의하시기 바람. • 주택소유여부의 판단에 있어 공급신청 당시 입력값(자료)으로 우선 입주자선정을 하고 국토교통부 전산검색 결과에 따른 세대주 및 세대원의 주택소유 여부에 따라 부적격 통보를 받을 수 있음. • 분양일정 상 계약일 이후라도 부적격 및 부정한 방법으로 당첨되었을 경우에는 아파트 당첨 및 계약이 임의 해지될 수 있으며, 계약금 납입분에 대해서는 별도의 지급이자 없이 원금만 환불하며, 당첨취소세대는 특별공급 및 일반공급 예비입주자에게 공급함. • 특별공급 대상자로서 동·호수를 배정받고 공급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한 경우에도 당첨자로 보며(1회 특별공급 간주), 해당 구비서류 미비 시 계약체결 후라도 계약이 해제될 수 있음.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7조 제8항에 따라 부적격통보를 받고, 통보를 받은 날부터 7일 이상의 기간에 소명하지 못할 경우 당첨취소 및 공급계약이 취소될 수 있으며, 부적격 당첨자로 판명된 경우 **당첨자발표일부터 향후 신청하려는 주택의 입주자모집공고일 기준으로 '수도권 및 투기·청약과열지역 1년, 수도권외 6개월, 위축지역 3개월'(공급신청하려는 지역 기준) 동안** 다른 분양주택(분양전환공공임대주택 포함)의 당첨자로 선정될 수 없음. • 과거에 주택을 소유하였더라도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무주택이면 신청이 가능함. • 특별공급 및 일반공급 예비입주자로 선정된 자는 청약신청 시 기재한 연락처 및 주소로 예비입주자관련 안내를 하오니 연락처 및 주소불명 등의 사유로 인한 피해에 대해서는 당사에서는 책임지지 않음.

※ '20.02.28 시행한 국토교통부 주택기금과-1590(청약과열지역 등 예비입주자 선정비율 확대 요청)호에 따라 투기과열지구에서 공급하는 주택은 500%, 청약과열지역·수도권(인천,경기)·지방 광역시(부산,대구,대전,광주,울산)에서 공급하는 주택은 300%의 예비입주자를 선정

■ 인터넷, 휴대폰 문자 당첨자 발표 서비스 이용 안내

- 본 서비스는 청약신청자의 편의도모를 위한 부가서비스로서 정확한 당첨 여부는 '청약Home'를 통해 확인하여 주시기 바람.

구분		한국감정원(全 은행 청약자)
이용기간		2020.08.28(금) ~ 2020.09.06.(일)(10:00~17:00) (10일간)
인터넷		- 한국감정원 '청약Home' 홈페이지(www.applyhome.co.kr)접속 → 청약조회 → 당첨조회(최근10일) - 스마트폰앱 접속 → 당첨조회 → 당첨조회(10일간)
휴대폰 문자서비스	대상	특별공급 및 일반공급 청약 신청 시 휴대폰번호를 등록하신 분 중 당첨(예비)자
	제공일시	2020.08.28(금) **10:00** **(제공시간은 사정에 따라 변동될 수 있음)**

※ 휴대폰 문자서비스는 청약신청자의 편의도모를 위한 부가서비스로서 정확한 당첨여부는 당첨자 발표장소 등에서 본인이 반드시 재확인하여야 함.

V. 계약 체결 절차 및 유의사항

■ 자격확인서류 제출 및 계약체결 일정 안내

구분	당첨자 서류제출	계약 체결 일정
당첨자 (특별공급 및 일반공급)	- 일시 * 2020.08.28(금) ~ 2020.09.04.(금)(10:00~17:00) - 접수방법 : 견본주택 접수 - 장소 : 대구 오페라 스위첸 견본주택 (대구 동구 신천동 385-1번지)	일시 * 2020.09.08(화) ~ 2020.09.14.(월)(10:00~17:00) - 장소 : 대구 오페라 스위첸 견본주택 (대구 동구 신천동 385-1번지))

※ 당첨자 명단은 '청약Home' 홈페이지(www.applyhome.co.kr)에서 본인이 직접 확인하셔야 하며 당첨자 및 동·호수 확인 시에는 공인인증서 로그인 후 조회 가능함을 알려드리오니 착오 없으시기 바랍니다.
다만, 고령자 및 장애인 등 정보취약계층으로서 인터넷 청약이 불가하여 견본주택(특별공급) 또는 은행창구(일반공급) 등에 방문하여 청약신청한 경우에 한하여 정보입력(주택명, 주택형, 성명, 생년월일 입력) 조회가 가능하나 정보 오입력 등의 경우 부정확한 내역이 조회될 수 있으므로 공인인증서를 발급받으신 분은 반드시 공인인증서로 로그인하여 정확한 당첨내역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인터넷 청약신청 건에 대해서는 '정보입력'에 의한 당첨내역 조회가 불가(당첨여부에 관계없이 '당첨내역이 없음'으로 표기됨)하오니 반드시 공인인증서로 로그인하시어 당첨내역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지정된 계약 기간 이내에 계약체결이 되지 아니할 경우, 당첨자의 지위를 상실하며, 청약관련 예금계좌의 재사용이 불가하며 당첨자로 관리됨

※ 당첨자(특별공급, 일반공급) 및 예비입주자는 지정된 당첨자 서류제출 기간 내에 당첨자에 대한 주택소유실태 전산검색결과 공급자격 또는 선정순위, 신청내역 등 적격 자격에 대한 서류를 제출하여야 하고 부적격자는 부적격자가 아님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하여야 함. **(자격확인 서류를 제출하지 아니할 경우에는 계약체결일 계약 진행 불가함)**

※ 신청자격에 맞는 제증명서류를 제출하여야 하며, 신청자의 착오 등으로 신청내용과 제출서류가 상이할 경우 당첨은 취소되며, 부적격당첨에 따른 불이익은 신청자 본인에게 있음.

※ 소명자료 제출과 관련 사항은 해당자에게 별도 통보예정으로 청약신청자가 청약 신청 시 잘못된 정보 기재(연락처, 주소 등)로 해당 정보를 받지 못하는 경우에는 당사는 책임지지 않으며 이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4조에 따라 접수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으며, 계약을 체결하지 않은 자의 서류는 분양주체에서 6개월간 보관 후 일괄 파기함.**

※ 아래 "계약 체결조건 및 유의사항"을 확인하시기 바람.

■ 계약체결 구비서류

구 분	서류유형		해당서류	발급기준	추가서류 제출대상 및 유의사항
	필수	추가 (해당자)			
공통 (특별공급 포함)	O		계약금	-	• 계약금 무통장입금 영수증 및 입금확인서 **(견본주택에서 계약금 수납 불가)**
		O	서약서	-	• **견본주택에 비치** ※ 특별공급(신혼부부 특별공급 신청요건(무주택) 등) 및 1순위 추첨제(무주택자, 1주택(처분요건) 당첨자 등 서약서 작성
	O		신분증	계약자	• 주민등록증 또는 운전면허증, 여권 ※ 재외동포는 국내거소신고증 사본 1통(또는 국내거주사실증명서 1통), 외국인은 외국인등록증 사본 1통(또는 외국인등록사실증명서 1통)
	O		출입국사실증명서	계약자	• 현 거주지 및 거주기간 등 확인 - 발급기간 :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부터 과거 3년간(3년분) 발급(주민센터 또는 민원24 발급 가능)
	O		주민등록등본	계약자	• 주민등록번호(세대원 포함), 세대구성 사유 및 일자, 세대주 및 세대주와의 관계 포함하여 발급
	O		주민등록초본	계약자	• 주민등록번호(세대원 포함), 주소변동 사항(인정받고자 하는 기간 포함), 세대주 및 세대주와의 관계 포함하여 발급
	O		가족관계증명서	계약자 및 배우자	• 성명, 주민등록번호(세대원포함)를 표기하여 "상세"로 발급 - 미혼, 이혼, 사별, 단독세대, 배우자 분리세대 등 배우자유무 확인
	O		인감증명서(본인발급용), 인감도장	계약자	• 또는 본인서명사실확인서 / 용도 : 아파트 계약용 (주택공급신청용) ※ 본인서명사실확인서 서류제출 시 본인만 인정되며, 대리인 신청 및 계약 불가
		O	국내거소신고증, 국내거주사실증명서	재외동포	• 재외동포는 국내거소신고증 사본 또는 국내거주사실명증명서
		O	외국인등록증, 외국인등록사실증명서	외국인	• 외국인은 외국인등록증 사본 또는 외국인등록사실증명서
특별공급	O		특별공급 구비서류	계약자	• 해당 특별공급 관련서류지참 (본문「Ⅲ. 신청일정 및 장소, 구비서류」내용 확인)
일반공급		O	주민등록등본	배우자 (배우자 분리세대)	• 주민등록번호(세대원 포함), 세대구성 사유 및 일자, 세대주 및 세대주와의 관계 포함하여 발급
		O	주민등록표초본	피부양 직계존비속	• 주민등록번호(세대원 포함), 주소변동 사항(인정받고자 하는 기간 포함), 세대주 및 세대주와의 관계 포함하여 발급 • 직계존·비속을 부양가족으로 인정받고자 하는 경우 - 피부양 직계존속(3년 이상의 주소변동사항을 포함하여 발급) - 미혼인 만30세 이상 직계비속(1년 이상 주소변동 사항을 포함하여 발급)
		O	가족관계증명서	피부양 직계존속	• 피부양 직계존속이 공급신청자와 동일 주민등록표상에 등재되어 있으나, 피부양자 직계존속의 배우자가 피부양와 주민등록표상에 분리된 경우 - 성명, 주민등록번호(세대원포함)를 표기하여 "상세"로 발급
		O	혼인관계증명서	본인 및 직계비속	• 만 30세 미만 기혼자가 무주택기간을 인정받고자 하는 경우, 본인 및 배우자의 성명, 주민등록번호 전부공개 "상세"로 발급 • 만 18세 이상의 직계비속을 부양가족으로 인정받고자 하는 경우, 본인 및 배우자의 성명, 주민등록번호 전부공개 "상세"로 발급
		O	복무확인서	계약자 (장기복무군인)	• 군 복무기간(10년 이상)이 명시된 복무확인서 1통,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4조 제4항에 의거, 10년 이상 장기복무 중인 군인은 해당건설지역에 거주하지 아니하여도 해당주택건설지역으로 봄. (다만, 수도권외 지역에서 공급하는 주택 중 전입제한일이 적용된 경우 기타지역 거주자의 자격으로 청약)

	O		출입국사실증명서	피부양 직계존속	• 피부양 직계존속을 부양가족으로 인정받고자 하는 경우 - 발급기간 :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부터 과거 3개년도(3년간) 발급(주민센터 또는 민원24 발급 가능)
				피부양 직계비속	• 피부양 직계비속을 부양가족으로 인정받고자 하는 경우 - 발급기간 :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부터 과거 3개년도(3년간) 발급(주민센터 또는 민원24 발급 가능)
부적격 통보를 받은 자 (해당주택에 대한 소명자료)		O	무주택 소명서류	-	• 건물등기사항전부증명서 또는 건축물관리대장등본(가옥대장등본 포함)
		O			• 무허가건물확인서 또는 철거예정증명서
		O			• 소형저가주택임을 증명하는 서류(주택공시가격 증명원 등)
		O			• 기타 무주택자임을 증명하는 서류
		O	당첨사실 소명서류	-	• 기타 사업주체가 요구하는 인정 서류(당첨 사실 무효확인서, 가점점수 및 청약자격 확인서류 등)
제3자 대리인 계약 시 (본인 외 모두 제3자로 간주함)	O		위임장	계약자	• 계약자의 인감도장이 날인된 위임장 (당사 견본주택 비치)
	O		인감증명서(본인발급용) 및 인감도장	계약자	• 용도 : 아파트 계약 위임용 (본인서명사실확인서 불가), 단 외국인인 경우 본국 관공서의 증명(서명인증서)이나 이에 관한 공정증서
	O		신분증 및 인장	대리인	• 주민등록증 또는 운전면허증, 여권 ※ 재외동포는 국내거소신고증 사본 1통(또는 국내거주사실증명서 1통), 외국인은 외국인등록증 사본 1통(또는 외국인등록사실증명서 1통)

※ 재외동포는 재외국민 주민등록증, 외국인은 외국인등록증 사본1부(또는 외국인등록사실 증명서 1통)

※ 상기 제증명 서류는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2020.07.31)** 이후 발행분에 한하며, 인감증명서의 용도란은 공란으로 발급하므로 용도를 직접 기재하여 제출하시기 바람. (단, 변경이 있는 경우 변경서류를 제출하여야 하며, 외국인은 공급신청 시와 동일한 서류를 제출하여야 함)

※ 주택의 공급계약이 입주자로 선정 된 날부터 5일이 지난 후 계약을 체결하도록 하던 것을 입주자 및 예비입주자 선정사실 공고일부터 11일이 경과한 후 체결하도록 함에 따라 계약체결 이전에 견본주택에 방문하시어 계약 시 위 구비서류를 사전에 제출하시고 부적격사항 및 적격여부를 확인하시기 바람.(세대주, 당해 거주기간, 주택소유, 배우자 분리세대 등 확인)

※ 거주지 등의 변경이 있는 경우 그 변경사항을 증명하는 서류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발급하는 서류만 인정합니다.

※ 주민등록표등·초본 발급 시 반드시 "주민등록번호", "세대주 성명 및 관계", "주소변동이력 및 일자" 등이 표기되도록 요청하여 발급받으시기 바람.

※ 추후, 계약 시 계약구비서류 변경 또는 추가 등의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 별도 안내할 예정입니다.

※ 주택공급 신청 시, 제출 서류 명확화(제23조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세대별 주민등록표, 가족관계증명서, 출입국사실증명원(일정기간 거주 증명)이 필요합니다.

■ 계약조건 및 유의사항

• 당첨자의 계약 체결기간 준수

- 정당 당첨자 계약기간 내 계약을 체결하지 않을 경우(특별공급 당첨자 포함) 당첨권을 포기한 것으로 간주하며, 계약기간 종료 이후 미계약세대 발생 시 예비입주자에게 우선 공급하고 잔여 세대에 대해서는 자격 제한 없이 임의 분양함.
- 지정 계약기간 내에 계약금 전부 또는 일부 금액을 납부하더라도 계약기간 내 계약 미체결 시에는 계약을 포기한 것으로 간주함.
- 본 아파트에 신청하여 당첨될 경우, 계약체결 여부와 무관하게 당첨자로 전산 관리함.

• 당첨자의 계약기간은 주택소유실태 및 과거 당첨사실 전산검색 등 청약자격 유무 판단기간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계약 이후라도 부적격자로 통보받은 경우에는 부적격자가 아님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견본주택에 내방하여 제출함으로써 부적격 당첨 소명기간 내에 소명을 할 경우에 한하여 계약 체결 합니다. 미제출시 계약이 취소됩니다.

• 주택당첨자는 계약체결 후라도 다음 중 하나에 해당될 경우 당첨권의 박탈과 함께 공급계약은 취소되고, 당첨된 청약 관련 예금계좌의 재사용이 불가하며 당첨자로 관리합니다.

(단, 부적격 당첨자 중 부적격 당첨 사유의 고의성 없는 단순 착오기재 사실임을 소명할 경우, 사업주체에서 판단하여 한국감정원에 당첨자명단에서 제외 요청할 예정이며, 당첨일로부터 '수도권 및 투기·청약과열지역 1년, 수도권 외 6개월, 위축지역 3개월' (공급신청하려는 지역 기준)이후 청약통장이 재사용이 가능합니다.)

- 청약가점항목(무주택기간, 부양 가족수, 주택소유현황 등) 기재내역을 허위 또는 착오로 기재한 경우
- 특별공급 당첨자 중 과거 다른 주택에 특별공급 자격으로 당첨된 사실이 있는 경우

※ 상기 기준에 따라 주택소유여부 및 과거 분양가상한제 적용주택 당첨사실 유무 판단 시 당첨자 본인, 배우자(주민등록이 분리된 배우자 및 그 세대원 전원 포함) 및 세대별 주민등록표상 세대원 전원의 주택 소유 및 당첨 사실을 포함합니다.

• 청약접수일자와 관계없이 당첨자 발표일이 우선인 주택에 당첨이 되면 본 주택의 당첨을 취소합니다.(각각 동일한 청약관련예금으로 청약 신청하여 당첨된 경우에 한합니다.)

- 신청 시 제출한 서류가 사실이 아님이 판명될 경우에는 이미 행하여진 신청은 무효로 하고 체결된 계약은 취소합니다.
- 주민등록번호 위조, 타인의 주민등록증 절취, 청약관련서류 변조 및 도용 등 불법행위로 적발될 경우 계약체결 후라도 당첨취소 및 고발조치합니다.
- 지정 계약기간 내 계약금 또는 일부 금액을 납부하더라도 계약 미체결 시에는 계약을 포기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 계약 시 체결된 건물의 공급면적 및 대지 공유지분은 공부정리 절차 등의 부득이한 경우에 한해 법령이 허용하는 오차 범위 내에서 증감이 있을 수 있으며, 증감이 있을 경우에 계약서 등기부상의 면적차이에 대하여 분양 당시 가격을 기준으로 계산하여 소유권 이전 등기 시까지 상호 정산하기로 합니다. 단, 소수점 이하 단수 조정으로 인한 소수점 이하 면적변경에 대해서는 정산하지 않습니다.
- 주변단지의 신축이나 증, 개축 또는 아파트 배치구조 및 동·호수별 위치에 따라 일조권·조망권에 영향을 받을 수 있으며, 소음·진동(주변도로의 비산분진, 소음문제 등을 포함) 등으로 생활환경에 제약이 있을 수 있음을 확인하고 계약을 체결하여야 합니다.
- 행정구역 및 단지 내 명칭 및 동·호수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 시에는 입주 전 별도 통보할 예정이며 변경 시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합니다.
- 본 주택에 신청하여 당첨될 경우 계약체결 여부와 무관하게 당첨자로 전산 관리 합니다.
- 입주자로 선정된 자 중 당첨이 취소되거나 공급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한 자 또는 공급계약을 해약한 자가 있는 경우에는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52조제3항 및 제57조제8항에 따른 소명기간이 지난 후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26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선정된 예비입주자에게 순번에 따라 공급하되, 최초로 예비입주자를 입주자로 선정하는 경우에는 당첨 취소 또는 미계약 물량 등을 공개한 후, 동·호수를 배정하는 추첨에 참가의사를 표시한 예비입주자에 대하여 추첨의 방법으로 동·호수를 배정하여 공급합니다. 다만, 예비입주자가 없는 경우에는 사업주체가 따로 공급방법을 정하여 공급할 수 있습니다.(단, 부적격당첨자(예비입주자포함)로 판매된 자는 공급대상에서 제외됩니다.)
- 계약체결 후 계약자의 변심, 귀책사유 등으로 인하여 분양계약이 해제되는 경우 계약 내용에 따라 위약금을 배상하여야 합니다.
- 계약체결시 계약자가 선택하는 마감재 선택사항 및 플러스옵션 계약은 변경이 불가하며, 공사에 착수하거나 별도품목 상품을 제작업체에 주문 또는 발주한 이후에는 해제가 불가하므로 이점 유념하시어 계약하시기 바랍니다.
- 기타 계약조건은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59조, 분양계약서 및 계약구비서류를 준용합니다.
- 사업주체가 마감자재업체의 선정 및 시공 상의 고려 등의 사유로 계약자가 계약 시 선택한 마감자재의 선택사항을 변경하고자 할 경우 사전에 이를 계약자에게 통지하기로 하며, 이 경우 통지의 방법 및 효과 등은 분양계약서를 준용합니다. 이 때, 계약자가 사업주체의 위 통지를 수령하거나 또는 수령 간주된 후 2주내에 사업주체에 대하여 서면으로써 이에 대한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 경우에는 계약자가 마감자재 등 선택사항의 변경에 동의한 것으로 합니다.

■ 공급대금 납부계좌 및 납부방법

구분	금융기관명	계좌번호	예금주	비고
계약금 납부계좌	대구은행	504-10-392816-1	아시아신탁(주)	입금시 동·호수 및 계약자 성명을 필히 기재 ex) 101동 101호 홍길동 : 1010101홍길동

- 분양대금 계약금은 상기계좌(은행, 계좌번호, 예금주)로 납부하여야 합니다.(타 은행 계좌이체 및 무통장입금가능, 견본주택 현금수납불가)
- 지정된 분양대금(중도금, 잔금)은 납부 지정일자에 입금 바라며, 사업주체에서는 별도의 통보를 하지 않습니다.
- 무통장 입금시 동·호수 및 계약자 성명을 필히 기재하시기 바랍니다. (예 : 102동503호 홍길동 →1020503홍길동) (단, 무통장 입금자 중 부적격자로 판명된 자는 소명기간 이후 환불이 가능하며, 환불이자는 없음)
- 상기 분양대금 납부계좌로 납부하지 않은 분양대금은 인정하지 않으며, 주택도시보증공사의 분양보증 대상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 국토교통부 전산검색 및 계약 신청시 제출서류 확인결과 공급자격 또는 선정순위를 달리하여 부적격자로 판정될 경우, 사업주체가 규정한 일정기간 이후 환불이 가능하며, 환불금액에 대하여 별도의 이자가 발생되지 않습니다.
- 추가선택품목 계약과 관련한 계약금 및 중도금 · 잔금 납부계좌는 상기의 분양대금 납부계좌와는 다르므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지정된 분양대금 납부일(계약금, 중도금, 잔금)에 아래의 해당 금융기관 계좌로 입금하시기 바라며, 회사에서는 납부기일 및 납부금액에 대하여 별도의 통보를 하지 않습니다.
- 사업주체는 금융거래의 투명성을 위하여 온라인 수납만을 받으며 계약자가 현금으로 납부한 금액은 일체 책임지지 않습니다. (견본주택에서 현장수납은 하지 않으므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계약금, 중도금 및 잔금 납입일이 토/일요일 또는 공휴일인 경우 익일 은행 영업일 기준으로 합니다. (연체료 납부 시 토/일요일 또는 공휴일로 인해 납부가 지연되는 경우라도 납부지연에 따른 연체일수로 산정되므로 유의 바랍니다.)
- 본 주택의 중도금은 공동사업주체 대표자와 대출관련 업무협약을 체결한 금융기관의 대출 승인 시, 대출을 통해 납입할 수 있습니다. (단, 대출 미신청자와 본인의 부적격사유로 인하여 대출이 불가한 계약자는 상기 납부 일정에 맞추어 본인이 직접 현금 납부하여야 합니다.)
- 사업주체는 상기 금융기관 및 계좌번호에 변동이 있을 경우 계약자에게 서면 통지하기로 하며, 이 경우 잔여 분양대금은 변경된 계좌로 납부하여야 하며, 만일 계약자의 계약서상의 주소지가 변경이 있는 경우에는 주소지 변경 후 10일 이내에 공동사업주체 대표자와 및 시공사에게 서면(주민등록등본 등)으로 통지하여야 합니다.
- 사업주체는 각 분양대금의 납부기일을 별도로 통지하지 않으며 미납 시 공급계약서에 따른 연체료가 가산됩니다.
- 만일, 분양대금을 과오납할 경우, 사업주체로 환불신청서(사업주체 양식) 및 구비서류(입금확인증, 통장사본, 신분증 등)를 제출 하여야 합니다.

■ 중도금 납부 및 대출 알선 안내

- 본 아파트의 중도금 대출에 대한 이자는 "무이자대출"로 공동사업주체 대표자가 입주지정기간 개시일 전일까지 부담(납부)하며, 총 분양대금의 60% 범위 내에서 사업주체가 지정하는 대출금융기관에서 대출이 가능합니다.
- 대출관련 세부내용은 별도공지 및 안내예정이며, 사업주체가 지정한 금융기관을 통해 대출 가능하나, 관련정책 및 대출상품의 종류, 개인의 사정 등으로 대출한도가 계약자 별로 상이하거나 대출이 불가할 수도 있으므로 계약자는 지정한 금융기관에 사전에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계약자는 법률의 변경 및 정부의 부동산 정책(주택담보대출의제한 등), 금융시장 변화 또는 대출기관의 규제 등에 따라 사업주체의 중도금 대출 알선이 제한될 수 있음을 인지하고 계약을 체결하여야 하며, 이러한 제한에도 불구하고 분양대금은 계약자 본인 책임하에 조달하여 기일 내에 납부하여야 합니다. [중도금대출 은행의 알선은 사업주체 및 시공사의 의무사항이 아니며 정부정책, 금융기관, 사업주체 및 시공사의 사정 등으로 대출관련 제반 사항(대출 취급기관, 조건 등)이 변경되더라도 사업주체 및 시공사에 책임을 물을 수 없으며, 계약자에 대한 편의제공에 불과합니다.
- 본 주택은 사업주체가 알선한 금융기관을 통해 중도금 대출 신청이 가능할 경우에도, 금융관련 정책, 대출기관의 여신 관리규정, 집단대출 보증기관의 관리규정등으로 대출조건이 각 세대별, 각 개인별로 상이하거나, 최종적으로 중도금 대출 실행이 불가할

수 있음을 인지하시기 바라며 이에 따른 중도금 대출 불가 및 대출한도 축소 등으로 인한 개인적인 불이익에 대한 모든 책임은 계약자 본인에게 있고 이와 관련된 책임을 사업주체 및 시공사가 부담하지 않습니다. (재외동포 및 외국인의 경우 대출 가능 여부 반드시 확인)

- 사업주체가 지정한 금융기관과 적격대출가능 계약자가 중도금대출을 받고자 하는 경우 해당 계약자는 분양계약 체결 후 사업주체가 알선한 중도금대출협약 금융기관과 중도금대출을 별도로 체결하여야 합니다.
(단, 대출 미신청자와 적격대출 가능 계약자라 하더라도 중도금대출 실행이전에 본인의 부적격 사유가 발생하여 대출이 불가능하게 된 계약자는 분양금액을 본인의 책임으로 조달하여 기일 내에 납부하여야함)
- 본 아파트의 중도금 대출금은 사업주체 및 중도금 대출기관과 체결되는 중도금 대출협약 조건에 의거하여 사업주체가 지정한 중도금 대출기관에서 중도금 대출시 입주지정기간 개시일 전일까지의 대출이자는 공동사업주체 대표자가 부담(납부)하며 (단, 사업주체가 지정한 중도금 대출기관의 중도금 대출이자만 해당하며, 관련정책 및 개인의 사정 등으로 대출비율을 제한받아 계약자가 자기 책임 하에 조달한 중도금에 대한 대출이자는 해당하지 않음), 입주지정기간 개시일로부터 발생한 중도금 대출이자는 계약자가 부담하므로 중도금 대출기관에 직접 납부해야 합니다.
- 적격대출 시 금융기관, 집단대출 보증기관의 중도금 대출협약 조건에 의거 계약금 10% 완납이후 중도금 대출이 가능하며, 계약금 일부 미납 시 중도금 대출이 불가합니다.
- 정부정책, 금융기관, 사업주체 및 시공사의 사정 등으로 대출관련 제반 사항(대출 취급기관, 조건 등)이 변경 되더라도 사업주체 및 시공사에 책임을 물을 수 없습니다.
- 중도금 대출에 필요한 대출취급(보증) 수수료(집단대출 보증기관의 보증수수료 등), 인지대 등 제반 경비는 금융기관등에서 정한 방법에 따라 계약자가 부담해야 하며, 적격대출은 금융 신용불량 거래자, 타 은행 대출, 대출한도 및 건수 초과, 한국주택금융공사 또는 주택도시보증공사의 각종 대출보증서 발급제한 등 계약자 본인의 개인적인 사정 또는 정부의 금융정책 등에 의해 제한되고 있음을 계약자 본인이 인지하고, 중도금 대출이 불가하거나 중도금 대출한도가 부족할 경우 계약자는 분양대금 납부조건에 따라 중도금(잔금)을 직접 납부(이와 관련하여 사업주체 및 시공사가 별도로 분양대금 납부일정을 통지하지 않으며 미납 시 연체료가 가산됨) 하여야 합니다.
- 중도금 대출기간 이내라도 계약자의 금융 신용불량 등 결격사유 등이 발생할 경우 대출 금융기관의 중도금 대출중단 등 요구에 따라 계약해지를 할 수 있으며, 이는 사업주체 및 시공사의 잘못이 아닌 계약자의 결격사유에 기인하므로 이에 대한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적격대출 시 대출은행과의 중도금 대출협약 등에 의거하여 대출 금융기관에 중도금 대출을 위한 계약사항에 대한 정보를 제공할 수 있으며, 계약자는 이에 동의하는 것으로 간주합니다.
- 주택도시보증공사와 한국주택금융공사 중도금 대출보증(9억원 이하 주택)은 투기지역, 투기과열지구 청약과열지역의 경우 세대당 1건으로 제한되었으며, 금융기관의 대출조건에 따라 일부 중도금대출에 제한이 있을 수 있습니다.
- 사업주체의 부도·파산등으로 보증사고가 발생할 경우 공동사업주체 대표자가 대납하던 중도금 대출이자는 계약자가 부담하여야 하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 금융시장의 경색 또는 변동성으로 인하여 선정된 중도금대출 금융기관의 특유성(업종, 업태 등) 및 대출형태에 따라 부득이 계약자의 신용등급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으며, 이 경우 계약자는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적격대출 관련 중도금 대출 신청 관련 안내는 사업주체 의무사항이 아니며 "개인사유로 인한 대출 미신청" 또는 "금융거래 신용불량자 등" 계약자의 사정에 의한 대출 불가 등으로 발생하는 개인적인 불이익에 대한 모든 책임은 계약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 계약자는 입주 전까지 대출금을 상환하거나 담보대출로 전환하여야 하며, 대출금을 담보대출로 전환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공급금액을 전액 완납하고 소유권 이전 및 근저당권 설정에 필요한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또한, 담보대출에 따른 보증수수료, 인지대 등 제반 수수료 및 근저당설정 비용 등은 대출은행이 정한 부담 주체가 부담하여야 하며, 담보 전환 시 대출한도, 대출금리 등 기타대출조건 등은 대출은행의 조건에 따르기로 합니다.
- 사업주체가 알선한 대출의 대출기간 만료시(준공 후 미입주 등) 금융기관의 대출기간 연장 및 공정률에 따른 중도금 납입일자의 변경에 대해 별도의 절차 없이 동의하는 것으로 간주합니다.

■ 기타유의사항

- 본 아파트는 실제로 입주하실 분을 위하여 건립되는 것이므로 투기의 대상이 될 수 없으며, 신청서 내용 변조 등의 주택공급 질서를 교란시키는 경우 관련법에 따라 처벌받게 됩니다.
- 본 아파트 공사 중 천재지변, 문화재 발견, 노동조합의 파업·태업 및 전염병 발생등 예기치 못한 사유가 발생할 경우 예정된 공사일정 및 입주 시기 등이 지연될 수 있으며, 이 경우 입주지연보상금은 발생하지 않습니다.
- 본 아파트는 교육청이나 인허가청 요청시 분양계약 관련 사항을 제출할 수도 있습니다.
- 주택도시보증공사㈜ 보증관련으로 개인정보 요구 시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존에 관한 법률 제23조의 규정에 따라 정보제공을 할 수 있습니다.
- 주택규모의 표시는 소수점 넷째자리까지 표현하였으며, 연면적과 전체 계약면적과는 소수점 이하에서 약간의 오차가 생길 수 있습니다.
- 일부세대는 공사 시행중에 품질관리를 위하여 샘플하우스로 사용될 수 있습니다.
- 청약 및 계약 전 사업부지 현장을 방문하시어 주변 혐오시설 유무, 도로, 철도, 소음, 조망, 일조, 학교, 진입로 등 주위 환경을 확인하시기 바라며, 현장여건 미확인으로 발생하는 민원에 대해서는 추후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청약신청 및 계약 장소에서 발생하는 각종 상행위(인테리어 시공, 부동산 중개업자의 영업행위 등)는 사업주체와는 무관한 사항이므로, 청약 및 계약 시 이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당첨 이후 주소변경이 있을 경우에는 변경 내용을 사업주체, 시행수탁자 및 시공사 에게 즉시 서면(주민등록표등본 포함) 통보하시기 바랍니다.
- 타사 또는 사업주체 분양아파트의 마감사양, 설치 부대편의시설 및 조경과 본 아파트를 비교하여 견본주택 및 사업계획승인도서에서 제시한 사항 외에 추가적인 마감사양 및 부대 편의시설, 조경의 설치 또는 교체를 요구할 수 없으므로 타 분양 아파트와 충분히 비교 검토한 후에 계약체결하시기 바랍니다.
- 정부정책 변경(DTI, LTV, DSR등)에 따른 중도금 대출 비율 축소 및 불가시 사업주체, 시공사는 이에 대한 책임을 지지 않으며, 수분양자는 분양계약시 사업주체 및 시공사가 제시한 중도금 대출 및 이자 부담 조건에도 불구하고, 변경된 조건에 따라 중도금 및 잔금을 납부하여야 하며, 이 경우 발생한 일체의 손해에 대하여는 수분양자가 책임짐. 정부정책 변경 등에 따라 사업주체 및 시공자가 중도금 대출은행 알선 불가시 수분양자가 직접 중도금을 계약 시 회차, 일자에 납부하여야 합니다.
- 사업주체는 분양계약 체결과 동시에 계약자(분양, 입주자)에 대한 분양대금채권을 주택도시보증공사에게 양도하며 계약자(분양, 입주자)는 이의 없이 승낙하여야 합니다.
- 양도받은 분양대금은 주택도시보증공사의 제반 보증(부담금대출보증, 사업비대출보증, 조합주택시공보증, 분양보증 등)에 관련된 채권에 우선 충당하고, 더하여 기타 사업정산 후 잔여액이 있을 경우 사업주체에게 반환하기로 합니다.
- 아파트 공사 진행 정보 제공 : 분양보증을 받은 아파트 사업장의 공사 진행 정보는 주택도시보증공사의 모바일 어플리케이션(HUG-i)을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 입주자 사전방문 방법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1조 제3항 27호에 따라 도장 공사・도배공사・가구공사・타일공사・주방용구 공사 및 위생가구공사의 상태를 확인하기 위하여 입주지정 개시일 약 1~2개월 전에 입주자 사전 방문을 실시할 예정이며, 정확한 사전방문 예정일자는 별도 통보합니다.

■ 입주예정일 : 2024년 04월 예정(입주예정일은 공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정확한 입주일자는 추후 통보할 예정입니다.)

- 실입주일이 입주예정일 보다 앞당겨질 경우 미도래 중도금과 잔금을 실입주지정일에 함께 납부하여야 하며, 선납할인은 적용되지 않습니다.

- 입주지정기간에는 연체료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합니다.
- 입주예정일은 공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공사 중 천재지변, 정부 정책이나 관계 법령의 변경 등 예기치 못한 사유가 발생할 경우 예정된 공사일정 및 입주 시기 등이 지연될 수 있으며, 이 경우 입주 지연에 따른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VI. 발코니 확장 및 추가선택품목 계약

▣ 발코니 확장

■ 타입별 발코니 확장공사비

(단위:원, VAT 포함)

주택형	공급금액	계약금(10%)	잔금(90%)
		계약시	입주지정일
84A	18,000,000	1,800,000	16,200,000
84B	19,000,000	1,900,000	17,100,000
84C	17,000,000	1,700,000	15,300,000
84D	18,000,000	1,800,000	16,200,000

■ 발코니 확장 유의사항

- 발코니 확장 공사비(부가세포함)는 아파트 분양공급금액과는 별도이며, 발코니 확장형 세대는 반드시 추가 부담하여야합니다. (주택공급계약 체결시 발코니 확장 계약금 납부)
- 발코니 확장 실별·위치별로 선택할 수 없으며, 일괄확장을 전제로 산정된 금액입니다.
- 발코니 확장금액은 발코니 확장에 따른 추가설치품목의 가격이 포함되어 있으며, 발코니 확장으로 설치하지 아니하는 기본품목 가격을 감한 금액이며, 발코니샤시 금액이 포함되어 있음. 발코니 확장 시 변동되는 내용은 견본주택을 방문하시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발코니 확장에 수반되는 추가설치품목은 주택형별로 다소 차이가 있으므로 확인한 후 계약하시기 바라며, 자재의 품절, 품귀 등으로 추가 설치품목의 사양이 변경될 수 있으며, 이 경우 동질, 동가 이상의 제품(타사 포함)으로 시공될 수 있고 이에 대하여 계약자는 일체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준공(입주) 이후 계약자가 개별적으로 발코니를 확장(구조변경) 하고자 할 경우에는 관계법령에 의거 타입주자 등의 동의를 받아 행위신고(허가)를 득하여야 하고, 에너지절약의 설계기준, 건축물의 피난, 방화 구조 등의 기준에 적합하게 시공하여야 하며, 관리주체에 반드시 신고, 확인 후 설치 하여야 함. 만일 이를 이행하지 아니하고 발코니를 확장할 경우에는 관계법령 위반에 따른 책임은 계약자에게 있으며 주택법, 건축법 등 관계법령을 위반하는 불법 구조변경으로서 엄정한 처벌과 원상복구 등 강력한 행정조치를 받게 됨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발코니 개별 확장세대의 입주자가 개별적으로 실내인테리어업체 등을 통하여 개별 시공한 부위에 하자가 발생하여 원칙적으로 시공책임이 불분명한 경우, 사업주체가 적법한 감리를 통한 시공으로 사용승인을 득하였다면 본 아파트의 사업주체에게 일방적인 하자의 책임을 물을 수 없으며 하자 발생 책임소재에 대한 근본 원인 규명의무는 계약자(입주자 및 승계자) 본인에게 있으니 유의바랍니다.
- 자재발주 및 시공상의 문제로 일정시점 이후에는 발코니 확장계약이 불가하며, 아파트 공급계약 체결기간 내에 발코니 확장계약을 체결할 예정입니다.
- 발코니 확장 시 발코니 외벽은 단열재의 추가 설치 시 단열재의 위치, 벽체의 두께, 천정형태, 세대간 마감 및 가구 등이 상이할 수 있고 일부 벽체의 돌출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발코니 외부 전면창 설치 및 발코니확장에 따른 냉난방 비용의 상승이 있을 수 있습니다.
- 견본주택은 발코니 확장형 세대를 전시하였으나 비확장세대는 확장형 세대와는 다르게 공간이 협소하며, 상이한 내부 인테리어가 적용되므로 계약자는 계약 전 이를 충분히 인지하고 상담하신 후 계약조건을 확인하시기 바라며 이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발코니는 시공사에서 정하는 기준에 따라 별도 계약을 체결하여야 하고 계약체결 이후 관계법령 해석상의 차이 등의 사유로 발코니 확장 공사가 일부 변경될 경우 이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발코니 확장 선택시 실내습도 등 생활여건에 따라 발코니 샤시 및 유리창 표면 등 기타 확장부위에 결로가 발생할 수 있다는 사실을 확인하며 직접 외기에 면하게 되므로 상대적으로 추위를 느낄 수 있으나, 이로 인하여 시행사 또는 사업주체에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주기적인 실내환기는 결로 발생 예방에 큰 도움이 됨)
- 각 세대의 발코니에 필요시 선홈통 및 드레인 등이 계획 시공되어질 수 있으며, 비확장 세대의 발코니 사용 또는 우천으로 인하여 소음 등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발코니 개별확장 세대의 경우 난방 장비용량 증설에 따른 비용은 입주시점에 아파트 관리주체와 협의하여 추가 부담하여야 합니다.
- 거실 및 침실 등에 설치되는 외부에 면한 발코니창호(콘크리트 높은턱 위치 제외)는 수밀성 및 기밀성, 단열 강화를 위해 제품의 형태 및 사양, 규격 등이 다소 변경될 수 있습니다.
- 발코니에 설치되는 난간과 발코니 샤시의 형태 및 사양은 기능 및 미관개선을 위하여 형태 및 재질이 실시공시 변경될 수 있습니다.
- 발코니 확장 시 발코니에는 안전 접합 유리 난간대가 적용된 발코니 창호가 설치될 예정이며, 안전 접합 유리 난간대의 높이, 크기, 규격, 사양은 본공사 시 현장여건을 고려하여 변경되어 시공될 수 있습니다.
- 발코니 확장금액은 공동주택 공급금액과는 별도로서 취득세 등 제세공과금이 포함되어 있지 않으며 관할 관청으로부터 계약자에게 제세공과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 발코니 확장시 현관중문 3연동 슬라이딩 도어 기본제공 됩니다.
- 발코니 확장시 아트월 84A, 84C, 84D 타입의 경우 타일 → 이태리 세라믹패널(쿼조) 변경, 84B타입의 경우 타일 → 이태리 세라믹패널(칼라카타) 변경 됩니다.
- 발코니 확장시 주방상판 인조대리석(MMA) → 이태리 세라믹패널로 변경 제공 됩니다.
- 발코니 확장시 주방벽체마감 벽체타일 → 이태리 세라믹패널로 변경 제공 됩니다.

※ 공동주택의 발코니 설계 및 구조변경기준 : 「건축법 시행령」제2조 제14호, 제46조 제4항, 제5항의 규정에 의해 공동주택의 발코니 관계법령이 허용하는 기준 내에서 구조변경할 수 있습니다.

▣ 추가선택사항 옵션품목

■ 천장형 시스템 에어컨

(단위 : 원 / VAT포함)

주택형	선택안	설치개수	설치위치	설치금액	계약금(10%)	잔금(90%)
					계약시	입주지정일
전 주택형 공기청정기능 無 (제조사:삼성전자)	1	2	거실+침실1(안방)	3,740,000	374,000	3,366,000
	2	3	거실+침실1(안방)+침실2(or침실3)	5,049,000	504,900	4,544,100
	3	4	거실+침실1(안방)+침실2+침실3	6,534,000	653,400	5,880,600
전 주택형 공기청정키트 (천정형 시스템에어컨 추가품목) (제조사:삼성전자)	1	2	거실+침실1(안방)	517,000	51,700	465,300
	2	3	거실+침실1(안방)+침실2(or침실3)	770,000	77,000	693,000
	3	4	거실+침실1(안방)+침실2+침실3	1,023,000	102,300	920,700

- 천장형 시스템 에어컨(이하 시스템에어컨) 옵션금액은 공동주택 공급금액과 별도이며 부가가치세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 시스템에어컨 계약은 공동주택 공급계약 체결과 별도로 추가 선택품목의 공급계약을 체결할 예정이며, 제안된 사항 외에 실별, 위치별로 선택할 수 없습니다.
- 상기 제품의 제조사와 모델은 제품의 품절, 품귀 또는 신제품 출시, 성능개선 등의 사유로 동급이상으로 변경 될 수 있으며, 기타 신청형별 설치 위치 등 세부사항은 견본주택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에어컨 냉매배관은 거실, 침실1(안방)만 기본으로 설치되므로 시스템 에어컨 옵션 미선택 시 일부실의 경우 입주자 부담으로 배관 및 실외기를 설치하여야 합니다.(위치는 시공상 간섭을 고려하여 변경될 수 있음)
- 시스템에어컨 신청 시 기본제공(거실, 침실1(안방)) 품목인 냉매배관 및 에어컨 실내기용 전기콘센트 설치공사 등을 제외하며, 상기 금액은 해당실의 냉매배관 및 전기콘센트 설치공사비 등에 대한 감액 부분과 추가 설치품목에 대한 증액부분을 정산하여 산정한 금액입니다..
- 에어컨실내기의 설치위치는 해당 실내에서 다소 조정될 수 있으며, 기능상 장애발생이 우려되는 경우 및 기타 세대내 조건에 따라 설치 위치의 조정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시스템에어컨 컨트롤러는 무선(리모컨)으로 제공되며, 실내기 1대당 1개가 제공됩니다.
- 시스템에어컨 선택 시 설치되는 실외기에 스탠드형 및 벽걸이형 에어컨을 연결하여 가동할 수 없습니다.
- 시스템에어컨 설치로 인하여 우물천장의 크기 및 깊이, 에어컨 설치부위의 천장높이가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시스템에어컨은 발코니 확장 시에만 선택할 수 있고, 계약 후 선택사항 변경 불가합니다.
- 공기청정키트 선택 시 필터 교환 주기 등 유지관리에 대한 사항은 제조사(삼성전자) 안내사항을 확인 하시기 바랍니다.
- 상기 시스템에어컨 옵션 외 입주자가 별도 설치시 누수, 천장손상 등에 대한 하자는 사업주체 및 시공사의 책임이 아님을 인지하고 이에 대한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거실 및 주방 바닥마감(강마루 → 타일)

(단위 : 원 / VAT포함)

주택형	구분	설치금액	계약금 (10%)	잔금 (90%)
			계약시	입주지정일
84A, 84C, 84D	강마루 → 타일 (거실 + 주방 바닥타일)	1,716,000	171,600	1,544,400
84B		1,639,000	163,900	1,475,100

- 바닥 타일의 표면은 폴리싱(유광) 처리되지 않은 제품이나 물기 등이 묻어있을 경우 미끄러움이 발생할 수 있으며, 제품 및 줄눈 등의 오염에 대한 관리가 필요합니다.
- 바닥 타일의 시공은 계약자가 임의로 시공 위치 지정이 불가하오니 이점 착오 없으시기 바랍니다.
- 타일의 패턴이 일정하지 않아 본공사 시 견본주택과 타일패턴이 다를 수 있습니다.
- 견본주택에 시공된 타일 제품의 품절, 품귀 또는 신제품 출시, 성능개선 등의 사유로 동급(타사제품 포함)이상으로 변경 될 수 있습니다.
- 타일과 강마루 또는 이질재가 만나는 부위는 견본주택과 다르게 별도의 줄눈재가 시공 될 수 있습니다.

■ 빌트인 전기쿡탑

(단위 : 원 / VAT포함)

주택형	구분	업체명(모델명)	설치금액	계약금 (10%)	잔금 (90%)
				계약시	입주지정일
전 주택형	하이브리드 쿡탑 (인덕션2구+하이라이트1구)	쿠쿠전자 (CIHR-D303FB)	627,000	62,700	564,300
	인덕션 쿡탑 (인덕션3구)	쿠쿠전자 (CIRS-CL301FB)	759,000	75,900	683,100
	후드일체형 인덕션 쿡탑 (인덕션 4구+후드 시스템)	BORA (PURU)	2,696,100	269,610	2,426,490

- 유상옵션 미선택 시 3구 가스쿡탑이 기본형으로 설치됩니다.

■ 키친핏 냉장냉동고

(단위 : 원 / VAT포함)

주택형	구분	업체명(모델명)	설치금액	계약금 (10%)	잔금 (90%)
				계약시	입주지정일
전 주택형	키친핏 냉장고1대+냉동고1대 (BESPOKE)	삼성전자 (RZ32T7665AP(냉동) + 코타패널) (RR39T7695AP(냉장) + 코타패널)	3,949,000	394,900	3,554,100
	키친핏 김치냉장고(BESPOKE) 1대	삼성전자 (RQ32R7645AP+코타패널)	1,694,000	169,400	1,524,600

- 키친핏 냉장냉동고 & 김치냉장고 미선택 시 오픈장이 설치되며, 키친핏 냉장고 및 냉동고 선택에 따라 가구의 형태 및 크기 등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 키친핏 냉장냉동고 선택 및 김치냉장고 미선택 시 김치냉장고장의 크기가 다소 축소되어 일부 김치냉장고 제품이 들어가지 않을 수 있으므로 반드시 확인하시고 계약하시기 바랍니다.
- 키친핏 냉장냉동고 선택 및 냉장냉동고&김치냉장고 선택시 페어키트가 설치되며, 키친핏 김치냉장고만 선택할 경우 별도의 페어키트가 설치되지 않습니다.

■ 빌트인 전기오븐

(단위 : 원 / VAT포함)

주택형	구분	업체명(모델명)	설치금액	계약금 (10%)	잔금 (90%)
				계약시	입주지정일
전 주택형	고급형 전기오븐	삼성전자(NQ50H5533KS)	451,000	45,100	405,900
	IOT 스팀오븐	SK매직(EON-B440SA)	671,000	67,100	603,900

- 유상옵션 미선택 시 빌트인 전기오븐(삼성전자 HSB-N361B)가 기본형으로 설치됩니다.

■ 빌트인 식기세척기

(단위 : 원 / VAT포함)

주택형	구분	업체명(모델명)	설치금액	계약금 (10%)	잔금 (90%)
				계약시	입주지정일
전 주택형	빌트인 식기세척기	삼성전자 (DW50T4065SS)	539,000	53,900	485,100

• 유상옵션 미선택 시 여닫이 도어형 주방가구마감 처리됩니다.

■ 붙박이장(침실2)

(단위 : 원 / VAT포함)

주택형	구분	설치금액	계약금 (10%)	잔금 (90%)
			계약시	입주지정일
84A, 84C, 84D	침실2 붙박이장	1,342,000	134,200	1,207,800

. 붙박이장 미선택 시 도배마감 처리 됩니다.

■ 공간선택 (84A)

(단위 : 원 / VAT포함)

주택형	구분	설치금액	계약금 (10%)	잔금 (90%)
			계약시	입주지정일
84A	드레스룸형 →알파룸형	3,542,000	354,200	3,187,800

. 상기 금액은 드레스룸형에서 알파룸형 선택 시 인테리어 및 가구 공사비의 증액 부분을 정산하여 산정한 금액입니다.
. 알파룸 선택 시 설치되는 안방 유리 칸막이 및 도어는 5T 강화유리로 설치될 예정입니다.

■ 스마트미러

(단위 : 원 / VAT포함)

주택형	구분	설치금액	계약금 (10%)	잔금 (90%)
			계약시	입주지정일
84A,84C	스마트 미러	3,432,000	343,200	3,088,800
84B	스마트 미러	3,399,000	339,900	3,059,100

• 스마트미러 미선택 시 은경+간접조명 디자인으로 변경되어 시공됩니다.
• 헬스케어(인바디 및 피부진단기) 기기 포함 금액이며, 헬스케어에 관한 기능에 대한 개선을 사업주체에 요청할 수 없습니다.
• 세대 내 무선AP 및 인터넷 WIFI 미연결 시 웹서핑 및 일부 기능이 제한됩니다.

■ 추가선택품목 유의사항
• 추가 선택품목 설치공사는 입주자모집 공고시 공개된 금액의 총액 범위 내에서 사업주체에서 정한 기준에 따라 별도 계약을 체결할 수 있습니다.

- 추가 선택품목의 설치여부에 대하여 입주자모집공고시 입주자의 의견을 들을 수 있으며, 입주자와 주택공급계약 체결시 추가 선택품목의 구입의사가 있는 입주자와 추가 선택품목 공급계약을 체결할 수 있습니다.
- 본 공고 외 추가품목 설치에 관한 내용은"공동주택 분양가격의 산정 등에 관한 규칙 및 시행지침"에 따릅니다.
- 추가 선택품목 판매가는 공동주택 공급금액과 별도이며, 부가가치세가 포함되어 있으며, 추가 선택품목 설치에 따른 기존설치품목의 미설치로 인한 감소비용과 추가 설치품목 증가 비용이 정산된 금액입니다.
- 시공상의 문제로 일정시점 이후에는 추가품목 선택의 계약이 불가하며, 계약 체결 후 변경이나 해약은 불가합니다.
- 상기 제품의 제조사와 모델은 제품의 품절, 품귀 또는 신제품 출시, 성능개선 등의 사유로 동급의 제품으로(타사포함) 변경 될 수 있으며, 기타 신청형별 설치 위치 등 세부사항은 대구 오페라 스위첸 견본주택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상기 추가 선택품목에는 취득세가 포함되어 있지 않으며, 입주 후 관할관청으로부터 취득세 등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 상기 추가 선택품목의 설치 위치는 계약자가 임의로 위치 지정을 할 수 없습니다.(계약 전 위치 확인 요망)
- 천장형 시스템에어컨 선택시 기본으로 제공되는 일반에어컨용 냉매매립배관(거실, 침실1(안방)) 및 에어컨용 콘센트(거실, 침실1(안방))는 설치되지 않으며, 판매가격은 기존 설치품목의 미설치로 인한 감소비용과 추가 설치품목의 증가비용이 정산된 금액이며, 천장형 시스템에어컨으로 인해 우물천정의 크기 및 깊이, 에어컨 설치부위의 천장높이가 변경될 수 있습니다.
- 빌트인 전기쿡탑 및 빌트인오븐 옵션 선택시에는 기본으로 제공되는 가스쿡탑 및 전기오븐은 시공 및 제공되지 않으며, 판매가 산정시 해당하는 비용은 감액하여 반영된 것입니다.
- 옵션 선택에 따라 일부 배선기구 및 조명기구의 사양, 수량, 종류, 위치가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상기 추가 선택품목은 견본주택에 설치된 세대에 전시(일부)되오니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키친핏 냉장고 및 김치냉장고 선택시 설치 제품의 설치 위치 및 붙박이가구의 형태 변경이 불가합니다.
- 바닥타일 선택시 마루, 현관디딤판 등 바닥 이질재와 접하는 부위에 재료분리대가 설치됩니다.
- 후드 일체형 인덕션 쿡탑 선택 시 교체용 필터는 1개 추가 지급됩니다.

■ 발코니 확장 및 옵션품목 납부계좌 및 납부방법

- 발코니 확장 및 옵션품목은 계약체결 전에 아래의 계좌로 공급 계약금액을 입금하여야 하며, 중도금부터 잔금까지는 향후 세대별 부여되는 계좌로 납부하여야 합니다.
- 계약금, 잔금 납부계좌로 부여되며, 모계좌(대구은행 504-10-393972-2 예금주 :아시아신탁(주))로 관리됩니다.
 - 세대별 옵션품목비용 납부계좌는 계약체결시 세대별 공급계약서에 명기하여 고지할 예정입니다.
 - 지정된 세대별 옵션품목비용(중도금, 잔금)은 납부지정일자에 입금바라며 사업주체에서는 별도의 통보를 하지 않습니다.
- 아래의 계좌로 납부하지 아니한 발코니 확장비용 및 옵션품목비용은 인정하지 않으며, 분양대금 입금계좌와 혼돈하지 않으시기 바랍니다.

구분	금융기관명	계좌번호	예금주	비고
계약금 납부계좌	대구은행	504-10-393972-2	아시아신탁(주)	입금시 동·호수 및 계약자 성명을 필히 기재 ex) 101동 101호 홍길동 : 1010101홍길동

- 옵션품목비용은 상기 납부계좌로 반드시 무통장 입금 또는 인터넷뱅킹(견본주택 현금수납 불가)하시기 바라며, 입금 시 계약할 동·호수 및 계약자 성명을 필히 기재하시기 바랍니다. (예 : 101503호 홍길동 →101503홍길동)
- 옵션품목비용을 납부한 무통장 입금증 또는 인터넷뱅킹 확인서 등은 계약체결시 지참하여 제출하시기 바랍니다.(착오 납입에 따른 문제발생시 사업주체는 책임지지 않습니다.)

Ⅶ. 유의사항

■ 공통사항

- 계약자는 다음과 같은 사항에 대하여 숙지하여야 하며, 추후 미확인에 대한 불이익은 계약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 주택규모 표시방법을 평형 대신 넓이표시 법정단위인 제곱미터(㎡)로 표기하였으니 신청에 착오 없으시기 바람.
 ※ 평형 환산법 = 형별면적(㎡)×0.3025 또는 형별면적(㎡)÷ 3.3058
- 2009.4.1 주택공급에 관한규칙 일부 개정으로 주택형 표기방식이 기존 공급면적(전용면적+주거공용면적) 기준에서 주거전용면적만을 표기하도록 변경하였으며, 당사는 주택형 오기로 인한 불이익에 대해 일체의 책임을 지지 않음.
- 보존등기 및 소유권 이전등기는 입주일과 관계없이 지적공부정리 절차 등으로 지연될 수 있습니다.(특히 대지의 이전등기는 상당기간 지연될 수 있으며, 이 경우 건물등기와 대지권 등기를 별도로 이행하여야 합니다).
- 계약시 체결된 건물의 공급면적 및 대지의 공유지분은 공부정리 절차 등의 부득이한 경우에 한해 법령이 허용하는 오차 범위내에서 증감이 있을 수 있으나 증감이 있을 때에는 계약서와 등기부상의 면적차이에 대하여 분양당시 가격을 기준으로 계산하여 소유권이전등기시까지 상호 정산합니다. 단, 이 경우 정산금에 대하여 이자를 적용하지 않으며, 소수점 이하 면적변동 및 법령이 허용하는 오차범위 내에서는 상호 정산하지 않습니다.
- 본 아파트 공사 중 천재지변, 문화재 발견, 전염병 발생, 정부의 정책이나 관계법령의 변경 등 예기치 못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 예정된 공사일정 및 입주시기 등이 지연될 수 있으며, 이 경우 사업주체 및 시공사는 그에 대한 책임이 없음을 유념하시기 바라며 그로 인한 입주지연보상금 등은 발생하지 않습니다.
- 본 아파트는 단지배치 특성상 동별, 향별, 층별, 위치별 차이 및 세대 상호간의 향·층에 따라 일조권, 일조량, 조망권, 환경권에 차이가 있으며, 일부 사생활권이 침해당할 수 있으므로 견본주택 내 비치된 설계도서 및 참고도서, 분양홍보물 등을 충분히 확인하고 청약 및 계약 체결하여야 합니다.
- 대지경계 및 면적은 실시계획 변경 등으로 최종 측량 성과도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므로 준공시 대지경계 및 지적 확정에 따른 대지면적 정산 처리시 입주자는 동의하여야 합니다.

- 각종 광고 및 홈페이지, 홍보물(카탈로그, 전단, 안내문 등) 등 홍보과정에서 현재 계획 또는 예정으로 홍보한 내용은 추후 인허가 과정이나 관계기관의 사정, 관련정책 등의 변화로 변경될 수 있으며, 홍보물 제작과정에서 오기, 오탈자로 인하여 잘못 기재 될 수 있으니 견본주택에 방문하시어 확인하시고 청약 및 계약하시기 바랍니다.
- 입주자모집공고 이전 제작·배포된 홍보물 등은 사전 홍보시 입주자의 이해를 돕기 위해 제작된 것으로 현재와 다소 상이할 수 있으니 견본주택을 확인하시어 계약시 착오 없으시길 바랍니다.
- 카달로그, 홍보물 등 각종 인쇄물 및 조감도는 개략적인 이해를 돕기 위한 것이므로 실제와는 다소 차이가 있을 수 있으며, 시설물의 위치와 규모는 측량결과 및 각종 평가심의의 결과에 따라 시공시 다소 변경될 수 있습니다.
- 단지 이미지컷 및 전시모형은 전 세대 발코니확장을 감안하여 작성되었습니다.
- 카달로그 및 홍보물 등에 이용된 사진, 이미지, 일러스트(그림) 등과 견본주택 내 전시모형은 입주자의 이해를 돕기 위해 촬영 또는 제작 연출한 것으로 식재 및 색상, 시설물 등 실제와 차이가 있을 수 있으므로 이를 충분히 인지하고 견본주택. 사이버 모델하우스 및 현장을 방문하시어 직접 확인하시고 청약 및 계약하시기 바랍니다.
- 사전에 사업부지 내.외 현장을 필히 방문하시어 주변현황 및 현장여건, 주변개발, 조망권, 각종 공사로 인한 소음발생 여부 등을 확인한 후 청약신청 및 계약체결하시기 바라며, 미확인으로 발생하는 민원에 대해서는 향후 어떠한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보존등기 및 소유권 이전등기는 입주일과 관계없이 지적공부정리 절차 등으로 지연될 수 있음(특히 대지의 이전등기는 상당기간 지연될 수 있으며, 이 경우 건물등기와 대지권 등기를 별도로 이행하여야 함)
- 견본주택에 적용된 마감재는 유사색상 및 무늬를 지닌 동등 수준의 타제품으로 대체 시공될 수 있으며 의장이 등록되어 있는 경우에는 모양이나 색상이 바뀔 수 있습니다.
- 견본주택은 분양 후 일정기간 공개 후 관계규정에 따라 폐쇄 또는 철거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철거 전 견본주택 내부의 평면설계 및 마감자재 등은 촬영하여 일정기간 동안 보관할 예정입니다.
- 견본주택 PL창호(프레임, 유리등)는 견본주택 설치를 위해 임의로 지정된 제조사에 의해 생산된 제품으로 본 공사 시 제조사는 변경될 수 있으며 그에 따라 프레임 및 손잡이 등의 하드웨어는 다소 상이 할 수 있으며 본 공사 시 PL창호 색상이 변경 될 수 있습니다.
- 견본주택에 설치된 단지모형 및 단위세대는 입주자의 이해를 돕기 위한 것이며, 대지 주변현황, 공사시 필요한 설비기기 및 출입문 등은 표현되지 않습니다.
- 견본주택 내에는 분양가 포함 품목, 전시품 등이 혼합되어 시공·전시되어 있으나, 본 공사시에는 전시품은 설치되지 않으며, 계약내용에 따라 시공됩니다.
- 견본주택은 확장형으로 시공되었으며, 기본형세대 선택시 제외품목이나 기본품목 등을 확인하시기 바라며, 목창호류, 가구류, 바닥재 등 마감자재의 색상, 디자인, 재질 등은 실시공시 견본주택과 다소 상이할 수 있습니다.
- 견본주택에 설치된 온도조절기, 콘센트 및 조명, 바닥배수구, 욕실환풍기 등의 제품사양 및 위치는 실시공시 변경될 수 있습니다.
- 견본주택에 설치된 스프링클러 헤드와 소방감지기의 위치 및 개수는 본 공사와 무관하며, 실시공시 소방법에 맞추어 설치될 예정입니다.
- 일부 세대 선택형 평면타입을 적용할 경우 조명 및 배선기구의 사양, 수량과 위치가 변경될 수 있습니다.
- 발코니 확장부위는 직접 외기에 면해 상대적인 추위를 느낄 수 있습니다.
- 발코니(실외기실, 세탁실포함)에는 드레인 및 선홈통이 설치될 수 있고, 사양, 위치, 개소는 변경될 수 있으며, 드레인이 설치되지 않는 발코니는 물을 사용하지 않는 공간으로 계획되었습니다.
- 아파트 입주자의 하자보수 관련 일체의 입주자 피해보상은 주택법시행령 등 관계 법규에 따라 적용됩니다.
- 개별인테리어 공사 등은 입주지정기간 개시일 이후, 계약자가 계약금, 중도금대출 상환 또는 계약금, 중도금대출 대환처리 및 잔금 완납 후 가능합니다.
- 본 아파트의 구조개선을 위한 설계변경이 추진될 수 있으며, 합리적인 시공을 위하여 관련법령 내 적합한 세대 내·외부 설계변경 등은 계약자의 동의 없이 진행될 수 있습니다.
- 「주택법 시행규칙」 제13조에 따라 경미한 사항의 변경은 계약자의 동의가 있는 것으로 간주하며 사업주체 및 시공사가 경미한 사항의 변경 인·허가를 진행할 수 있으며 이에 대한 이의를 제기할 수 없으며 추후 설계 변경된 부분을 하자로 주장할 수 없습니다.
- 최상층 세대의 계단의 위치, 단높이, 단넓이, 단폭은 다소 이동 및 변경이 가능하며, 상부층의 사용상 어려움이 있을 수 있습니다.
- 피난안전구역은 각 동 21층에 설치되며, 향후 상세설계에 따라 피난 안전구역의 그릴위치 및 층고, 단위세대 층고 등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 본 아파트의 명칭, 외부색채 및 마감재와 조경 계획, 외부상세계획 등은 인허가, 경관/색채심의 및 법규의 변경, 디자인의 개선 등으로 인하여 향후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아파트 지붕층 및 옥탑층에 의장용 구조물, 야간경관용 조명, 위성안테나, 피뢰침, 급배기 휀, 태양광 집광판, 소화수조 및 기타설비 등의 시설물이 설치될 수 있으며, 이로 인한 소음, 진동 등의 환경권과 조망 및 빛의 산란에 의한 사생활의 침해를 받을 수 있으며, 이와 관련된 민원에 대해서는 추후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시설물 위치 및 형태는 변경 될 수 있습니다.)
- 단지 내 엘리베이터와 인접된 세대에는 이로 인한 소음, 진동 등으로 인한 영향을 받을 수 있으며, 민원에 대해서는 추후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청약 및 계약 전 사업부지 현장을 방문하시어 주변 혐오시설 유무, 도로, 소음, 조망, 철도, 일조, 진입로 등 주위 환경을 확인하시기 바라며, 현장여건 미확인, 주변개발, 조망권, 각종 공사로 인한 소음 등으로 발생하는 민원에 대해서는 추후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당 단지는 「건축법」, 「주택법」 등의 관계법령을 준수하였으며, 단지 내·외 인접한 건물들과 건물 입면의 입면 장식, 각종 시설물, 조경 등으로 인하여 일조권 및 조망 등의 환경권 침해가 동·호수별 위치에 따라 상이하게 발생할 수 있으며, 이에 관하여 시행 및 시공사에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단지 내에는 자전거 보관소, 재활용집합창고, 기계전기실 급배기구, DRY AREA(채광, 환기, 방습 따위를 위하여 지하에서 지상으로 낸 통풍구), 실외기 및 환기시설(부대시설 및 근린생활시설용) 등이 설치될 예정으로 설치결과에 따라 일부 저층세대는 조망권 및 환경권이 침해될 수 있습니다.(시설물의 위치는 시공시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인허가 진행 및 본 공사 시 외관개선을 위하여 아파트 및 부대복리시설의 외관디자인(입면, 옥탑, 측벽, 몰딩, 창틀, 필로티, 공용홀, 동출입구, 캐노피, 지하출입구 등) 및 외부 시설물(문주, DA, 자전거보관소, 쓰레기집적소, 조경 등)의 형태, 마감재 및 색상은 심의 및 법규, 디자인 개선 등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상기 사항은 입주자의 개인 취향이나 민원에 의해 변경될 수 없습니다.
- 배치 상 기계/전기실, 발전기실, 급배기구 및 쓰레기집적소 인접실에는 냄새, 소음 및 해충 등에 의한 사생활권 등의 환경권이 침해될 수 있음을 확인하시고 계약을 체결하시기 바라며, 이로 인한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안내하는 세대내의 위치에 따라 계약자가 희망하는 용량(규격)의 가전제품(김치냉장고, 냉장고, 세탁기 등) 및 가구 등이 폭, 높이 등의 차이로 인하여 배치가 불가할 수 있으니 유의바라며, 청약신청 및 입주 시 이를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주차장 출입구와 인접한 저층 세대는 주차장을 이용하는 차량 소음 및 불빛에 의하여 생활에 불편함이 있을 수 있습니다.
- 지상, 지하주차장 이용시 주동주출입구에서 거리가 먼 곳에 차량이 주차될 수 있어 불편함이 있을 수 있습니다.
- 준공 전·후, 개인 또는 임의 단체를 구성하여 설계변경에 해당하는 내용(세대내·외 공용부분 시설물 등) 및 타사 또는 시공사 타 아파트를 비교하여 견본주택 및 사업계획승인도서에서 제시한 사항 외에 추가적인 마감사양, 부대편의시설, 조경의 설치 또는 교체를 요구할 수 없으며 만약 준공 전·후 최종 사업승인도면 이외의 사항을 요구할 경우에는 사업주체가 수락하고 이에 상응하는 비용을 부담해야 하고 또한 사업승인변경 등 관련법규에 대한 제반서류는 요청당사자가 징구하여 사업주체에게 제출하여야 합니다.

- 계약세대가 속한 층 및 향에 따라 일조권 및 조망권 등이 다를 수 있으며, 마감자재 내용은 형별, 타입별 등에 따라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 동조합으로 인한 요철 및 입면디자인으로 인한 장식으로 일조권 및 조망권 등이 일부 침해될 수 있습니다.
- 조감도, 세대 평면도, 면적, 치수 등 각종 내용이나 설계관련 도서의 내용 중 불합리한 설계나 표현의 오류, 오기 및 성능개선과 품질을 제고하기 위하여 본 공사 진행 중에 이루어지는 각종 설계의 경미한 변경에 대하여 사업주체 및 시공사의 결정에 따르며, 모든 권리를 사업주체에게 위탁하는데 동의하는 것으로 간주합니다.
- 마감재의 사양은 타입에 따라 차이가 있으니, 견본주택에서 분양상담을 통해 정확하게 인지하신 후 분양신청 하시기 바랍니다.
- TV공청안테나 및 위성수신 안테나는 방재실과 가깝고 전파수신이 양호한 지붕(옥상)에 설치됩니다.(공동주택 및 오피스텔 통합 1개소 설치)
- 건축물 내에 엘리베이터 홀, 지붕층 및 지하주차장에 이동통신 중계기 및 안테나가 설치될수 있으며, 이로 인한 소음, 진동 등의 환경권과 조망 및 빛의 산란에 의한 사생활의 침해를 받을 수 있으며, 이와 관련된 민원에 대해서는 추후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무인택배보관함은 지상 3층 주차장에 동별 1개소 설치될 예정으로 설치위치 및 사이즈 등은 본공사 시 현장여건에 맞도록 시공할 예정입니다.
- 단지 내 방범, 보안, 안전을 위해 설치된 CCTV로 인해 사생활권이 침해될 수 있으며, 향후 이에 따른 민원 및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각 주택형별 단위세대 구조에 따라 발코니 면적 및 확장면적에 차이가 있으므로 사전에 확인하여야 하며, 추후 이에 따른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각 세대의 엘리베이터 홀과 현관문 사이(전실)의 공간은 공용면적이므로 전용화하여 사용할 수 없습니다.
- 각종 인증과 관련하여 인증서 및 관련도면에 첨부된 자재 및 공법은 실 시공시 현장 여건 및 자재수급 여부에 따라 동등 수준의 자재 및 공법으로 대체될 수 있습니다.
- 「실내 공기질 관리법」 제9조에 따라 공동주택 실내 공기질 측정결과를 주민 입주 7일전부터 60일간 입주민의 확인이 용이한 곳에 공고할 예정입니다.
- 본 아파트의 입주 후 불법 구조 변경 시 관계법령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 일부세대는 공사 중에 고품질 시공을 위하여 샘플하우스로 활용될 수 있으며, 이에 대하여 해당 세대 계약자의 동의가 있는 것으로 간주합니다.
- 분양계약자는 입주시까지 거주지, 연락처 등의 변경이 있을 경우에는 지체 없이 그 변경사항을 증명하는 내용(주민등록등본 포함)을 사업주체 및 시공회사로 필히 서면 제출하시기 바라며, 미제출로 인하여 불이익을 받을 수 있으며, 이는 계약자에게 책임이 있습니다.
- 본 아파트는 실입주자를 위하여 건립되는 것이므로 투기 대상이 될 수 없으며, 신청서의 내용 변조 등의 행위로 주택공급 질서를 어지럽힐 시에는 관련법에 따라 처벌됩니다.
- 입주예정시기는 공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정확한 입주 시기는 추후 개별 통보합니다.
- 일부 동의 엘리베이터 홀은 직접 채광이 제한됨을 사전 인지하여야 하며 이로 인한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화재로 인한 재해보상과 보험가입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계약자는 본 주택을 인도 받음과 동시에 집약관리를 위해 동법에서 지정하는 보험회사와 화재보험계약을 계약자의 부담으로 체결하여야 하며, 화재보험에 가입하지 않음으로써 화재 기타 이와 유사한 재해 등으로 발생하는 모든 피해는 계약자가 부담합니다.
- 당첨자가 계약 체결시 견본주택, 평면도, 배치도 등 현황관계를 확인하고 계약 체결하여야 하며, 추후 이를 확인하지 않음으로써 발생되는 문제는 계약자에게 책임이 있습니다.
- 청약신청 및 계약장소에서 발생되는 각종 상행위(인테리어 시공업체, 부동산중개업자 등의 영업행위)는 사업주체 및 시공사와 무관한 사항입니다.
- 견본주택 내 건립세대, 주민공동시설, 카탈로그 및 각종 홍보물에 표현된 디스플레이용품 등은 분양가에 포함되지 않으며 단지 모형의 조경, 식재, 주변환경 및 부지 고저차 등은 실제 시공시 변경될 수 있습니다.
- 본 아파트의 공급가격은 각 세대의 주택형별, 층별 등의 다양한 조건들을 고려하여 책정한 금액으로 주택형별 공급금액의 상이로 인한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본 아파트의 서비스면적에 약간의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면적 증감 시 분양가에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 화재시 대피할 수 있는 탈출형 대피시설(아파트 전 평형)가 설치되므로, 그 사용 및 유지관리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사업승인시 해당관청에 제출한 총사업비 규모는 사업을 진행하기 전 사업주체가 예상하는 총사업비 규모를 예상하는 금액이며, 입주자 모집공고상의 금액은 사업주체가 사업승인권자로부터 "분양가 심의"를 받은 후 금액을 기준으로 산출한 것이므로 당초 사업비 규모와는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 공개공지는 공공에 개방되는 시설로서 입주자 임의로 훼스를 설치하여 외부인의 출입을 통제할 수 없으며, 인허가 협의에 따라 디자인, 범위 등이 변경 될 수 있습니다.
- 단지 내에 설치되는 미술작품의 위치 및 형상은 설치계획 심의를 득하여야 하는 사항으로 미술작품 설치로 인해 일부 호실의 조망권, 일조권, 환경권이 침해될 수 있으며 이는 입주자의 개인취향이나 민원에 의해 변경될 수 없습니다.
- 도로와 접한 단지내 보도는 입주민 및 인근 주민들이 공동으로 이용할 수 있는 공공보도이며, 입주 후 외부인의 보도이용에 대해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평면도와 마감자재 목록표가 입주자의 열람이 가능하도록 견본주택 내 비치되어 있습니다.
- 기타 자세한 내용은 입주자 모집공고 및 분양계약서, 계약시 유의사항 등을 필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단지 내·외부 사항

- 사업준공 이전 및 입주 후 인접지역의 개발로 인하여 소음, 분진, 생활여건시설미비, 공사차량통행 등에 따른 불편이 따를 수 있으며, 인접세대는 일조권, 조망권등의 환경권 침해가 발생할 수 있으니, 청약 및 계약 전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라며, 미확인으로 인한 책임은 계약자에게 있으므로 사업주체 및 시공사에게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단지주변 도로에 인접한 주동의 일부세대의 경우 소음 및 진동 등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계약전 반드시 확인하셔야 하며, 이로 인한 일체의 이의를 제기할 수 없으며, 대지주위의 도로에 대한 사항은 도시계획상 상위계획 및 최종측량 성과도에 따라 도로폭, 경사도, 레벨계획, 바닥마감 등이 다소 변경될 수 있습니다.
- 단지 경계부와 단지 주출입구에는 자동차 도로가 접하여 소음이 발생할 수 있으니 현장을 확인하신 후 계약을 체결하시기 바랍니다.
- 인접 지역 개발 등으로 개설되는 도로는 당 사업과는 무관하며, 조감도, 단지 모형도, 단지 배치도 등에 표현된 주변 도로는 입주자의 이해를 돕기 위한 자료로만 활용 바랍니다.
- 단지 북측 대구복합스포츠타운이 조성되어 있어 소음, 야간눈부심 등 환경권 침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 본 아파트 단지 남측, 동측 도로변에 인접한 도시계획시설(철도, 지하차도 등)로 인해 소음, 야간눈부심, 진동, 분진 등 환경권 침해를 받을 수 있으니 사전에 충분히 검토한 후에 청약 신청 및 계약 체결하시기 바라며, 이에 따른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향후 주변 및 교통여건 변화에 따라 입주 후 방음시설 등이 설치되어 질 수 있으며, 이는 사업주체와 무관한 사항임. 방음벽 설치로 이와 인접한 세대(103동, 104동)는 조망권이 침해당할 수 있으니, 사전에 충분한 확인 후에 청약신청 및 계약 체결하시기 바라며, 이에 따른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향후 발생 가능한 도시계획시설(철도 등)의 소음 및 진동 등 모든 민원에 대하여, 향후 한국철도시설공단, 관할 관청 등으로 어떠한 민원도 제기할 수 없으므로 사전에 충분히 검토한 후에 청약신청 및 계약 체결하시기 바랍니다.
- 어린이 놀이터와 인접한 일부세대는 소음발생 및 사생활권 침해가 발생될 수 있습니다.
- 단지 주변에 설치되는 보도는 향후 공공시설물로 유지·관리될 수 있도록 준공 전 기부채납하고, 토지사용권은 포기합니다.
- 경부선 철도와 인접함에 따라 철도 운행으로 인한 소음, 진동, 조망의 영향이 있을수 있음을 충분히 양지하고 계약하여야 하며 추후 민원 및 민형사상 소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단지내 주민공동시설은 분양시 제시한 기능으로 적용되며 향후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주민공동시설, 경관조명, 공용조명, 단지 홍보용 사인물, 조경 등 단지에 포함된 시설물로 인하여 발생되는 유지/보수/관리에 관한 일체의 비용은 입주자가 부담하여야 합니다.
- 단지 공용부위 포함된 시설물로 인하여 발생되는 유지, 보수, 관리 및 특정 서비스에 관한 일체의 비용 (공용 및 경관조명, 단지홍보사인물, 영구배수시스템 유지, 무인택배 유지,주차유도관제 유지,휴대폰 및 인터넷을 이용한 홈네트워크서비스 운영과 유지비용 등)은 입주자가 부담하여야 합니다.
- 아파트 옥탑 및 측벽에는 조형물 및 경관조명 등이 설치될 수 있어 최상층 세대의 조망 등에 영향을 미칠 수 있으며, 운영, 유지, 보수 등에 대한 일체의 비용은 입주자가 부담하여야 합니다.
- 외부의 마감재, 색채계획 및 경관조명 계획은 건축(경관)심의에 따라 계획되었으며, 추후 관계 인허가청의 협의과정에서 마감재, 색채 및 경관조명이 변경되어 질 수 있으니 변경시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중앙광장, 어린이 놀이터, 주민운동시설 설치로 인해 이와 인접한 일부세대는 소음발생 및 사생활권 침해가 발생될 수 있습니다.
- 주민공동시설, 근린생활시설 인접세대는 이용에 의한 소음발생 및 사생활권 침해가 발생될 수 있습니다.
- 재활용집합창고는 지상2층 주차장에 설치되며, 자전거보관소는 지상4층에 설치됩니다. 시설물의 위치 및 설치규모는 공사여건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 단지 내 차량정차공간은 소방차량 정차공간으로 형성되어 있습니다.
- 트렌치 시공시 시공부위의 주차구획은 트렌치폭을 포함하며, 트렌치가 배면, 측면에 시공될시에는 주차라인 마킹 시공 제외합니다.
- 본 아파트는 단지 배치상 동별, 향별, 층별 차이 및 세대 상호간의 향·층 및 조경(식재, 시설물)에 따라 일조권, 조망권, 사생활권이 침해당할 수 있으므로 계약자는 이 사실을 사전에 충분히 확인한 후 계약을 체결하여야 합니다.
- 옥상은 관련법규에 따른 인허가 및 건축(경관)심의 권고에 따라 본 공사시 그 형태는 다소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 지하주차장 주차대수는 대지형태, 주동배치에 따라 동별 차이가 발생될 수 있으며 주차대수는 전체세대에 대한 지상,지하에 배치된 주차대수의 평균대수이므로 각동과 인접된 주차장이 주차대수보다 부족하다하여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지상, 지하주차장 상부에는 각종 배선, 배관, 휀이 노출될 수 있습니다.
- 지하주차장 환기를 위한 환기구가 일부 동의 전면, 측면, 후면에 설치되어 있어 소음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단지배치의 특성상 단지내·외 도로(지하주차장 출입램프)등에 인접한 세대는 소음 및 자동차 전조등의 영향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차량출입구에는 지하주차장 출입 및 지상차량 출입램프가 설치되며, 또한 주차 차단기의 위치는 현장상황에 따라 다소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지상, 지하주차장은 일반주차, 장애인용주차, 확장형주차, 경형주차, 전기차충전면으로 구성되어있으며, 각 용도별주차 계획은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이삿짐 운반은 1층(일부동은 불가),2층 엘리베이터를 사용해야 하며, 단지배치특성상 이삿짐 사다리차 진입이 불가합니다.
- 옥상은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할 수 없으며, 출입이 금지되고, 출입으로 인하여 발생되는 안전사고에 대하여는 사업주체와 시공사에서 일체의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 옥상으로 직접 출입할 수 있는 출입문은 보안을 위하여 출입이 통제될 수 있습니다.
- 출입구 경비실 위치는 교통통제의 편리성 및 효율성을 위하여 이동하여 설치할 수 있습니다.
- 단지 내·외부 조경 및 토목공사는 향후 보행통로, 가로수, 도로, 시설물, 포장 등의 설계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저층부세대는 단지 내 주차장 및 상가를 이용하는 보행자에 의해 생활소음 및 사생활권 등의 침해가 될 수 있습니다.
- 주민공동시설이 인접한 동은 시설을 이용하는 이용객에 의해 소음 등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근린생활시설을 이용하는 이용객의 소음에 의한 사생활의 침해를 받을 수 있으며 조망권 및 프라이버시, 사생활권 등의 침해가 있을 수 있으니 계약 전에 충분히 이를 숙지하고 확인하여 계약을 하여야 합니다.
- 주동 및 부대복리시설의 색채 및 외부마감재, 옥외시설물은 향후 상위 지침변경 및 인허가 협의(경미한 변경신고)과정 중 입주자 동의 없이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 사항에 대하여 이의를 사업주체에 제기할 수 없습니다.
- 대지주위의 도시계획도로에 대한 사항은 최종 측량 성과도에 따라 결정되므로 도로 폭 등의 사항이 다소 변경되어질 수 있습니다.
- 단지 경계부는 도로와의 높이차이가 있을 수 있으며 현장여건에 따라 램프나 계단, 옹벽, 조경석쌓기, 자연사면 등이 설치될 수 있으며, 이용자로 하여금 프라이버시, 소음 등의 침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 관리사무소, 경로당, 어린이집, 도서관 및 주민공동시설 일체의 운영 및 유지관리는 입주민이 자체적으로 운영하여야 합니다.
- 관리사무소는 오피스텔 및 근린생활시설과 통합하여 관리 및 운영할 수 있습니다.
- 관리사무소, 경로당, 어린이집의 이동식 가구 및 가전, 소모 집기 및 비품은 제공되지 않습니다.
- 주민운동공간 및 단지출입구, 주차장출입구, 경비실, 관리사무소, 어린이 놀이터, 어린이집, 산책로 등 주민공동시설이 위치하는 곳의 저층 일부세대에는 소음 및 진동의 발생에 따른 환경권 침해를 받을 수 있습니다.
- 각 동 출입구에서 재활용집합창고까지의 거리는 동별로 상이합니다.
- 지상2층에 쓰레기집적소가 배치되어 쓰레기 차량 출입 및 소음, 냄새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 단지 내 설치된 놀이터, 운동시설, 경로당, 어린이집은 아파트 법적설치 시설이나 공동사용 여부에 따라 사용검사 완료 후 입주자회의 및 관리조약에 의해 공동 부담하며, 이와 관련하여 이의제기 할 수 없습니다.
- 각 주동은 최상층에 설치된 옥상 구조물에 따라 시야 및 조망에 제약사항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옥상 구조물의 공법, 크기, 위치, 모양, 색상, 마감재 등은 본 공사시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 사항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단지 내 지상, 지하주차장은 주차장법 시행규칙 6조 5항 및 6항에 의거하여 주차 차로 및 출입구의 높이는 주차바닥면으로부터 최소 2.3m 이상, 주차에 사용되는 부분의 높이는 주차바닥면으로부터 최소 2.1m이상으로 설치하였으며, 이와 관련하여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재활용집합창고 (2층) 및 무인택배함 (3층)은 쓰레기집하차량 및 택배차량이 접근할 수 있도록 천장고 2.7m 이상 확보하였습니다.

- 단지 내 오피스텔, 근린생활시설은 별도의 분양시설로서 향후 대지지분에 따른 구획 및 분할을 요청할 수 없으며(아파트와 경계가 분리되어 있지 아니함), 관리주체 및 주차시설 등에 대한 어떠한 권리주장도 주장할 수 없습니다.
- 단지내 부대시설 및 근린생활시설 상부에는 설비시설이 설치될 수 있으며, 부대시설 및 근린생활시설 인접세대에는 일조권, 조망권, 환경권, 소음피해, 사생활권 침해등이 발생 할 수 있습니다.
- 단지내 부대시설 및 근린생활시설, 설비시설 등의 위치 및 면적 등 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 부대시설 및 근린생활시설의 실외기가 옥외에 노출될 수 있으며, 소음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단지외부의 도시계획도로의 레벨에 따라 도로 경사도 및 도로접속이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지반레벨(계획고)이 현장여건에 맞게 설계 변경될 수 있음.
- 단지 외부 시설 및 도로, 보도는 소비자의 이해를 돕기 위해 개략적으로 표현한 것으로 최종 인허가 및 실시계획에 따라 최종 설치될 예정임.
- 단지 내 조경, 동 현관, 지하 출입구 등 공용부분은 디자인 의도에 따라 형태, 재질, 색채 등이 각기 다르며 상기 사항은 입주자의 개인 취향이나 민원에 의한 변경 대상이 될 수 없음.
- 단지 내외부 특화디자인은 분양 이후 KCC건설 내부 디자인 기준으로 변경되어 최종 시공될 예정입니다.
- 기인가도서 상의 내용과 견본주택에 전시된 사항에 일부 상이한 부분이 있을 수 있고, 인허가 진행과정 중에 일부 내용이 변경될 수 있으며, 분양계약 체결시 또는 이후 해당 변경에 대한 동의서를 요청할 경우 이를 수락하여야 하며, 자세한 내용은 상담을 통해 확인하시기 바람.
- 타사 또는 당사 타 현장 분양아파트의 마감사양, 설치되는 부대시설 및 조경과 본 아파트를 비교하여 견본주택 및 사업계획승인 도서에서 제시한 사항 외에 추가적인 마감사양 및 부대편의시설, 조경의 설치 또는 교체를 요구할 수 없으므로 타 분양 아파트와 충분히 비교 검토한 후에 계약체결하시기 바람.
- 공공의 목적으로 통행되는 필로티 상부세대는 소음피해, 사생활피해가 있을 수 있음.
- 각종홍보자료에 표현된 어린이 물놀이터는 소비자의 이해를 돕기위해 개략적으로 표현하였으며, 형태, 크기, 규격 포장범위 및 패턴 등은 본공사시 현장여건에 맞게 변경될 수 있음.
- 근린생활시설 및 주민공동시설의 에어콘 실외기 및 주방배기구 설치로 인접한 저층부 세대에 소음, 진동, 냄새 등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근린생활시설 환기를 위한 배기덕트시설이 일부 동에 설치되며, 인접세대에는 냄새 등 환경권이 일부 침해될 수 있습니다.
- 지상 4층 옥외공간까지 진입할 수 있는 비상차량용 램프가 설치될 예정이며, 평소 사용에 대한 사항은 관리사무소 및 입주자대표회의에서 결정하며, 이는 사업주체와 무관합니다.
- 4층 비상차량 램프의 지붕은 별도로 설치되지 않으며, 사업주체 및 시공사에 설치요청을 할 수 없습니다.
- 계단실 및 엘리베이터홀에 설치되는 창의 개폐여부 및 방식은 추후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주차장 진입을 위한 출입구 주변 마감재는 추후 변경될 수 있습니다.
- 단지 내 부대시설 및 근린생활시설, 설비관련시설 등의 위치 및 면적 등이 일부 변경될 수 있으며, 이에 따른 계약면적이 다소 변동될 수 있습니다.
- 당 단지는 중심상업지역에 건립되는 주거복합 건축물로 건축법상 일조권 적용을 받지 않으므로 세대별, 위치별로 일조권 및 조망권에 제한이 있을수 있습니다.
- 당 단지는 중심상업지역에 건립되는 주거복합 건축물로 주택법상 소음방지 및 보호 적용을 받지 않으므로 외부소음에 따른 민원 제기 및 방지 대책을 요구할 수 없습니다.
- 4층 단지내 조경공간(어린이 놀이터 포함)은 아파트 입주자용 공간이나, 관리규약 및 관리사무소, 입주자대표회의에서 결정하여 오피스텔에서 사용할 수 있으며 이는 사업주체와 무관한 사항입니다.
- 주동 옥탑에 신재생에너지 설비인 태양광 집광판이 설치될 예정으로 이로인한 조망권 간섭, 소음 발생 등의 프라이버시 침해가 있을 수 있습니다.
- 지상 3층에 설치되는 인라인스케이트트렉 및 어린이공원, 펫그라운드, 러닝트랙 등은 옥외공간으로 외부에 노출되어 있는 형태로 우수 및 눈의 유입이 될 수 있으며, 별도의 유리창 설치 요구 할 수 없습니다.
- 캠핑 워터파크 (어린이 물놀이터)운영에 관한사항과 관리비, 전기세 납부 등은 관리사무소 및 입주자대표회의에 결정하는 사항으로 사업주체와 무관한 사항입니다.

■ 주동 및 부대시설

- 단위세대 창, 공용부 창의 열림 방향 및 위치, 공용부 창호 프레임의 사양, 색상 등은 공사 중 변경될 수 있음.
- 주동의 디자인 및 줄눈의 간격은 디자인 및 시공여건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 주동 및 부대시설의 장애자램프 위치/길이, 점자 블록 위치/개소 등 장애인 관련 시설은 지자체 관련 부서 협의 사항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 코아 내 우편물 보관함의 설치 위치 및 개소는 실시공 시 변경될 수 있음.
- 아파트 옥상, 동 출입구, 부대시설, 조경 구간 등 단지 내 설치되는 난간의 형태, 높이, 재질, 색상 등은 공사 중 변경될 수 있으며 일부 골조난간으로 변경될 수 있음.
- 아파트 로비, 필로티, 평.입면 계획(재료,디자인 등) 등은 상세 계획에 따라 공사 중 설계변경 될 수 있음.
- 아파트 코아 평면 및 창호 형태와 설치계획은 공사 중 설계변경될 수 있음.
- 옥상 난간 턱 높이조정, 난간형태 및 재질은 변경 될 수 있으며, 단위세대 창호계획 및 공용부 창호 변경 등에 따라 입면 등이 다소 변경 될 수 있음.
- 주동 1층 엘리베이터홀 방풍실 출입문은 마감을 고려하여 문 폭이 변경 될 수 있음.
- 주동 필로티층 상부에는 주택관련 법규에 따라 주동 출입동선 및 기타 보행자안전에 필요한 부위에는 캐노피가 설치될 수 있으며, 캐노피 주변 세대에는 우수에 의한 소음이 발생할수 있음.
- 주동 내 발코니 선홈통에서 우기시 빗물 소음이 발생할 수 있으며, 이에 따른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
- 옥탑 및 옥상조형물 형태 및 마감재는 상세 계획에 따라 공사중 설계변경 될 수 있음.
- 외부 입면 형태(옥상조형물, 측벽문양, 저층부 석재, 석재뿜칠, 동 출입구) 및 색채는 구조내력확보, 미관개선 등의 이유로 변경될 수 있음.
- 입면 차별화 및 관계기관의 심의, 현장여건에 따라 옥탑, 지붕, 외벽, 동 출입구, 경비실, 부대복리시설 입면, 아파트 외벽 문양 등의 디자인 및 색채 등이 변경될 수 있으며, 기타 관계법령의 범위에서 정한 경미한 설계변경으로 인하여 변경될 수 있음.(추후 변경 시 이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 할 수 없음)
- 가스배관 설치 계획에 따라 가스배관이 외부에 설치됨.
- TV공청안테나 및 위성수신 안테나는 방재실과 가깝고 전파수신이 양호한 지붕(옥상)에 설치됨.
- 건축물 내에 무선통신 안테나 및 이동통신 기간사업자 중계기가 설치될 수 있으며, 추후 설치에 대한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

- 대지경계선에 인접한 주동에는 단지 내외간의 레벨차에 의하여 일부 세대의 전/후/측면에 경사면 처리 공법에 따라 옹벽, 석축, 자연경사 처리구간이 설치될 수 있음.
- 지하층 내 유지·보수 점검을 위한 PIT 내부의 경우 천장 및 바닥, 벽체부의 마감은 미 시공됨.
- 아파트 옥탑층에 의장용 구조물, 항공장애등, 위성안테나, 피뢰침 등의 시설물이 설치될 수 있으며, 이로 인한 조망 및 빛의 산란에 의한 사생활의 침해를 받을 수 있음.
- 각동의 동 출입구는 케이씨씨건설 스위첸 특화 디자인 매뉴얼 기준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최종 시공될 예정이며, 이로 인한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
- 아파트 외관 구성상 일부 세대의 전면 발코니 등에 장식물이 부착될 수 있음.
- 부대복리 시설의 상품개선 및 기능, 구조, 성능 등을 위하여 평, 입, 단면, 창호재질 및 색상, 창호사양, 유리사양, 위치 및 개소 등이 변경될 수 있음.
- 각종 홍보물(분양 카달로그, 전단, 인터넷 홈페이지 등) 및 견본주택에 설치된 홍보물 상의 단지 내 커뮤니티시설의 내부구조 및 시설물에 대한 인테리어 계획은 소비자의 이해를 돕기 위한 것으로 실제와 차이가 있을 수 있음.
- 부대복리시설 외관의 형태, 색상, 패턴, 마감재는 디자인 개선, 평, 입면 변경, 시공상의 이유로 변경될 수 있음.
- 분양시 홍보물, 모형, 이미지 등에 제시된 마감재 및 제공집기는 실제 시공시 재질, 색상, 디자인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 부대복리시설, 커뮤니티시설의 구성 및 건축이용계획은 인/허가 과정이나 본 공사시 현장여건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 부대복리시설, 커뮤니티관련 시설은 입주시 변경될 수 있습니다.
- 부대복리시설은 입주민들이 자체적으로 유지, 관리 및 운영을 하여야 합니다.
- 부대복리시설 : 어린이집(키즈클럽), 경로당(실버클럽), 독서실, 사우나, 골프클럽, 휘트니스클럽, 라이브러리, 맘스카페 및 맘스스테이션,
- 어린이놀이터(캠핑워터파크) 1개소, 유아놀이터 1개소가 설치되며, 야외운동기구(4층 옥상정원) 1개소 설치됩니다.
- 분양안내책자(카탈로그 등)에 표현된 커뮤니티시설(주민운동시설 등) 내부에 표현된 시설물, 냉난방기기, 집기류(기기 및 비품 등) 등은 입주자의 이해를 돕기 위한 것으로 별도로 제공되지 않으며, 주민부대복리시설에는 법적으로 설치가 의무화된 시설 및 품목만 시공하므로 기타 시설, 기기 및 비품은 입주 후 입주민들이 자체적으로 구입하여 설치 및 운영, 유지, 보수, 관리하여야 합니다.(실제 시공될 시스템 등 설치품목은 본 입주자모집공고의 내용과 비교하여 다소 변경될 수 있으니, 계약 전 꼭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주민공동시설은 입주민이 다목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공간만을 제공하며, 지층의 특성상 전자기기, 목재류 등은 계절적 요인으로 인한 습기에 영향을 받을 수 있으니 가급적 설치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주민공동시설은 아파트와 오피스텔 동하부 위치별로 구분이 되어 있으며, 입주후 각 입주자대표회의간의 협의를 통하여 공동이용 할 수 있습니다.
- 단지 내 주차장은 동선, 기능, 성능 개선을 위하여 설계변경 될 수 있습니다.
- 아파트 주차장은 공동주택과 근린생활시설이 별도로 구분되어 있지 않으므로, 입주자대표회의 구성 후 관련규약으로 결정하여야 합니다.
- 주차장의 동별 주차 배분이 정확히 일치하지 않을 수 있으며 동별 주차영역을 한정 할 수 없습니다.
- 주차장 천장의 일부 구간은 열 관류율 기준에 의거, 단열 및 마감재가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주차장의 내부 색채디자인은 케이씨씨건설 스위첸 특화 디자인 매뉴얼 기준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최종 시공될 예정이며, 이로 인한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주차장 출입구는 아파트와 오피스텔/근린생활시설이 분리되어 설치될 예정입니다.
- 골프클럽 타석에 설치되는 스윙분석 시스템에 대한 특정 제품으로 요구를 할 수 없습니다.
- 단지내 남,여 사우나가 설치될 예정이며, 사우나 구성에 대한 사항을 입주전 사업주체에 변경 요청을 할 수 없고 입주 후 운영은 입주자대표회의 및 관리사무소에서 관리규약에 의거하여 진행하는 사항입니다.
- 옥탑디자인은 공법, 현장여건, 마감재질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최종 확정되어 시공될 예정이며, 이로 인한 어떠한 민원을 제기할 수 없습니다.
- 입면 디자인은 KCC건설 디자인 매뉴얼 2.0에 맞추어 최종 시공될 예정으로 건축심의 등 인허가 내용과 일부 다를 수 있습니다.

■ 단위세대 사항

- 분양시 홍보물에 사용된 평면도는 입주자의 이해를 돕기 위하여 제작된 것으로 실제 시공시 현장여건에 따라 다소 상이할 수 있습니다.
- 각 면적별 분양되는 단위세대의 마감재의 색상 및 제품은 차이가 있으므로 필히 견본주택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선홈통은 발코니, 실외기실 또는 PD내에 설치되며, 위치 및 개수는 세대별로 상이하고 추가 설치 될 수 있습니다.
- 전기(스위치, 콘센트, 월패드 등) 설비마감재 설치 위치는 현장 여건에 따라 변경 될 수 있습니다.
- 모든 배선기구, 조명기구의 위치 및 수량, 재질, 문양(디자인) 등은 현장 여건 상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수전이 설치되지 않는 발코니는 배수설비가 설치되지 않음을 기본으로 하며, 수전이 설치되지 않은 발코니에도 배수설비가 설치될 수 있습니다.(이는 시공상 하자가 아니므로 하자를 주장할 수 없습니다.)
- 발코니 부위에 설치되는 각종 설비배관은 노출배관(천장, 벽)으로 인하여 미관을 저해할 수 있으며, 소음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본공사시 천장틀의 종류 및 규격은 천장구성 및 마감재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주방 상부장 뒷면으로 가스배관이 설치될 예정이므로 가스배관이 설치되는 상부장은 깊이가 다를 수 있습니다.
- 주방가구 및 고정형 가구 하부는 난방코일의 간격이 조정될 수 있습니다.
- 세대 내부 실시공 시 「건축법 시행규칙」[별표5] 건축허용오차(제20조 관련)내의 시공 오차가 발생할 수 있고 이로 인해 견본주택과 다소 다르게 시공될 수 있으며, 이는 시공상 하자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이점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 세대별 조건에 따라 단열재의 위치, 벽체의 두께, 마감 등이 상이할 수 있으며, 확장부위에는 결로현상이 발생할 수 있고 직접 외기에 면해 상대적인 추위를 느낄 수 있으나 결로현상은 입주자의 관리상의 문제이지 사업주체 및 시공사의 시공 상의 문제가 아니므로 결로 및 이로 인한 문제에 대하여 사업주체 및 시공사에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실외기실 갤러리(루버) 창 프레임 및 갤러리 등은 금속성 재질로서 외기에 직접 면하므로 계절에 따라 결로가 발생할 수 있으나 이는 하자가 아니며 입주자가 관리하여야 할 사항입니다.
- 옵션선택시 실외기는 발코니 내 실외기실에 설치되며 단위세대 타입별로 실외기실 위치 및 크기가 상이하며 소음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실외기실 갤러리(루버) 창 프레임 및 갤러리의 색상은 외부 색채 디자인에 따라 세대별로 상이할 수 있습니다.

- 계약자는 입주 후 세대 내 폴리싱타일 표면의 물기를 즉시 제거해야 하며, 물기로 인하여 미끄러울 수 있으므로 사용자는 각별히 주의해야 합니다.
- 공용부위의 타일 표면에 물기 발생시 미끄러울 수 있으므로 사용자는 각별히 주의해야 합니다.
- 입주 후 세대 내 환기가 부족할 경우 내/외부의 온도차이 및 습기로 인하여 결로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입주자는 결로에 의한 곰팡이 발생 등 2차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주기적으로 환기를 시키셔야 하며 특히 입주 후 첫해 겨울은 환기에 각별히 유의하여야 합니다. 특히 욕실 샤워기 및 다량의 온수 사용 시 욕실 환기를 하셔야 하며, 욕실 환기 미비, 거실, 주방 등에 과도한 가습기 사용이나 음식물 조리 및 다량의 화분(실내 또는 발코니)은 결로의 직접적인 원인이 되므로 가급적 사용을 자제하시기 바라며 환기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단열공사 외 환기불량, 사용상 부주의 등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결로에 대해서 사업주체의 책임이 없습니다.
- 계약자는 세대 각 실 및 발코니 외부 창호에 무리하게 힘을 가하거나 전입, 전출, 이사 시 이삿짐 장비가 직접적으로 접촉하지 않도록 하여야하고, 이삿짐 등은 해당동 엘리베이터를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 외부 창호는 층수, 향에 의한 바람의 영향차이로 인해 유리의 강도 및 두께가 달라질 수 있으며, 바람 등에 대한 안전성 확보를 위해 견본주택에 제시된 형태와 다르게 시공될 수 있습니다.
- 세대 내 창호 및 문의 형태와 위치는 견본주택 기준으로 시공되며 경우에 따라 설계변경 등의 사유로 변경될 수 있으니 이 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견본주택은 기준층 세대로 꾸며져 있으며 층별, 라인별로 천장고 및 출입구가 상이할 수 있으므로 견본주택을 방문하여 해당 평면도를 확인 후 청약신청 및 계약체결하시기 바랍니다.
- 저층세대의 외벽 마감재 설치에 따라 외부 창호는 형태 및 크기 등 이 변경될 수 있으며, 벽체 두께가 변경될 수 있습니다.
- 공사 진행 중 경미한 사항에 대하여는 적법한 절차에 따라 설계변경이 이루어질 수 있고, 추후 본 주택의 전유부분 및 공용부분에 대한 하자의 판단 기준은 사용승인도면에 따르며 계약자는 이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창호 및 문의 열림 방향은 일부 변경될 수 있습니다.
- 발코니에 설치되는 창호는 기능 및 미관개선을 위하여 형태 및 재질·사양이 실시공시 인허가 협의완료 후 변경될 수 있습니다.
- 발코니 외벽은 발코니 확장 등으로 단열재 추가 설치 시 구조체 및 가구 등이 다소 변경될 수 있습니다.
- 단지 내 지하시설물 환기 및 채광을 위한 시설물(환기창, D/A)이 노출되어 있습니다.
- 본 공사 시공 시 자재특성, 품질, 미관 향상, 마감시공 방식 차이에 따라 견본주택 시공방식과 다소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 욕실은 바닥난방이 설치됩니다.(양변기/세면기 하부, 샤워부스 내부 및 욕조 하부 제외)
- 아파트 외부 창호는 내풍압 구조 검토에 따라 세대별, 층수 별로 창호 사양(창틀, 소프트웨어, 유리등)이 변경 및 축소될 수 있으며, 세대에 설치되는 창호의 개폐방향, 날개 벽체 및 분할시공은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실외기실에 보일러가 설치되며, 실제 시공위치는 변경될 수 있습니다.
- 가스배관 및 계량기가 발코니에 설치되며, 위치는 타입별 상이할 수 있습니다.
- 견본주택은 발코니 확장형 세대를 전시하였으며, 추가선택옵션에 따라 상이한 내부 인테리어가 적용될 수 있으니, 이를 충분히 인지하고 계약하여야 합니다.
- 견본주택에 설치된 보조조명, 커튼, 소파, 거실장, 침대, 책상 등의 이동식가구, 디스플레이 가전, 소품 등은 세대연출을 위한 것으로 본공사 제외 품목입니다.
- 견본주택에 시공된 제품은 자재의 품절, 품귀, 제조회사의 도산, 특허권 등 부득이한 경우 및 신제품 출시, 성능개선 등의 이유로, 본공사 및 하자보수 시 동등수준의 다른 제품으로 변경 시공될 수 있으며, 이에 대한 "계약자"의 개별적인 동의를 요하지 않습니다.
- 견본주택에 설치된 스프링클러 헤드, 감지기, 유도등의 개수 및 위치는 견본주택용 소방시설로 본 시공 시 각 단위세대 타입별 관계법규에 의거하여 그 설치 위치가 결정됩니다.
- 마감재의 사양은 주택형 등에 따라 차이가 있으니, 견본주택에서 차이점을 확인 후 계약하여야 합니다.
- 타일 및 천연가공석의 줄눈나누기, 마감 등을 고려하여 월패드, 통합단자함, 스위치, 콘센트, 보일러 온도조절기 등의 위치가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창호류, 가구류, 바닥재, 타일류, 천연가공석 등 마감재의 색상, 디자인, 재질단차, 코너, 마감재접합부, 패턴 등은 실시공시 견본주택와 다소 상이할 수 있습니다.
- 단위세대의 마감재 종류 및 두께에 따라 내부공간이 협소하거나 안목치수가 도면 및 견본주택과 상이할 수 있으며, 이로 인해 설치되는 가구의 폭이 줄어들 수 있습니다.
- 빌트인 주방가전 미선택시 기본형 수납공간 등으로 시공되며, 비치하는 가전의 크기에 따라 주방쪽으로 가전 일부가 돌출될 수 있습니다.
- 인테리어 마감재의 다양한 두께로 인하여 안목치수가 도면과 상이할 수 있으며 이로 인해 설치되는 가구의 사이즈가 줄어들 수 있습니다.
- 가전 기기 등 설치 공간의 크기는 견본주택과 같으며 그 보다 큰 가전 기기는 해당 공간에 설치될 수 없습니다.
- 각 평면 타입에 따라 적용 품목(가구, 가전, 등기구, 스위치 등)의 디자인, 사양, 위치, 설치방향, 수량 등은 상이 할 수 있습니다.
- 침실, 욕실 등의 벽체 두께 변경에 따라 문틀의 폭(벽체 두께면)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 공동주택 특성상 세대 내 가구배치, 평면배치, 기타 품목 시공위치는 입주자 개인별 변경 요청을 할 수 없으며, 변경 필요 시 준공 및 시설물 인수인계 후 입주자 개인이 직접 시행하여야 합니다.
- 싱크대 내부 등 주방 가구 디자인은 온수분배기 설치등의 이유로 변경될 수 있으며, 수납이 일부 제한될 수 있습니다.
- 유상옵션품목(가구, 가전 등)은 계약 시 반드시 확인하여야 합니다.
- 각 실별 발코니 옵션형 평면 선택 유무에 따라 조명기구 및 배선기구의 디자인, 사양, 위치, 설치방향 등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 본 공사시 코킹 시공 부위는 달라질 수 있으며, 본 공사시 욕실 천정 나누기는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주방장, 침실 반침장, 안방 붙박이장, 신발장, 욕실장,거울 등 설치되는 가구의 비노출면(후면, 하부, 천장)에는 마루, 타일, 도배, 천연가공석 등 마감재가 시공되지 않습니다.
- 욕실 거울의 경우 보호페인트가 입혀졌더라도, 자재특성(은 성분)상 산성, 알카리성 세제와 쉽게 화학반응하며, 습기에 의해 변색이 발생하는 경우가 있는바 욕실 환기 및 유지관리에 유의하여야 하며, 입주 이후에 발생하는 유지 보수 및 관리상의 문제로 인한 하자에 대하여는 원칙적으로 수분양자(입주자) 또는 관리주체가 책임을 집니다.
- 견본주택에 연출되어 있는 스포트라이트, 스탠드 조명 및 팬던트는 전시용으로 실시공시 설치되지 않습니다.

- 욕실 벽, 바닥 타일의 줄눈 위치가 일치하지 않을 수 있으며, 줄눈 및 타일 사이즈가 일정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 각 주택형별 유, 무상옵션 항목 및 확장공사 포함 항목은 평면 여건에 따라 상이할 수 있습니다.
- 세대 내부 욕실 단차는 바닥구배 시공으로 인하여 다소 차이가 있을 수 있으며, 욕실의 단차는 침실내부로 물넘김을 방지하기 위하여 설계됩니다.
- 단위세대의 내부 단차부위(발코니, 욕실, 현관)는 변경될 수 있으며, 출입문 개폐 시 신발 걸림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주방 상부장 뒷면으로 가스배관이 설치될 경우 가스배관이 설치되는 상부장은 깊이가 다를 수 있고, 일부 배관이 노출될 수 있으며, 이로 인한 일부 가구 및 선반의 구조가 견본주택 및 도면과 상이할 수 있습니다.
- 설비 배관상의 이유로 커튼박스 크기는 타입별 다소 상이할 수 있습니다.
- 본 공사 커튼박스 시공 시 간섭부분의 가구사이즈가 일부 줄어들 수 있습니다.
- 각 선택형 평면(유,무상)에 따라 가구, 도어 구성 및 크기 등이 상이하오니, 계약 전 반드시 확인하여야 합니다.
- 본 공사시 타일, 천연석, 이태리세라믹패널(거실 벽, 주방 벽, 욕실 벽/바닥, 현관/발코니 바닥 등)의 패턴 및 결(베인)은 규칙적이지 않고 랜덤하게 시공되며 색상, 줄눈 나누기 및 간격이 다를 수 있습니다.
- 현관 중문은 단열, 방풍을 목적으로 하지 않으며, 과도한 세기로 중문 개폐 시 파손의 위험이 있습니다.
- 본 공사시 중문 등 유리 도어(슬라이딩, 여닫이, 픽스는 유리 벽체 및 도어, 프레임의 사양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 본 공사시 현관 중문에는 모헤어 또는 가스켓이 설치되며 틈새를 통한 누기가 있을 수 있습니다.
- 우물천장과 걸레받이는 본 시공시 하자 발생을 예방하기 위해 PVC위 래핑 또는 도장으로 시공될 수 있습니다.(견본주택의 시공자재와는 상이할 수 있습니다.)
- 각 세대 현관문 및 실외기실도어, 그릴의 도장, 색상 및 디자인 등은 변경될 수 있습니다.

- 견본주택 및 카달로그에 표기된 유/무상 여부의 기준은 기본확장형 비용을 기준으로 작성됩니다.
- 세대 내 우물천장은 천장내 설비배관 등에 의하여 천장고 및 길이, 크기, 높이 등이 변경될 수 있으며 커튼박스 길이가 변경될 수 있습니다.
- 본 공사시 시스템가구 적용 부위 및 내부 구성은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세대 환기를 위한 전열교환기장비가 발코니2(세탁실)에 설치되며 가동시 작동소음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환기장비에는 외부 미세먼지를 차단하는 HEPA필터가 설치되며, 일부 타입의 경우 천정에 환기덕트 및 배관커버가 설치될 수 있습니다.
- 에어컨 냉매 매립배관은 거실_스탠드형, 안방_벽걸이형 총 2개소가 기본제공되며, 시스템에어컨 유상옵션 선택시 제공되지 않습니다.
- 화재시 대피할 수 있는 옥외탈출형 대피시설(아파트 전 평형)이 설치되므로, 그 사용 및 유지관리에 유의가 필요하며, 본공사시 사양 및 형태 디자인 등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실외기실 내부에는 선홈통 및 배수구가 설치될 수 있습니다.
- 욕실 내 설치되는 배수구 및 환기팬, 천장 점검구의 위치 및 사양, 크기는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주방 발코니의 가스배관이 설치되는 위치에 따라서 가스 계량기 위치가 변경될 수 있으며, 가스배관이 주방 벽면에 노출될 수 있음. 또한 가스배관으로 인해 주방 상부장의 깊이가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실외기실 내 배수구의 설치여부, 위치, 사양은 변경 될 수 있습니다.
- 주방 렌지후드 및 주방 상부장, 아일랜드 식탁의 쿡탑에는 소방법규에 따라 자동식소화기가 설치되며, 상부 덕트 및 배관의 크기는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주방 직배기시스템 적용으로 인해 인접세대에서 창문 개방 시 냄새가 유입될 수 있음
- 식탁용 조명기구의 위치는 보편적으로 식탁이 놓일 것으로 예상되는 곳에 정하였으며, 위치변경은 불가합니다.
- 단위세대 내 전기분전반 및 통신단자함은 신발장, 옷장 등의 은폐된 장소가 아닌 침실벽 등 눈으로 바로 확인할 수 있는 장소에 설치되며 분전 반의 형태, 규격, 사양, 디자인 등은 실시공 시 현장여건에 맞게 시공될 예정으로 이에 따른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세대내 월패드등의 전화 수신기능은 국선전화에 한하여 가능합니다.
- 인접 세대 및 동일 세대 내부 각 부위별 확장 여부에 따라 추가단열공사로 인해 발코니 및 침실, 기타 일부 구간의 벽체 일부가 돌출될 수 있습니다.
- 골조와 이질벽체(경량벽체 또는 조적벽 등)의 접합부 처리와 단열재 설치 및 결로방지 단열재 설치 등을 위하여 골조의 일부가 이격되어 시공될 수 있습니다.
- 세대 내부 가구 설치 부위의 비 노출면은 별도 마감재가 시공되지 않습니다.
 - 욕실장 및 욕실거울 후면에는 타일이 시공되지 않습니다.
 - 고정형 가구 하부 및 후면, 천장에는 별도 마감재가 시공되지 않습니다.
 - 주방가구와 접하는 측면, 후면에는 타일이 시공되지 않습니다.
 - 주방가구 하부 및 천장에는 별도 마감재가 시공되지 않습니다.
 - 침실 붙박이장 후면, 바닥 천장에는 별도 마감재가 시공되지 않습니다.
- 단위세대 내부에 시공되는 도배지의 색상 및 타입에 따라 도배 조인트면이 보일 수 있습니다.
- 발코니 확장 시 확장발코니의 외부 샤시는 창호도를 기준으로 설치가 되나, 사업주체의 결정에 따라 창호종류 및 창호사양(유리종류, 하드웨어, 창틀, 크기 등)은 변경될 수 있습니다.
- 발코니부위에 설치되는 각종설비 배관(선홈통 등)은 노출배관(천정,벽)으로 미관에 지장을 초래할 수 있으며, 소음이 발생 할 수 있습니다.
- 발코니에 설치되는 수전(세탁기, 손빨래, 청소용 등)의 위치 및 개소는 변경될 수 있습니다.
- 발코니 확장형 선택세대에서 외부 창호가 설치되는 비확장 발코니의 경우 외부측 벽체 및 천장에 결로방지를 위해 추가 단열재 및 마감재가 시공되어질 수 있으며, 이 경우 견본주택에 비해 발코니, 다용도실 면적 및 높이가 축소될 수 있습니다.
- 발코니 확장시 비확장 발코니의 외부측 벽체 및 천정에 결로방지를 위해 추가 단열재 및 마감재가 시공되어 질 수 있으며, 이 경우 견본주택에 비해 면적이 축소되어 질 수 있습니다.

- 실외기실 및 기타 발코니의 외부창호 및 난간턱 높이와 수벽의 높이는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실외기실 내부에는 선홈통 및 배수구가 없으나, 설치될 수 있습니다.
- 발코니 벽체의 경우 골조와 이질벽체(경량벽체 또는 조적벽 등)의 조인트 크랙을 방지하기 위하여 음각줄눈 시공 후 실란트 마감처리를 할 수 있습니다.
- 세대 내 및 공용부 창호의 크기, 두께, 사양 개폐방향, 개폐범위, 창호 프레임 등은 시공 시 선정되는 제품에 따라 일부 변경될 수 있으며, 공용부의 창호는 전체 고정창으로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저층부 외부 석재 마감구간의 단위세대 및 코아부에 설치 창호는 마감 시공을 위해 일부 창호의 크기가 다소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일부 세대 현관문의 경우 E.V홀 내부 압력을 확인하기 위한 차압측정공이 설치될 수 있습니다.
- 실외기실 도어재질은 결로 등에 대한 성능향상을 위해 재질이 변경되어 시공될 수 있습니다.
- 실외기실 루버는 성능향상을 위해 사양, 크기, 디자인, 규격 등은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세대 내부에 설치되는 철재문 및 방화문류의 설치 위치, 크기, 형태, 디테일은 시공성 및 성능개선을 위해 공사 중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창호의 열림 방향 및 규격 등은 입주자의 사용환경 및 아파트 내, 외부 마감등을 고려하여 건축허가승인도서(변경포함) 및 견본주택의 형태와 일부 변경되어 시공되어 질 수 있습니다.
- 주방에 면하는 다용도실 도어는 결로 및 단열 등의 하자를 고려하여 동등이상의 자재로 변경되어 시공되어 질 수 있습니다.
- 아파트 내외부 창호사양(유리, 하드웨어, 창틀)은 내풍압을 고려하여 세대별, 층별, 침실별 상이하게 시공되어 질 수 있습니다.
- 아파트 내외부 창호의 유리사양 중 L•w-E 유리의 설치 위치는 결로 및 단열 등의 성능을 고려하여 변경되어 시공되어 질 수 있습니다.
- 욕실 내 설치되는 배수구 및 환기팬, 천장 점검구의 위치 및 사양, 크기는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주방 발코니의 가스배관이 설치되는 위치에 따라서 가스 계량기 위치가 변경될 수 있으며, 가스배관이 주방 벽면에 노출될 수 있음. 또한 가스배관으로 인해 주방 상부장의 깊이가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실외기실 내 배수구의 설치여부, 위치, 사양은 변경 될 수 있습니다.
- 주방 발코니의 가스미터기 설치 위치에 따라서 선반 크기가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주방 렌지후드 및 주방 상부장에는 소방법규에 따라 자동식소화기가 설치되며 상부 덕트의 크기는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실외기실 내부에는 선홈통 및 배수구가 설치될 수 있습니다.
- 실외기실은 직접외기로 우수 드레인의 동파방지를 위해 봉수가 되지 않는 배수 드레인이 설치될 예정으로, 악취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 발코니(실외기실, 세탁실 포함)에는 드레인 및 선홈통이 설치될 수 있고, 사양, 위치, 개소는 변경될 수 있으며. 드레인이 설치되지 않는 발코니는 물을 사용하지 않는 공간으로 계획되었음. 또한, 수전이 설치되지 않은 발코니는 물청소를 위한 배수설비가 설치되지 않습니다.
- 에어컨 냉매배관은 거실 1개소와 침실1(안방) 1개소가 시공되며, 유상옵션 선택시 거실과 안방에 냉매배관이 설치되지 않습니다.
- 식탁용 조명기구의 위치는 보편적으로 식탁이 놓일 것으로 예상되는 곳에 정하였으며, 위치변경은 불가합니다.
- 월패드의 전화 수신기능은 국선전화에 한하여 가능합니다.
- 주방 테블릿 모니터의 인터넷 기능은 세대 와이파이 연결 시 가능하며, 해상도, 기능 등의 개선을 위해 디자인 및 형태 등이 다소 변경 될 수 있습니다.
- 견본주택 내에서 제공하는 홈 IoT 기능은 입주자의 이해를 돕기 위한 것으로 실제 입주시 미구현 또는 성능개선 등 서비스 항목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 기본으로 제공되는 홈네트워크 연동기기 (조명, 난방제어 등) 외 IoT 연동 제품은 (공기청정기, 스피커, 가습기, 기타 등)은 소비자가 별도 구매하여야 합니다.
- 기기 제어는 세대 내 무선인터넷 환경이 구축되어야 가능하며, 통신 및 제어방식에 따라 일부기기는 별도의 서비스 비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서비스 이용 조건은사용자와 KT와의 계약내용에 준하며, 서비스 정책에 따라 추후 변경 및 종료될 수 있습니다.)
- 홈 IoT 전용앱은 입주시 KT 측에서 다운로드 및 사용법 안내 예정이며, 전용앱은 입주개시일로부터 3년간 무료로 사용가능하며 3년 이후에는 유상서비스로 변경 예정입니다(사용자 선택 가능)
- 주방에 설치된 거치형패드는 타입별 디자인 및 사양,위치가 다르며 본 시공시 디자인 및 사양, 위치는 변경예정입니다.
- 아트월에 시공되는 이태리 세라믹 패널은 북매칭 타입으로 제작 과정에서 색상 및 디자인이 견본주택과 다소 다를 수 있습니다.
- 아트월 및 주방 벽체에 설치되는 이태리 세라믹 패넬은 수직도를 위해 바탕면과 일부 이격하여 시공함에 따라 세라믹 판넬과 바탕면에 이격거리가 발생하며 별도의 뒷채움 시공을 하지 않습니다.
- 아트월 이태리 세라믹 패널은 커튼박스 시작 수직라인까지 시공되며 측면 마감을 위해 재료분리대가 설치될 수 있습니다.
- 주방상판 및 벽체에 적용되는 이태리 세라믹 패널의 디자인은 자재의 컷팅 방법, 제조 시점 등에 따라 각 세대별로 다르게 시공되며, 타일의 베인의 방향이 랜덤하게 시공됨을 인지하고 이에대한 어떠한 이의를 제기하지 않습니다.
- 발코니 확장 시 설치 되는 안전접합 유리난간 적용 PVC발코니 창호의 난간 높이는 안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결정 및 본공사 시공 예정으로 난간대 높이 대한 어떠한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세대 내부에 비상 시 탈출할 수 있는 탈출형 대피시설이 구성되어 있으며, 탈출형 대피시설은 야외에 직접 노출되는 형태로 탈출공간에 별도의 야적을 할 수 없습니다.
- 탈출형 대피시설은 외부면으로 벽체가 설치되지 않고 금속 난간으로 시공될 예정이며, 난간의 높이, 재질, 형태, 사양 등은 추후 본공사 시 변경될 수 있습니다.
- 탈출형 대피시설 바닥은 피난 사다리공간은 금속판으로 시공되며 , 그 외 바닥은 타일로 시공될 예정으로 타일의 사양 및 형태는 변경될 수 있습니다.
- 84B타입의 주방에 설치되는 픽스창호는 3중유리가 설치되어질 예정이며, 유리의 두께 및 사양 등은 변경될 수 있습니다.
- 84B타입 주방에 설치되는 후드의 높이는 자동식 소화기 높이 등 법적 기준을 준수하여 설치될 예정이며, 이로인해 조리 시야 및 행위에 간섭될 수 있으므로 반드시 견본주택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세대/규격 사항

- 분양시 홍보물에 표시된 평면도(치수, 구획선), 실내투시도(색상, 구획선), 단지배치도, 면적 및 도면내용은 입주자의 이해를 돕기 위한 것이므로 실제 시공시 다소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세대내 거실의 아트월 설치, 복도, 침실, 주방 등의 벽체마감(마감두께 등)으로 인하여 본 아파트의 인허가 도면보다 안목치수가 줄어들 수 있으며, 이에 대해 계약자는 일체의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계약자 선택사항에 따라 세대 내부의 마감재 및 가구에 대한 마감치수(두께, 폭, 넓이)가 설계도면과 상이할 수 있습니다.(설계도면에 미표기 될 수 있습니다.)
- ''사업주체" 및 "시공사"가 '선정한 감리자'가 성능시험 등을 통하여 품질 또는 성능 확인 후 현장 시공에 적합하다고 승인하여 설치한 자재 또는 제품에 대하여, 시공자가 설계도면 및 시방서 등에 따라 시공한 경우 설치(시공) 당시부터 성능미달의 제품을 설치하였다거나 시공 및 설치상의 하자가 있었음이 밝혀지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입주 이후에 성능 미달 사실이 있다는 사실만으로는 시공자에게 품질 또는 성능미달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하거나 책임을 물을 수 없습니다.
- 전항의 경우 입주 이후 '수분양자(입주자)'의 사용에 따른 자재 또는 제품의 성능저하 발생시 '수분양자(입주자) 또는 관리주체'가 유지 보수 및 관리하여야 하며, 입주 이후에 발생하는 유지 보수 및 관리상의 문제로 인한 성능미달에 대하여는 원칙적으로 수분양자(입주자) 또는 관리주체가 책임지셔야 합니다.

■ 제공/전시품목 사항

- 분양시 홍보물 및 실내투시도에 표시 및 견본주택에 설치된 내·외부창호는 본공사시 제조사, 사양 등이 변경될 수 있으며, 생활가구류(침대, 소파, 책상, 의자 등), 생활가전류(냉장고, TV, 밥솥, 전자레인지 등), 침장 및 커튼류, 인테리어 소품류(사진, 액자, 화분 등)는 연출용 전시품입니다.
- 견본주택에 설치된 모든 모형은 입주자의 이해를 돕기 위해 제작된 것으로 실제와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 견본주택 천장에 설치된 스프링클러 및 감지기와 벽체에 설치된 경보기 등은 견본주택 자체의 소방시설입니다.
- 모형 및 조감도에 표현된 각 주거동 외벽의 리브(줄눈)형태 및 지붕모양, 형태 등은 실제 시공 시 변경될 수 있으며, 각 주거동 저층부 및 고층부 등에 표현된 장식물의 형태는 실제 시공 시 시공성 등을 고려하여 조정될 수 있습니다.
- 공급주택의 실내 마감자재 중 미표기 사항 등 카탈로그에 포함되지 않은 설계내용은 사업계획승인 도면에 따라 시공됩니다.
- 홍보 카탈로그, 안내문 등에 표시된 각종 주변시설(학교, 도로망 등)은 지구단위계획의 변경 및 시행/허가관청, 지방자치단체, 국가시책 및 개별 소유주의 이용 용도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이에 대한 사업주체 및 시공사의 책임은 없습니다.
- 견본주택 세대 내 설치된 CCTV는 견본주택 보안용으로 본 공사시에는 설치되지 않습니다
- 견본주택 모형에 표시된 단지 주변 현황 및 당 사업장의 위치는 소비자의 이해를 돕기위해 일부 과장 및 개략적으로 표현해 실제 현황과 다소 다를 수 있으므로 반드시 현장을 방문하시어 주변 현황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세대 내부에 설치되는 PVC단열도어는 성능 및 디자인을 고려하여 본공사 시 제품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 환경권 사항

- 건축법 및 주택법을 준수하여 시공한 인접 건물에 의하여 배치구조 및 동호수별 위치에 따라 일조권, 조망권 등의 사생활권의 침해가 있을 수 있습니다.
- 본 아파트는 단지 배치상 동별, 향별, 층별 차이 및 세대 상호간의 향·층 및 조경(식재,시설물)에 따라 일조권, 조망권, 사생활권이 침해당할 수 있으며, 인접동에 의해서 조망에 제약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단지주출입구, 부대복리시설, 주차출입구, 문주, 식재 등 단지 내 시설물 등에 의해 특정세대의 경우 일조권, 조망권 및 환경권 등이 침해 될 수 있으며, 야간조명 효과 등에 의해 눈부심 현상이 발생될 수 있습니다.
- 일부 저층 세대의 경우 동 출입구 형태에 따라 동 현관 및 부대복리시설 출입구 등에 따른 시각적 간섭이 발생될 수 있습니다.
- 단지배치 특성상 단지내.외 도로와 단지내 비상차로 등에 인접한 저층부 세대에는 차량소음 및 전조등(주차장 램프 포함), 보행자에 의한 사생활권 및 각종 환경권이 침해될 수 있습니다.
- 아파트 주차장은 지하2층~지상3층에 위치하며, 오피스텔, 근린생활시설 주차장은 지상1층에 위치합니다. 101동, 102동, 105동, 106동은 주차계획상 지상1층 주차장 주동주출입구에서 거리가 먼 곳에 주차하여 이용할 수 있을 수 있으며, 각 동별 인접한 주차대수가 상이할 수 있습니다.
- 저층부는 세대별로 가로등, 보안등, 정원등, 수목투시등의 영향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엘리베이터에 면한 세대의 경우 엘리베이터 운행으로 인한 소음 및 진동 등이 발생될 수 있습니다. 또한, 최상층 근접 세대의 경우 엘리베이터 기계실의 기계작동에 의한 소음 및 진동 등이 발생될 수 있으므로 계약자는 위치 등을 반드시 확인한 후에 분양계약을 체결하시기 바랍니다.
- 인접동 및 인접세대의 배치 등에 따라 세대별로 조망과 향, 일조량 등에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견본주택에서 필히 사전에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휴게공간, 지상2,3층 옥상정원(커뮤니티프로그램) 및 어린이놀이터로 인하여 소음이 발생하거나 생활환경에 제약이 있을 수 있습니다.
- 단지 내 인접한 도로 및 주변시설 등으로 인해 소음 및 진동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단지 내 계획된 부대복리시설(어린이놀이터, 주민공동시설 등)로 인해 인근 해당 동 및 세대에 소음이 발생하거나 생활환경이 제약을 받을 수 있습니다.
- 근린생활시설 인접되어 있는 동의 저층세대는 해당 시설의 이용으로 인하여 생활에 불편함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단지 내·외부 표고차이 및 주변시설 및 아파트로 인해 일부 세대의 경우 조망 기타 생활환경에 제약이 있을 수 있습니다.
- 지상, 지하주차장 내부에 위치한 설비관련실(기계실, 전기실, 발전기실 휀룸실 등)로 인해 인근 해당 동 및 세대에 소음이 발생하거나 생활에 불편함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주차장 출입구와 인접한 저층부 세대는 주차장을 이용하는 차량 소음 및 조명에 의하여 생활에 불편함이 있을 수 있습니다.
- 아파트와 오피스텔 및 근린생활 주차장 진출입구 및 주차장은 각각 분리되어 설치됩니다.
- 단지 내 쓰레기수거장이 위치하여, 이와 인접한 저층세대에는 소음 및 진동, 냄새, 해충, 미관저하, 수거차량 상시 접근 등에 의한 사생활권이 침해될 수 있으므로 사전 확인 바랍니다.

- 동별, 세대별 위치에 따라 일조권 침해가 발생되는 세대가 일부 존재하며 수분양자는 이에 대해 충분히 인지하고 계약하여야 하며, 이와 관련 차후 여하한 민형사상의 소송이나 민원의 제기는 불가합니다.
- 전기/통신, 맨홀 등 인입 장비의 상세계획(설치면적 및 위치, 형태, 사양, 디자인 등)은 시공 단계에서 최종 확정되며 관련 사업자와 협의 결과에 따라 변경 될 수 있습니다.

■ 외부환경디자인 사항

- 외부 시설물(문주, DA, 쓰레기집적소 등)의 위치, 색채, 재질, 디자인은 본 공사시 관계기관의 협의 및 디자인개선 등의 이유로 변경될 수 있습니다.
- 분양시 홍보물의 모든 도면은 입주자의 이해를 돕기 위한 이미지 컷으로 착공 및 설계변경시 또는 실제 시공시 시설물의 배치, 구획, 면적, 모양 등의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 단지 모형의 조경 및 식재, 주변 환경, 부지 고저차, 주거동 외관 디자인(외벽의 줄눈, 리브형태, 지붕모양, 입면마감재료, 색채, 측벽, 옥탑장식물, 몰딩, 창틀모양 등), 부대복리시설의 색상 및 형태 등은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 사항에 대해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단지 보행출입구, 차량 진출입로는 기존 도로의 선형 경사도에 따라 본 공사시 일부 변경될 수 있습니다.
- 대지면적은 확정측량에 따라 면적이 일부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주민공동시설은 공간 활용의 개선을 고려해 동일 면적 내에서 실배치가 변경될 수 있으며, 본 공사 시 재질, 색채, 가구 및 집기류 등이 다소 변경 될 수 있습니다.
- 아파트 저층부 외벽마감은 특화 디자인 계획에 따라 시공하며, 위치, 색채, 재질, 디자인은 본 공사 시 변경될 수 있습니다.
- 단지 경계부는 도로와의 높이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 단지 내 도로의 경사도는 주변도로의 경사도 및 레벨에 순응하기 위하여 일부 조정될 수 있습니다.
- 단지 내 조경 시설 및 식재의 종류, 수량 식재위치는 인허가청의 요청 혹은 입체적 단지 조화를 고려한 설계변경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외부 마감재 사양은 현장별로 상이할 수 있으며, 해당 현장 마감재 사양에 대해 사업주체 및 시공사의 기현장과 비교하여 추후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저층세대의 외벽 마감재 설치에 따라 외부 창호는 형태 및 크기 등 이 변경될 수 있으며, 벽체 두께가 변경될 수 있습니다.
- 단지 출입구의 문주는 형태 및 디자인 등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 동별, 층별, 라인별로 외부마감재료와 색상 및 외부창호 색상과 디테일이 상이 할 수 있습니다.
- 옥상에 설치되는 시설물(옥상장식물, 구조공간, 태양광집광판, 설비시설물 등)의 위치, 형태, 디자인 등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주변환경 사항

- 토지이용계획은 개발계획, 실시계획 변경 등으로 일부 변경될 수 있습니다.
- 분양시 홍보물의 내용 중 교통 / 교육시설 / 주변 환경에 대한 사항은 관계기관의 사정에 따라 개발계획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인근학교 학생배치와 관련하여 초등학교는 달성초등학교 배치 예정이며, 중학생은 6학교군(북구권) 내 분산 배치 가능, 고등학생은 단일학군(광역배정) 및 일반학군(1학군)내 분산 배치 가능합니다.
- 당해 지구 내 교육시설 등은 개발(실시)계획의 변경, 학생수용여건 변화 등에 의해 추후 변경될 수 있고, 학생배치계획은 향후 공동주택 입주시기 및 학생수 등을 감안하여 해당관청에서 결정하는 사항이므로 자세한 사항은 관할교육청 등 해당 관청에 반드시 문의하여 확인하시기 바랍니다.(대구광역시교육청 학교운영과, 053-231-0705)
- 경부선 철도와 인접함에 따라 철도 운행으로 인한 소음, 진동, 조망의 영향이 있을수 있음을 충분히 양지하고 계약하여야 하며 계약 체결 후 한국철도시설공단, 관할 관청 등으로 민원 및 민형사상 소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본 아파트 단지 남측에 위치한 도시계획시설(철도 등)로 인해 소음, 야간눈부심, 진동, 분진 등 환경권 침해를 받을 수 있으니 사전에 충분히 검토한 후에 청약 신청 및 계약 체결하시기 바라며 이에 따른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향후 발생 가능한 도시계획시설(철도 등)의 소음 및 진동 등 모든 민원에 대하여, 향후 한국철도시설공단, 관할 관청 등으로 어떠한 민원도 제기할 수 없으므로 사전에 충분히 검토한 후에 청약 신청 및 계약 체결하시기 바랍니다.
- 단지모형 및 홍보물 등에 표현된 단지 동서측 도로 및 건물은 향후 개발 예정계획을 반영한 것으로 사업진행 및 설계, 인허가 절차 등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친환경주택 성능 수준(의무사항 적용 여부)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21조 제3항 제21호에 따라 친환경주택의 성능 수준을 다음과 같이 표시합니다.

구 분	적용여부	사양, 성능, 설치위치, 설치개수 등
고효율기자재	적용	전동기 / 급수펌프 : 고효율에너지기자재 사용
대기전력 차단장치	적용	거실 / 침실 / 주방 : 대기전력차단 스위치를 각 1개소에 설치
일괄소등 스위치	적용	일괄소등스위치 설치
고효율 조명기구	적용	고효율조명기구 또는 LED 조명기구 / 설치위치: 세대 및 공용부
공용화장실 자동점멸스위치	적용	공용화장실 : 자동점멸스위치 설치
실별 온도조절장치	적용	세대 각 실 : 온도조절장치 설치
절수 설비	적용	절수형 설비 설치

공동주택 성능등급 인증서	녹색건축 예비 인증서	건축물 에너지 효율등급 예비 인증서



■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칙[별지 제1호서식] <개정 2016. 7. 27.>

공동주택성능등급 인증서

1. 공동주택명: 고성동 리건주거복합(주거부분)
2. 신 청 자: ㈜리건인베스트먼트피에프브이
3. 대 지 위 치: 대구광역시 북구 고성동1가 55-2번지 일원
4. 성 능 등 급

가. 소음 관련 등급

성능항목	성능등급
1. 경량충격음 차단성능	★★★★
2. 중량충격음 차단성능	★★
3. 세대 간 경계벽의 차음성능	★★★★
4. 교통소음(도로, 철도)에 대한 실내 · 외 소음도	★★
5. 화장실 급배수 소음	★

나. 구조 관련 등급

성능항목	성능등급
1. 내구성	★
2. 가변성	★★
3. 수리용이성 전용부분	★
4. 수리용이성 공용부분	★

다. 환경 관련 등급

성능항목	성능등급
1. 기존 대지의 생태학적 가치	★★★★
2. 과도한 지하개발 지양	해당없음
3. 토공사 절성토량 최소화	★★★★
4. 빌딩권 간섭방지 대책의 타당성	해당없음
5. 에너지 성능	★★★
6. 에너지 모니터링 및 관리지원 장치	★
7. 신 · 재생에너지 이용	해당없음
8. 저탄소 에너지원 기술의 적용	해당없음
9. 오존층 보호를 위한 특정물질의 사용 금지	해당없음
10. 환경성선언 제품(EPD)의 사용	★
11. 저탄소 자재의 사용	★
12. 자원순환 자재의 사용	★
13. 유해물질 저감 자재의 사용	★
14. 녹색건축자재의 적용 비율	★★★★
15. 재활용가능자원의 보관시설 설치	★★★★
16. 빗물관리	★★★★
17. 빗물 및 유출지하수 이용	★★★★
18. 절수형 기기 사용	★★
19. 물 사용량 모니터링	★★

라. 생활환경 관련 등급

성능항목	성능등급
1. 단지내 · 외 보행자 전용도로 조성 및 연결	해당없음
2. 대중교통의 근접성	★★★
3. 자전거주차장 및 자전거도로의 적합성	★
4. 생활편의시설의 접근성	★★
5. 건설현장의 환경관리 계획	★★★★
6. 운영 · 유지관리 문서 및 매뉴얼 제공	★★★★
7. 시공자 해슈업 체공	★★★★
8. 녹색건축인증 관련 정보제공	★★★★
9. 단위세대의 사회적 약자배려	★
10. 공동공간의 사회적 약자배려	★
11. 커뮤니티 센터 및 시설공간의 조성수준	★★
12. 세대 내 일조 확보율	★
13. 홈네트워크 종합시스템	★
14. 방범안전 콘텐츠	★★

마. 재해 · 소방 관련 등급

성능항목	성능등급
1. 감지 및 경보설비	★★
2. 제연설비	★
3. 내화성능	★
4. 수평피난거리	★
5. 복도 및 계단 유효너비	★
6. 피난설비	★★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 제16조, 「녹색건축 인증에 관한 규칙」 제11조 및 「주택법」 제39조에 따라 귀하 같이 공동주택성능등급 인증서를 발급합니다.

2020년 07월 17일

한국생산성본부인증원장

210mm×297mm[백상지 120g/㎡]



녹색건축 예비 인증서

[건축물 개요]

건축물명	고성동 리건주거복합(주거부분)
건 축 주	㈜리건인베스트먼트피에프브이
준공예정일	2024년 4월 30일
주 소	대구광역시 북구 고성동1가 55-2번지 일원
층 수	지하 2층, 지상 49층 / 854세대
연 면 적	148,082.4084 ㎡
건축물의 주된 용도	공동주택
설 계 자	㈜희림종합건축사사무소

[인증 개요]

인증번호	제2020 - 2764호
인증기관	한국생산성본부인증원
유효기간	2020.7.17 ~ 사용승인일

[인증 등급]

인증등급	일반등급(공동주택)
인증기준	녹색건축 인증기준
	국토교통부고시 제2016-341호
	환경부고시 제2016-110호

위 건축물은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 제16조 및 「녹색건축 인증에 관한 규칙」 제11조 제3항에 따라 녹색건축(일반 등급)건축물로 인증되었기에 인증서를 발급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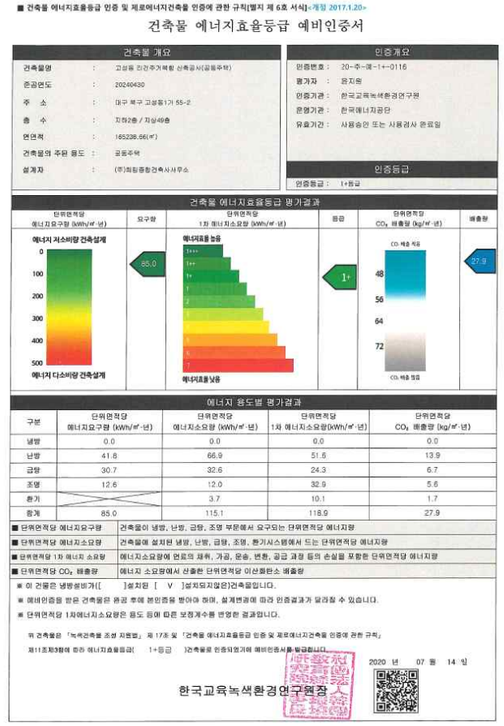
[분야별평가] 종합등급 ★☆☆☆

2020년 7월 17일

kpc 한국생산성본부인증원 KOREA PRODUCTIVITY CENTER QUALITY ASSURANCE

※ 예비인증을 받은 건축물은 준공 후에 본인증을 받아야 하며, 설계변경에 따라 인증 결과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인증정보 확인



■ 건축물 에너지효율등급 인증에 관한 규칙[별지 제 6호 서식]<개정 2017.1.20>

건축물 에너지효율등급 예비인증서

건축개요		
건축물명	:	고성동 리건주거복합 상록공사(공동주택)
준공연도	:	20240430
주 소	:	대구 북구 고성동1가 55-2
층 수	:	지하2층 / 지상49층
연면적	:	165238.56(㎡)
건축물의 주된 용도	:	공동주택
설계자	:	(주)희림종합건축사사무소

인증개요	
인증번호 :	20-주-북-1+-0116
평가자 :	윤지원
인증기관 :	한국교육녹색환경연구원
운영기관 :	한국에너지공단
유효기간 :	사용승인 또는 사용검사 완료일

인증등급
인증등급 : 1+등급

건축물 에너지효율등급 평가결과

단위면적당 에너지요구량 (kWh/㎡·년)	요구량	단위면적당 1차 에너지소요량 (kWh/㎡·년)	등급	단위면적당 CO_2 배출량 (kg/㎡·년)	배출량
에너지 저소비량 건축설계 0 100 200 300 400 500 에너지 다소비량 건축설계	65.0	에너지효율 높음 1++ 1+ 1 2 3 4 5 6 7 에너지효율 낮음	1+	CO_2 배출 적음 48 56 64 72 CO_2 배출 많음	27.9

에너지 용도별 평가결과

구분	단위면적당 에너지요구량 (kWh/㎡·년)	단위면적당 에너지소요량 (kWh/㎡·년)	단위면적당 1차 에너지소요량(kWh/㎡·년)	단위면적당 CO_2 배출량 (kg/㎡·년)
냉방	0.0	0.0	0.0	0.0
난방	41.8	66.9	51.5	13.9
급탕	30.7	32.6	24.3	6.7
조명	12.6	12.0	32.9	5.6
환기		3.7	10.1	1.7
합계	85.0	115.1	118.9	27.9

■ 단위면적당 에너지요구량 : 건축물이 냉방, 난방, 급탕, 조명 부문에서 요구되는 단위면적당 에너지량

■ 단위면적당 에너지소요량 : 건축물에 설치된 냉방, 난방, 급탕, 조명, 환기시스템에서 드는 단위면적당 에너지량

■ 단위면적당 1차 에너지 소요량 : 에너지소요량에 연료의 채취, 가공, 운송, 변환, 공급 과정 등의 손실을 포함한 단위면적당 에너지량

■ 단위면적당 CO_2 배출량 : 에너지 소요량에서 산출한 단위면적당 이산화탄소 배출량

※ 이 건물은 냉방설비가 []설치함 [V]설치되지않은건축물입니다.

※ 예비인증을 받은 건축물은 용공 후에 본인증을 받아야 하며, 설계변경에 따라 인증결과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 단위면적당 1차에너지소요량은 용도 등에 따른 보정계수를 반영한 결과입니다.

위 건축물은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 제 17조 및 「건축물 에너지효율등급 인증 및 제로에너지건축물 인증에 관한 규칙」 제11조제3항에 따라 에너지효율등급(1+등급)건축물로 인증되었기에 예비인증서를 발급합니다.

2020 년 07 월 14 일

한국교육녹색환경연구원장

■ 감리회사 및 감리금액

구 분	회사명	감리금액	비고
건축감리	㈜목양종합건축사사무소	3,274,000,000	VAT 별도
전기감리	(유)광진이엔지	658,207,257	VAT 별도
정보통신·소방 감리	㈜광명엔지니어링	555,000,000	VAT 별도

■ 주택도시보증공사의 보증 주요내용

※ 모든조항은 주택분양보증약관(개정 2019.07.25)을 준용하며, 일부조항은 생략되었습니다.

※ 주택분양보증약관에 따른 보증기관 및 보증내용 등에 관한 사항은 아래와 같다.

보증서번호	보증금액(원)	보증기간
제 01282020-101-0008000 호	₩ 337,889,890,100	입주자모집공고승인일로부터 건물소유권보존등기일(사용검사 또는 당해 사업장의 공동주택 전부에 대한 동별사용검사 포함)까지

• 보증채무의 내용 (보증약관 제1조)

보증회사는「주택도시기금법 시행령」제21조 제1항 제1호 가목에 따라 주채무자가 보증사고로 분양계약을 이행할 수 없게 된 경우에 해당 주택의 분양이행 또는 환급이행 책임을 부담합니다.

【보증회사】 주택도시보증공사를 의미합니다. 이하 같습니다.
【주채무자】 보증서에 적힌 사업주체를 말합니다. 이하 같습니다.
【분양이행】 주택법령에서 정한 주택건설기준 및 해당 사업장의 사업계획승인서, 설계도서에 따라 시공하여 입주를 마침
【환급이행】 보증채권자가 납부한 계약금 및 중도금을 되돌려 줌

• 보증이행 대상이 아닌 채무 및 잔여입주금 등의 납부 (보증약관 제2조)

① 보증회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분양권 양도자와 관련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를 포함)에는 보증채권자에게 보증채무를 이행하지 않습니다.

1. 천재지변, 전쟁, 내란, 그 밖에 이와 비슷한 사정으로 주채무자가 주택분양계약을 이행하지 못하여 발생한 채무
2. 주채무자가 대물변제・허위계약・이중계약 등 정상계약자가 아닌 자에게 부담하는 채무

【대물변제】 주채무자의 채권자가 그 채권에 대하여 주채무자가 분양하는 아파트 등에 관한 분양계약을 체결함으로써 변제에 갈음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허위계약】 분양의사가 없는 자가 주채무자의 자금 융통 등을 돕기 위하여 명의를 빌려주어 분양계약하는 것으로 차명계약을 의미합니다.

3. 입주자모집공고 전에 주택분양계약을 체결한 자가 납부한 입주금

【입주금】 주채무자가 보증채권자로부터 받는 계약금과 중도금 및 잔금을 말합니다.

4. 보증채권자가 입주자모집공고에서 지정한 입주금납부계좌(입주자모집공고에서 지정하지 않은 경우에는 주택분양계약서에서 지정한 계좌를, 보증회사가 입주금납부계좌를 변경・통보한 후에는 변경된 납부계좌를 말함)에 납부하지 않은 입주금.
5. 보증회사가 보증채권자에게 입주금의 납부중지를 알린 후에 그 납부중지통보계좌에 납부한 입주금
6. 보증채권자가 입주자모집공고에서 정한 납부기일 전에 납부한 입주금중 납부기일이 보증사고일 후에 해당하는 입주금. 다만, 보증회사가 입주금을 관리(주채무자 등과 공동관리하는 경우를 포함)하는 계좌에 납부된 입주금은 제외합니다.
7. 보증채권자가 분양계약서에서 정한 계약금 및 중도금을 초과하여 납부한 입주금
8. 보증채권자가 납부한 입주금에 대한 이자, 비용, 그 밖의 종속채무
9. 보증채권자가 대출받은 입주금 대출금의 이자
10. 보증채권자가 입주금의 납부지연으로 납부한 지연배상금
11. 보증사고 전에 주택분양계약의 해제 또는 해지로 인하여 주채무자가 보증채권자에게 되돌려 주어야 할 입주금. 다만, 보증사고 사유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사유로 보증채권자가 보증사고 발생 이전에 분양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한 경우는 제외합니다.
12. 주채무자가 입주자모집공고에서 정한 입주예정일 이내에 입주를 시키지 못한 경우의 지체상금
13.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에 따라 입주자모집공고에서 정한 주택 또는 일반에게 분양되는 복리시설의 분양가격에 포함되지 않은 사양선택 품목(예시:홈오토, 발코니샤시, 마이너스옵션 부위, 그 밖의 마감재공사)과 관련한 금액. 다만, 사양선택 품목과 관련한 금액이 보증금액에 포함된 경우에는 제외합니다.
14. 보증채권자가 제5조의 보증채무이행 청구서류를 제출하지 않거나 제3조의 협력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등 그 밖에 보증채권자의 책임있는 사유로 발생하거나 증가된 채무
15. 주채무자・공동사업주체・시공자 등과 도급관계에 있는 수급인, 그 대표자 또는 임직원 등 이해관계가 있는 자가 주채무자・공동사업주체・시공자 등에게 자금조달의 편의를 제공하기 위하여 분양계약을 체결하여 납부한 입주금
16. 주채무자・공동사업주체・시공자 또는 그 대표자 등이 보증채권자에 대한 채무상환을 위하여 납부한 입주금
17. 주채무자・공동사업주체・시공자 또는 그 대표자 등으로부터 계약금 등을 빌려 분양계약을 체결한 자가 납부한 입주금

② 보증회사가 제6조에 따라 분양이행으로 보증채무를 이행할 경우에는 보증채권자는 잔여입주금 및 제1항 제4호부터 제6호까지에 해당하는 입주금을 보증회사에 납부해야 합니다. 다만, 제1항 제6호에 해당하는 입주금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잔금은 그렇지 않습니다.

1. 사용검사일 이후에 보증사고가 발생한 경우 보증사고를 알리기 전까지 납부한 잔금
2. 임시사용승인일 이후에 보증사고가 발생한 경우 보증사고를 알리기 전까지 납부한 잔금 중 전체 입주금의 90퍼센트 이내에 해당하는 잔금

【보증채권자】 보증서에 적힌 사업에 대하여 주택법령 및「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을 준수하여 주채무자와 분양계약을 체결한 자(분양권 양수자를 포함)를 말합니다. 다만, 법인이 주택을 분양받는 경우에는 주택분양계약 이전에 그 주택분양계약에 대하여 보증회사에 직접 보증편입을 요청하고 동의를 받은 법인만 보증채권자로 봅니다. 이하 같습니다.

• 보증사고 (보증약관 제4조)

① 보증사고란 보증기간 내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인하여 사회통념상 주채무자의 정상적인 주택분양계약 이행을 기대하기 어려운 상태를 말합니다.

1. 주채무자에게 부도・파산・사업포기 등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
2. 감리자가 확인한 실행공정률이 예정공정률(주채무자가 감리자에게 제출하는 예정공정표상의 공정률을 말함. 이하 같음)보다 25퍼센트P 이상 부족하여 보증채권자의 이행청구가 있는 경우. 다만, 입주예정자가 없는 경우에는 이행청구를 필요로 하지 않습니다.
3. 감리자가 확인한 실행공정률이 75퍼센트를 넘는 경우로서 실행공정이 정당한 사유 없이 예정공정보다 6개월 이상 지연되어 보증채권자의 이행청구가 있는 경우
4. 시공자의 부도・파산 등으로 공사 중단 상태가 3개월 이상 지속되어 보증채권자의 이행청구가 있는 경우

【보증기간】 해당 주택사업의 입주자모집공고 승인일(복리시설의 경우 신고일을 말함)부터 건물소유권보존등기일(사용검사 또는 해당 사업장의 공동주택 전부에 대한 동별사용검사를 받은 경우에 한함)까지를 말합니다. 이하 같습니다.

② 보증사고일은 보증회사가 제1항 각 호의 사유로 사고 안내문으로 알리면서 다음 각 호 중에서 보증사고일로 지정한 날을 말합니다. 이 경우 보증회사는 보증서에 적힌 사업의 입주자모집공고를 한 일간지(공고를 한 일간지가 2개 이상인 경우에는 그 중 1개 일간지를 말함)에 실어 통보에 갈음할 수 있습니다. 이하 같습니다.

1. 제1항 제1호의 경우에는 부도・파산일, 사업포기 관련 문서접수일 등
2. 제1항 제2호에서 제4호의 경우에는 보증이행청구 접수일

※ 분양계약자는 사업주체의 부도・파산 등으로 보증사고가 발생할 경우에는 사업주체가 주택도시보증공사로 변경되는 것에 대하여 동의한 것으로 간주함
※ 아파트 공사진행 정보 제공 : 분양보증을 받은 아파트 사업장의 공사진행 정보는 주택도시보증공사의 모바일 어플리케이션(HUG-i)을 통해 확인할 수 있음.

■ 매도청구 진행상황

• 당 주택건설사업부지 중 고성동1가 50-53(면적:27.4㎡), 고성동1가 52-16(면적:0.3㎡), 고성동1가 54-33(면적:46.3㎡ 지분7408분의463), 고성동1가 56-15(면적:6.6㎡), 고성동1가 57-14(면적:192.4㎡), 고성동1가 94-7(면적:52.5㎡ 지분40분의4)은 토지 소유자의 소재를 알 수 없는 토지로 [주택법23조]에 의하여 공동사업주체 대표자가 공고 및 감정평가, 공탁 완료하였으며, 사용검사 전 까지 본 토지에 대한 소유권 확보 예정으로 청약 신청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상기 내용과 관련하여 사업주체는 입주자를 모집할 경우 주택건설사업부지의 소유권을 전부 확보하여야 하나, 상기 미확보된 토지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15조 제1항 제1호 나목에 따라 입주자 모집이 가능합니다.

■ 사업주체 및 시공회사

구분	사업주체		시공회사
	공동사업주체 대표자	등록업자	
상호	주식회사 리건인베스트먼트피에프브이	주식회사 케이씨씨건설	주식회사 케이씨씨건설
주소	서울특별시 강남구 학동로97길 43-5, 4층(청담동)	서울특별시 서초구 강남대로 587(잠원동)	서울특별시 서초구 강남대로 587(잠원동)
법인등록번호	110111-7479721	110111-0607618	110111-0607618

※ 본 모집공고상 사업주체인 주식회사 리건인베스트먼트피에프브이는 법인세법 제51조의 2에 의해 설립된 프로젝트 금융회사로서 주택법 제10조에 의해 토지소유자인 주식회사 리건인베스트먼트피에프브이와 등록사업자인 주식회사 케이씨씨건설이 공동사업주체로 공동주택사업계획승인을 완료하였으며, 계약자는 주식회사 리건인베스트먼트피에프브이와 계약을 하고 사업주체 및 매도인으로서의 일체의 의무 및 책임은 주식회사 리건인베스트먼트피에프브이가 부담함을 알려드립니다.

※ 주식회사 케이씨씨건설은 공동사업주체의 구성원이나 본 사업 관련 책임 및 의무이행 범위는 주식회사 리건인베스트먼트피에프브이와 체결한 공동사업 표준협약 및 공사도급계약상 시공 업무에 한정됨을 알려드립니다.

■ 홈페이지 : http://opera.switzen.com

■ 견본주택 위치 : 대구광역시 동구 신천동 385-1번지

■ 분양문의 : 1833-2544

※ 본 견본주택은 주차장이 협소하오니 대중교통을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 본 아파트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 확산을 방지하기 위해 사이버모델하우스(07월 31일 오픈)를 운영할 예정이며, 향후 당첨자(예비당첨자 포함)에 한하여 견본주택 관람을 진행할 계획이며, 자세한 사항은 당첨자(예비당첨자 포함)에게 별도 안내 예정입니다.

※ 본 입주자모집공고의 내용을 숙지한 후 청약 및 계약에 응하시기 바라며 미숙지로 인한 착오행위 등에 대하여는 청약자 본인에게 책임이 있으니 이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본 모집공고의 내용은 2019. 12. 6., 2020. 1. 1. 및 2020. 4. 17. 개정 규칙이 반영된 참고자료로서, 지역과 주택에 따라 내용이 달라질 수 있으니 유의하여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본 입주자모집공고는 편집 및 인쇄 과정상 착오가 있을 수 있으니, 의문 사항에 대하여는 견본주택으로 문의하여 재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기재사항의 오류가 및 이 공문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은「주택법」,「주택공급에 관한 규칙」등 관계법령이 우선합니다. / 본 공고와 공급(분양)계약서 내용이 상이할 경우 공급(분양)계약서가 우선합니다.]